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金興鍾 · 李彰洙 · 金均泰 · 姜俊求 · 朴淳讚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金興鍾 · 李彰洙 · 金均泰 · 姜俊求 · 朴淳讚



서 언

우리나라와 EU는 1996년 기본협력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한 이래 2001년부터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2001년과 비교하여 2004년 양자간 교역은 80% 증가하였으며 양자간 투자실적도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실적을 보여 한·EU 경제관계는 안정된 발전을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의 잠재력으로 볼 때 양자간 경제관계는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자간 경제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포괄적 FTA 이슈가 공동위원회 등 공식적 회담에서 제기된 적이 없는 것은 양자간 경제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FTA의 체결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으며 양국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양자간 FTA는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최근에 와서 양자간 FTA 협상의 가능성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타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에 들어와 한국과의 FTA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한·EFTA FTA가 체결되면서 유럽 국가와의 FTA에 대해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EU는 최대 경제권이며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FTA 대상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서비스 무역, 무역구제조치 상호 인정, 표준화, 경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WTO 다자간 협상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의제들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EU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EU를 굳이 중장기 체결대상국으로 미뤄놓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한·EU FTA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이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이 연구는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시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도출하고 있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국간 FTA는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EU측에도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윈-윈 게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 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 원(3.08%)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EU FTA가 미국 및 ASEAN과의 FTA에 비해 GDP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일본 및 기타국과의 FTA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구조조정비용이 미국 및 ASEAN과의 FTA보다 현저히 낮아 EU가 한국의 바람직한 FTA의 대상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EU FTA로 고용도 단기적으로 30만 명(1.81%), 장기적으로 59만7천 명(3.5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자리 창출

이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과 EU는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물, 목재펠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이 민감산업으로 도출되며, 축산과 목제품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연구의 4장과 5장을 통해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사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EU는 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로 EU의 공동통상정책, EU의 FTA 정책,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EU시장의 특성, 한국의 FTA 추진이 EU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으며, 분야별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보면, 기존의 FTA 연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CGE 모형 분석을 통해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해, 농업 및 서비스산업과 무역에 대한 효과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EU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U확대 이후의 25개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CGE 모형 분석뿐만 아니라 FTA가 상품 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출입 탄력성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FTA 협상은 우리나라의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른 경제연합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FTA의 대상국으로서

EU의 차별화된 특징을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 통상현안에 대한 규범적 분석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에서 유럽팀을 맡고 있는 김홍중 연구위원과 무역투자정책실의 이창수 연구위원, 그리고 유럽팀 김균태 전문연구원과 무역투자정책실 강준구 전문연구원, 공주대학교의 박순찬 교수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다섯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EU 경제관계와 한·EU FTA에 관해 연구를 축적해 온 김홍중 연구위원은 연구의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의 기본 구조, 규범 분석과 정책 시사점의 도출을 담당하였으며, 이창수 연구위원은 민감산업 도출 및 CGE 모형분석, 김균태 전문연구원은 탄력성 효과분석, 강준구 전문연구원은 서비스 무역의 효과 분석, 박순찬 교수는 CGE 모형분석을 각각 맡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진의 구성은 FTA, 한·EU관계, 그리고 한·EU FTA의 효과분석에 관하여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해온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이 연구를 통해 이 연구진은 유기적인 협조하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보고서는 집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서울대 김세원 교수, 고려대 박성훈 교수, 외교통상부 FTA 상품교섭과 김종범 과장과 FTA 지역교섭과 박태영 서기관, 본원의 최낙균 부원장, 채욱 선임연구위원, 이홍식 FTA 팀장,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준 강수미 연구조원과 익명의 평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EU FTA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양자간 FTA가 양국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주요 예상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해 예비적인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FTA가 각종 통상 현안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 FTA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

서 FTA의 주요 이슈들을 포괄적이면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유럽 선진국의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고, 반대로 EU의 통상정책을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EU 통상정책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시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한·EU FTA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양국간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교역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양국은 FTA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된다. 한국과 EU는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장의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물, 목재펄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이 민감 산업으로 도출되며, 축산과 목제품은 절대적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EU보다 높아서 관세철폐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다. 양국은 적지 않은 통상현안을 갖고 있으며 FTA 협상시 이 같은 통상현안은 다시 한번 재조명 될 것이 확실시된다.

3장에서는 한·EU FTA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행하였다.

이 분석은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U확대이후의 25개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 또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한 한·EU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CGE 모형 분석뿐만 아니라 FTA가 상품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출입 탄력성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양자간 FTA에서 서비스 무역은 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간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양자간 FTA에 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동 FTA가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FTA는 양자간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윈-윈 게임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에서는 35만원(2.16%),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불(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불(4.47%)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불(3.81%), 장기에는 81.9억불(4.92%)이 증가할 것이다. 한·EU FTA로 취업자수는 단기적으로 30만 명(1.81%), 장기적으로 59만7천명(3.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의 다른 FTA의 경우와 비교한 선행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는 미국 및 ASEAN과의 FTA에 비해 GDP증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본 및 기타국과의 FTA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구조조정비용이 미국 및 ASEAN과의 FTA보다 현저히 낮아 EU가 한국

의 바람직한 FTA의 대상국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EU FTA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각국의 GDP를 약 0.1% 증가시켜 국가별로 GDP가 15억 불에서 20억 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회원국과 관련해서 볼 때 신규회원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기존 회원국만큼 많은 후생의 증가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자간 FTA는 반드시 교역상의 이득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신규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회원국에서도 한·EU FTA는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4장은 2장과 3장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주로 정성적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한·EU FTA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EU와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여타 대상국과는 다른 EU 고유의 특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는 EU가 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연합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여러 가지 성격 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를 EU의 공동통상정책, EU의 FTA 정책,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EU시장의 특성, 한국의 FTA 추진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자간 통상현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의 공동통상정책은 FTA 협상시 EU집행위가 회원국을 대신해서 한국과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공동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EU의 공동통상정책이 관할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EU집행위와 회원국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역내시장의 통합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통상정책의 불명확성은 EU가 대외교섭을 나서는 데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04년에 신규로 가입한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 및 공동통상정책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U의 FTA 정책은 개도국 및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을 우선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유럽권국가들과도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협정은 EU가 멕시코 및 칠레와 맺은 FTA 협정이다. 이 협정들은 정치 대화, 통상 및 경제 관계 그리고 협력의 세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포괄적 FTA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상품자유화 일정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에서 EU의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양허의 폭에 있어서도 FTA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특이한 점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투자협정을 FTA협정과 병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EU시장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EU경제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EU의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의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의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의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한국과 EU간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산업구조가 EU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미 FTA, 한·일 FTA의 체결이 한·EU 경제관계 및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한·일 FTA 또는 한·미 FTA와 한·일 FTA의 동시 체결은 한국시장에서 EU에게 상당한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며 EU의 생산 및 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미

FTA는 EU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추진은 한국이 EU와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EU의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동북아시장에서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한국과의 FTA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방식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불에 대한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2005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 할당에서도 할당액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시한이전에 수출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의 인정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을 기본으로 세번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의 인정여부는 남북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해 온 분야이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DDA차원의 경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EU는 샴페인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청해 올 것이다.



차 례

서언	5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7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0
3. 보고서의 구성	32
제2장 한 · EU 경제관계	35
1. 한 · EU 무역 및 투자 관계	36
가. 한 · EU 교역 및 관세 구조	36
나. 한 · 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46
다. 한 · EU 투자 현황	53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55
가. EU 산업구조 개관	55
나. 산업별 경쟁력	56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66
3. 한 · 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74
가. 주요 통상 현안	76
나. 협력 분야	90

제3장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93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94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4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102
다. 거시경제적 효과	104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110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119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123
가. 추정모형	123
나. 추정결과	127
다. 무역효과	132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137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145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145
나. 분석방법	149
다. 분석 결과	150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156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65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166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171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178
가. 내수규모	178
나. 시장의 성장성	179

다. 서비스 시장 통합	181
4. 한·미, 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83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188
가. 일반적 사항	188
나. 공산품 양허 방식	189
다. 농산물	190
라. 무역구제조치	193
마. 원산지규정	194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197
사. 서비스 무역	198
아. 경쟁 및 정부조달	202
자. 지식재산권	203
차. 투자	205
 제5장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207
1.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	208
2.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17
 부록	221
 Executive Summary	231



표 차례

표 2-1. 한·EU 무역 현황	36
표 2-2.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무역현황	37
표 2-3. 한국과 EU 주요회원국의 무역현황	38
표 2-4. EU의 관세구조(2004년)	40
표 2-5. EU의 품목별 MFN 실행관세율 구조(2004년)	42
표 2-6. 한국과 EU의 관세구조 비교(2004년)	43
표 2-7. 한국의 품목별 관세구조(2004년)	44
표 2-8. 한·EU 교역현황(2001~03년 평균)	47
표 2-9. 한·EU 교역의 한국 전체교역 중 비중(2001~03년 평균)	48
표 2-10. 한·EU회원국 교역이 한국 전체교역 중 비중(2001~03년 평균)	51
표 2-11. EU의 대한민국 투자추이	52
표 2-12. 한국의 대EU 투자추이(신고 기준)	53
표 2-13. EU의 산업별 총부가가치액(2005년 2/4분기)	55
표 2-14. EU 주요회원국의 산업구조	56
표 2-15. EU회원국 및 미·중·일의 한국시장점유율(2001~03년 평균)	57
표 2-16. 한·EU회원국의 대세계 경쟁력: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	60
표 2-17. 한국의 대EU회원국 무역특화지수(TSI)	62
표 2-18. 한·EU회원국간 산업내무역지수(GL지수)	64
표 2-19. 한·EU회원국간의 무역결합도지수(TII)	65
표 2-20. RCA_j^k 값에 따른 산업군 분류기준	67
표 2-21. 제2단계에 의한 변화	68

표 2-22. 제3단계에 의한 변화	69
표 2-23. 제4단계에 의한 변화	70
표 2-24. 각 단계별 산업군 변화: 24개 산업	71
표 2-25. 24개 산업의 주요국별 산업군 분류 결과	72
표 2-26. 민감산업 후보군의 주요지표	75
표 2-27. EU의 대한민국 수입규제현황(2005년 12월 현재)	81
표 2-28. 주요국 1차 양허안 비교(총 60개국 양허)	84
표 3-1. Hoekman의 서비스 무역장벽지수	100
표 3-2. 국가 및 산업분류와 대체탄력성	103
표 3-3.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정태모형)	106
표 3-4.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자본축적모형)	108
표 3-5. 시나리오 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모형)	110
표 3-6. 시나리오 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모형)	111
표 3-7. 시나리오 I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모형)	112
표 3-8. 시나리오 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모형)	113
표 3-9. 시나리오 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모형)	114
표 3-10. 시나리오 I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모형)	115
표 3-11. 한·EU FTA에 따른 생산효과(정태모형)	116
표 3-12. 한·EU FTA에 따른 생산효과(자본축적모형)	117
표 3-13.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정태모형)	118
표 3-14.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자본축적모형)	119
표 3-15. 국가별 수출 변화(정태모형)	121
표 3-16. 국가별 수출 변화(자본축적모형)	122
표 3-17. 품목 분류	126
표 3-18. 수출함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128

표 3-19. 수입합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129
표 3-20. 수출합수 품목별 추정결과	130
표 3-21. 수입합수 품목별 추정결과	131
표 3-22. 한·EU의 품목별 가중평균관세를 비교	133
표 3-23. 수출증대 효과(2004년 기준)	134
표 3-24. 수입증대 효과(2004년 기준)	135
표 3-25. 무역수지 효과(2004년 기준)	136
표 3-26. 수출합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137
표 3-27. 수입합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138
표 3-28. 수출합수 품목별 추정결과	139
표 3-29. 수입합수 품목별 추정결과	140
표 3-30. 한·신규회원국의 품목별 가중평균관세를 비교	141
표 3-31. 수출증대 효과(2004년 기준)	142
표 3-32. 수입증대 효과(2004년 기준)	143
표 3-33. 무역수지 효과(2004년 기준)	144
표 3-34.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부가가치액, 구매력평가 기준)	146
표 3-35.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수준 비교	148
표 3-36. 서비스 분야별 mode 3 개방수준 비교	148
표 3-37.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정태모형)	151
표 3-38.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자본축적모형)	152
표 3-39.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정태모형)	153
표 3-40.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자본축적모형)	154
표 4-1. EU의 지역협정 형태	173

표 5-1.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요약)	209
표 5-2. 한·EU FTA 체결시 산업별 국내취업자 수 변화	210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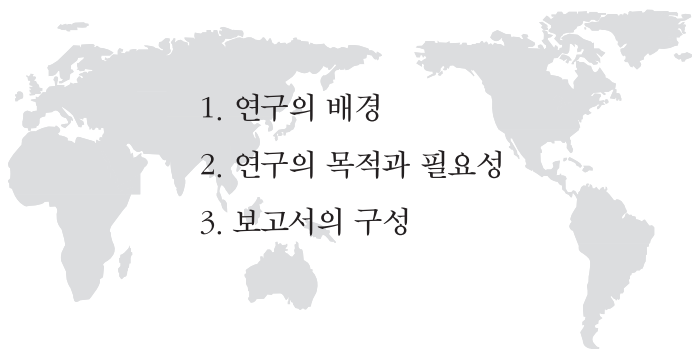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33
그림 2-1. 한국과 EU의 관세구조(2004년)	45



부표 차례

부표 1.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의 EU 거시경제 파급효과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223
부표 2.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의 EU 거시경제 파급효과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224
부표 3.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교역변동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225
부표 4.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교역변동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226
부표 5.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생산변동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227
부표 6.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생산변동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2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1996년 기본협력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한 이래 2001년부터 거의 매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¹⁾ 공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2001년과 비교하여 2004년 양자간 교역은 80% 증가하였으며²⁾ 양자간 투자실적도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실적을 보여 한·EU 경제관계는 안정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부터 EU가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덤핑, 조선분쟁, 반도체 상계관세 등의 통상현안도 최근 들어 해결되었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경제관계는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Kim and Lee(2004)의 중력모형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EU의 교역관계는 양국의 경제규모와 거리로 평가한 무역잠재력에서 아직 과소교역(under-trade)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간 경제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이슈가 공동위원회 등 공식적 회담에서 제기된 적이 없는 것은 양자간 경제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으며, 양국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양자간 FTA 체결은 충분히 제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EU FTA에 대

1) 2001년 최초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2003, 2004, 2005년에 양자간 공동위원회가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개최된 바 있다.

2) 2005년 10월 현재 한국의 대EU 수출입은 전년도기대비 각각 17.1%와 12.6% 증가하였다.

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측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8년 이후로서 우리의 FTA 대상국으로서 주로 관심을 끄는 국가들은 칠레, 싱가포르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거나 깊은 지역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다. EU는 단지 중·장기적인 체결가능 대상국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³⁾

한편 EU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교역규모 8위라는 무시할 수 없는 교역 상대국이지만 한국과의 FTA는 EU의 동아시아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FTA 제안은 신중한 문제였다. EU의 동아시아전략이 최초로 나온 것이 1994년이고, 2001년에 개정된 지침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EU가 대(對) 동아시아 FTA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정리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FTA 체결대상에 있어서도 아세안국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한국을 우선 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도 한국과 EU와의 FTA는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자간 FTA 협상 가능성이 최근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타진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들어 한국과의 FTA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EU의 관심사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FTA 체결 동향에 대해 유의하면서 한·일 FTA, 한·미 FTA,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이러한 변화가 한·EU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FTA 체결이 EU에 심각한 무역전환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이 서면,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국가들과의

3) 2003년 8월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는 FTA 체결 대상국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EU는 중·장기적인 FTA 대상국으로 구분되고 있다.

FTA 체결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2005년 12월 개최된 DDA 홍콩 각료회담이었다. DDA 홍콩 각료회의가 큰 진전 없이 막을 내림에 따라 EU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을 양자간 협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FTA가 체결되면서 유럽국가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불과 7개월만에 본협상을 끝내고 2005년 12월 15일 정부간 서명까지 마친 한·EFTA FTA는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간 최초의 FTA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EU는 최대경제권이며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경제권이라는 점에서 EU와의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EU를 굳이 중장기 체결대상국으로 미뤄놓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교역과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이외에도 한·EU FTA는 서비스 무역, 상호 인정, 표준화 등 향후 선진경제와의 FTA 협상시 중요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의제들을 포함할 것이며,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WTO 다자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제기될 의제들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EU와의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EU FTA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협상 시작 후 예상되는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한다면 그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며, 나아가 양국이 FTA를 고려한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아직 공식적인 검토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자간 FTA의 타당성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양자간 경제관계를 FTA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며, FTA 협상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국의 시각에서 미리 점검해볼 것이다.

한·EU FTA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양자간 FTA가 양국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의 FTA가 각종 통상 현안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 FTA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유럽 선진국의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고, 반대로 EU의 통상정책을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EU 통상정책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EU 간 FTA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한·EU간 기본적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동위원회 등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EU측에 전달되어 왔다. 또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가 정례적으로 한국의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답변서를 내놓고 있다.⁴⁾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이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초적 분석이 한국 측에서 진행된 바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간 FTA의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가

4)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나온 검토보고서는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주한 EU상공회의소 2005년도 통상보고서 검토』(2005. 9)이다.

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EU 통상문제를 FTA의 시각에서 검토한 최초의 연구로 김홍종·이종화(2004)가 있다. 이 연구는 양국간 경제관계, FTA 추진시 고려할 점 등을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다. 한편 박순찬(2004)은 한·EU FTA에 관한 일반균형연산(CGE)모형 분석을 통하여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김홍종·김균태·강준구(2005)는 탄력성 분석과 서비스 개방 효과 등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방식을 더 정치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예상 현안과 그 정책적 대응방안을 기술함으로써 한·EU FTA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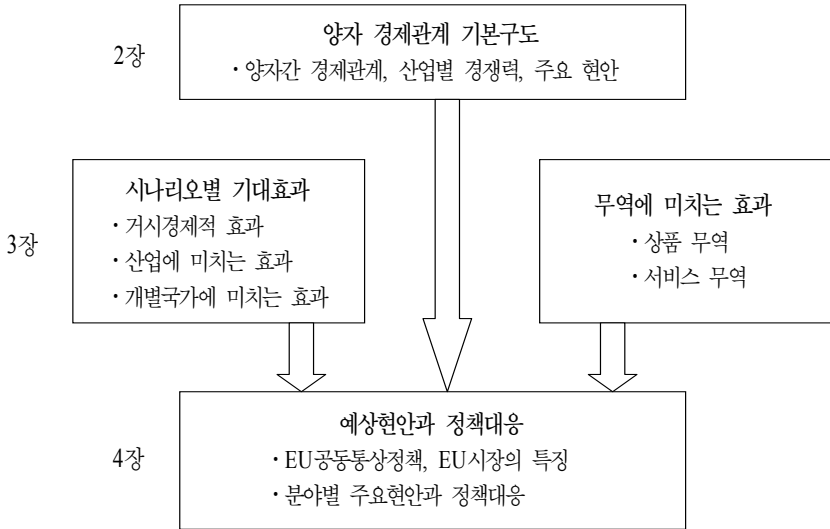
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주요 부분은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한·EU 경제관계에 관한 기본구도를 분석·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방안은 2장과 3장의 결과로부터 추정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FTA 협상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장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과 EU와의 경제관계를 무역과 투자관계, 그리고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양국의 관세구조를 비교함으로써 FTA 체결시 양측의 양허 정도에 대한 포괄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아울러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추정해 보고, 한·EU FTA 협상이 진행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산업과 품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도출함으로써 향후 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주요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FTA 협상시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자료가 포함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CGE 모형 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가 상품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출입 탄력성 지수를 이용하여 FTA로 인한 상품의 수출입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 FTA에서 서비스 무역은 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간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양자간 FTA가 양국 경제의 후생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산업별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한·EU FTA의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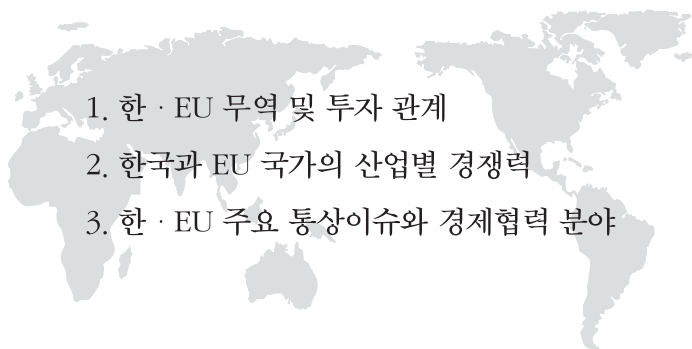
4장에서는 3장에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로 정성적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한·EU FTA 체결시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EU는 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EU의 공동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EU의 FTA 전략과 FTA 체결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EU와의 FTA 협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한·일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EU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한·EU FTA가 체결되지 않을 때의 기회비용도 추정하고 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2장의 통상현안 분석을 더욱 발전시켜 분야별 주요 현안과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협상이 실제로 진행될 때 세부항목별로 어떠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를 평가하고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2장

한 · EU 경제관계



1. 한 · EU 무역 및 투자 관계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3. 한 · 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1. 한·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EU 교역 및 관세 구조

1) 교역구조

1963년 한국과 EU가 처음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간 경제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무역량을 보면, 1971년 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EU 수출은 2004년 378억 3천만 달러에 달해 440배 증가하였으며, EU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2억 5,700만 달러에서 241억 8,700만 달러로 94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의 대EU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 136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 한국의 대EU 수입이 전년대비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EU 수출이 전년대비 52%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99.5%에 달하는 등 EU 확대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⁵⁾

표 2-1. 한·EU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 출	18,171	20,240	23,424	19,627	21,694	24,887	37,830
수 입	10,928	12,629	15,788	14,922	17,107	19,380	24,187
총무역량	29,099	32,869	39,212	34,549	38,801	44,267	62,017
무역수지	7,243	7,611	7,635	4,705	4,587	5,507	13,643

자료: KOTIS.

5) 전년대비 2004년 한국의 EU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을 보면, 키프로스의 경우 288.5%, 슬로바키아 209.7%, 폴란드 103.8%, 그리고 체코가 91.2%의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몇 년간 양국간 무역의 흐름은 양국의 관계발전을 잘 보여준다. [표 2-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1년 양국간 무역은 세계경제 침체, 우리 경제의 내수 위주 경기 회복, 그리고 EU의 부진한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침체상태에 있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에도 증가세는 계속되어 2005년 1~10월 한국의 대EU 수출은 354억 6,900만 달러, EU로부터의 수입은 224억 7,200만 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7.1%, 수입은 12.6%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대EU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이고 수입비중은 10.8%로서, 대EU 수입비중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 대EU 수출비중은 증가하고 있다.⁶⁾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품목과 거의 동일하여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반도체, 귀금속, 각종 화학제품 등이다.

표 2-2. 한국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수 출		국 가	수 입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중국	35,110	49,763	일본	36,313	46,144
미국	34,219	42,849	중국	21,909	29,585
EU	24,887	37,830	미국	24,814	28,783
ASEAN	20,253	24,024	EU	19,380	24,187
일본	17,276	21,701	ASEAN	18,458	22,383

자료: 산업자원부.

6) UN COMTRADE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03년 기간 한국은 평균적으로 EU에 235억 달러를 수출하고 175억 달러를 수입하여 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대EU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94% 및 11.10%였다.

2004년 현재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의 무역상대국이다.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미국에 이어 셋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EU의 제8대 무역상대국이다.⁷⁾

개별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영국은 EU국가 중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이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 뒤를 잇는다(표 2-3 참고).⁸⁾ 대 EU 교역의 대부분은 2004년 EU 확대 이전 기존회원국이었던 15개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전체 대EU 교역액 중 신규회원국과의 비중은 수출의 경우 41억 7,633만 달러로 11.0%, 수입의 경우 5억 3,669만 달러로서 2.2%에 불과하다.

표 2-3. 한국과 EU 주요회원국의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수 출		순 위	국 가	수 입		순 위
연 도	2003년	2004년	2004년 12월 기준	연 도	2003년	2004년	2004년 12월 기준
독 일	5,603	8,334	6위	독 일	6,822	8,486	5위
영 국	4,094	5,516	8위	영 국	2,703	3,793	13위
이탈리아	2,561	3,408	12위	이탈리아	2,382	2,500	17위
네덜란드	2,535	3,007	18위	프 랑 스	2,220	2,483	18위
스 페 인	2,016	2,809	20위	네덜란드	1,372	1,729	27위

자료: KOTIS.

7) 2004년 EU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교역량 기준(단위: 억 유로)으로 보면, 미국(3,926), 중국(1,756), 스위스(1,366), 러시아(1,265), 일본(1,174), 노르웨이(925), 터키(689), 한국(481), 캐나다(383) 순이다.

8) 2001~03년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별로 보면 독일 2.80%, 영국 2.34%, 네덜란드 1.51%, 이탈리아 1.35%, 프랑스 1.00%이다. 한편 국별 수입비중은 독일 3.55%, 영국 1.59%, 프랑스 및 이탈리아 1.37%, 네덜란드 0.75%이다.

신규회원국 중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와의 교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헝가리는 2004년 무역통계에서 EU국가 중 우리의 수출 11위, 수입 13위에 올라 있으며, 폴란드도 수출 10위, 수입 16위에 이른다. 2004년 한국의 폴란드와의 교역량은 수출 8억 700만 달러, 수입 8,900만 달러이며 헝가리의 경우 수출 8억 700만 달러, 수입 1억 2,300만 달러로서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에 대해 큰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도 유추할 수 있었듯이 한·EU간 교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국이 각 EU 회원국에 대하여 대체로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나라는 아일랜드(1억 5,138만 달러), 독일(1억 5,134만 달러), 룩셈부르크(4,497만 달러), 스웨덴(3,016만 달러), 에스토니아(584만 달러) 등 5개국뿐이며,⁹⁾ 스페인(22억 4,691만 달러), 영국(17억 2,264만 달러), 그리스(16억 6,328만 달러)에 대해서는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 핀란드, 키프로스¹⁰⁾와도 10억 달러 이상의 큰 흑자 폭을 유지하고 있다.

2) 관세구조

EU는 공동대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대외관세는 EU 공동통상정책의 일부로서 공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EU의 핵심 무역정책 중 하나다.¹⁰⁾ 2004년 EU의 MFN 실행관세율은 6.5%로서 0~209.9%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¹¹⁾ 총 1만 174개 품목 중 90.1%인 9,167개 품목에 대해 c.i.f.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ad valorem*)가 적용되며, 나머지 9.9%인 1,007개가 비종가세(*non-ad valorem*) 적용대상이다.

9) 2001~03년 기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6개국이었다.

10) EU의 공동통상정책과 공동대외관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4장 1절 참고.

11)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품목의 실행관세율은 10% 이하이다.

EU의 비종가세 비중은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비해서 큰 편이다. 비종가세는 주로 농산물에 많이 적용되는데, 이는 EU가 과거 역외 농산물에 부과해 오던 가변 부과금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정책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관세화하면서 남은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EU 공동대외관세의 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가세, 종량세(*specific duties*), 복합(*compound*) 관세,¹²⁾ 혼합(*mixed*) 관세,¹³⁾ 변동(*variable*) 관세,¹⁴⁾ 그리고 특정농산물에 대한 계절관세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종가세는 전체 품목 2,091개 중 53.7%에 불과하여 99.5%가 종가세로 부과되는 비농산물과 대비된다. 농산물에 부과되는 비종가세의 대부분은 종량세로서 관세할당이 대표적이다.

표 2-4. EU의 관세구조(2004년)

(단위: 개, %)

	전 품목(HS 01~97)		농산물		비농산물*	
	품목 수	비율	품목 수	비율	품목 수	비율
합 계	10,174	100.0	2,091	100.0	8,083	100.0
종가세	9,167	90.1	1,123	53.7	8,044	99.5
면세	2,734	26.9	393	18.8	2,341	29.0
과세	6,433	63.2	730	34.9	5,703	70.6
비종가세	1,007	9.9	968	46.3	39	0.5
종량세	642	6.3	637	30.5	5	0.1
복합	76	0.7	43	2.1	33	0.4
혼합	199	2.0	199	9.5	0	0.0
기타	90	0.9	89	4.3	1	0.0

주: *비농산물에 원유 포함.

자료: WTO 2004 TPR.

EU의 관세품목 중 전체의 26.9%는 면세대상이며, 관세할당하는 품목은 전체의

12)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

13) 상한과 하한이 있는 관세구조.

14) c.i.f. 가격대에 따라 세율이 다른 관세구조.

3.3%에 해당한다. 농산물(HS 01~24)의 평균 관세율은 16.5%인 데 반해, 비농산물(HS 25~97)의 경우 4.1%에 불과하다. 농산물 중 동물,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의 보호 정도가 높으며, 비농산물 중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다.

높은 관세율로 보호되는 품목에는 자연산유제품(관세율 209.9%), 식용 소·양·돼지·말·당나귀 등의 고기부스러기(192.2%), 양고기(172.9%), 마늘(150.1%), 냉동소고기(149.9%), 버섯(134.5%), 냉동 및 냉장 돼지고기(120.8%), 바나나(118.1%), 카사바(117.9%), 사탕무(114.4%), 살아 있는 소과 동물(107.8%), 우유와 크림(103.3%), 쌀가루(101.1%) 등이 있다. 비농산물 중에서는 섬유·의류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8%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기계, 금속, 목재·펄프·가구에 대한 관세율은 1~2%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원자재의 평균 관세율이 8.4%인 데 반해 중간재의 경우는 4.8%, 최종재의 경우는 7.0%여서 세율구조가 품목의 가공 정도 및 부가가치에 따라 경사되는(escalate)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제 한국의 관세구조를 EU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EU보다 관세를 통한 국내시장과 산업 보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한국의 2004년 품목별 양허율은 91.5%로, EU의 10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먼세품목 비율도 한국이 13.3%로서 EU의 26.9%보다 낮다. 또 한국의 MFN 실행관세율은 12.8%로서 EU의 6.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율도 0~887.4%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EU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보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¹⁵⁾ WTO 정의에 따른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52.2%로 EU의 16.5%보다 훨씬 높고, 비농산물의 경우 6.7%로서 EU의 4.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채소류(HS 2)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00%로서 높은 편이고, 제조업의 경우 신발류(HS 12)가

15) 그러나 전체 품목의 86%는 실행관세율이 10% 이하여서 EU의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술 참고.

표 2-5. EU의 품목별 MFN 실행관세를 구조(2004년)

	총 품목수	사용된 품목수	단순평균 관세율(%)	관세율 범위(%)	표준편차 (%)	수입액 (억 달러)
· 합계	10,174	10,145	6.5	0~209.9	11.5	8,134
· 농산물	2,091	1,962	16.5	0~209.9	21.9	554
동물	332	300	26.1	0~192.2	29.4	45
유제품	160	108	41.7	0.2~209.9	37.7	8
커피, 코코아, 설탕	303	279	16.6	0~114.4	15.6	95
식물 · 화훼	65	65	4.1	0~19.2	4.4	16
과일 · 채소	452	452	15.3	0~150.1	15.8	124
곡물	55	55	39.6	0~101.1	27.7	27
유지	164	160	6.7	0~75.8	12.3	112
식음료	274	264	12.8	0~71.3	14.6	47
담배	30	30	18.3	2.2~74.9	21.2	12
기타 농산물	256	249	4.7	0~76	9.4	67
· 비농산물(원유 제외)	8,042	8,042	4.1	0~26	4.2	6,619
수산물	381	381	12.6	0~26	6.4	120
광물 · 보석	518	518	2.4	0~12	2.8	600
금속	1,043	1,043	1.8	0~10	2.3	526
화학	1,397	1,397	4.4	0~23.3	2.7	744
가죽 · 고무 · 신발	291	291	4.7	0~17	4.6	218
목재 · 펄프 · 가구	449	449	1.2	0~10	2.3	380
섬유 · 의류	1,329	1,329	8	0~12	3.2	678
교통설비	273	273	4.7	0~22	5.0	594
비전기기계	1,033	1,033	1.7	0~9.7	1.4	1,127
전기기계	605	605	2.8	0~14	3.4	978
비농산물 기타	723	723	2.4	0~14	2.0	654

주: 총 품목수와 사용된 품목수의 차이는 종가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임. 한편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은 WTO 정의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원유가 제외되기 때문에 농산물 및 비농산물 합계가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WTO TPR에서 재구성.

10.2%, 섬유류(HS 11)가 9.9%로서 높다.

전체품목 중 관세율이 15% 이상(International tariff spikes)인 품목의 비율도 한국은 8.9%로서 EU의 8.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전체 품목의 2.7%가 면세는 아니지만 2% 이하의 낮은 관세율(Nuisance tariff)을 부과하는 품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EU의 6.8%보다 낮은 수준이다. 면세품목 비율과 합치면 한국은 전체 품목의 15.4%에 대해 2%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EU는 33.7%에 대해 2%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EU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세에 의한 국내시장 보호 정도가 강한 편이다.

한편 EU 관세구조의 특징적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품목 중 99%의 품목에 대해 c.i.f.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1%만 비중

표 2-6. 한국과 EU의 관세구조 비교(2004년)

(단위: %)

	한 국	EU
양허율	91.5	100
면세품목 비율	13.3	26.9
비종가세 품목 비율	0.6	9.9
비종가세 품목 비율(no AVEs)	0.6	2.7
관세할당품목 비율	1.7	3.3
단순평균 관세율	12.8	6.5
농산물(HS 01~24)	47.9	16.6
비농산물(HS 25~97)	6.6	3.7
농산물(WTO 정의)	52.2	16.5
비농산물(WTO 정의)	6.7(9.8) [*]	4.1(8.0) [*]
Domestic tariff spikes ^{**}	2.5	5.8
International tariff spikes ^{***}	8.9	8.6
Nuisance applied tariff ^{****}	2.7	6.8
관세율 분포의 표준편차	52.0	11.5

주: MFN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함. *는 섬유·의류의 평균 관세율, **는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의 비율, ***는 15%를 넘는 품목의 비율, ****는 관세율이 0% 초과 2% 이하 품목의 비율임.

자료: WTO 2004 TPR EU와 TPR Korea에 따라 정리.

표 2-7. 한국의 품목별 관세구조(2004년)

(단위: %)

	관세율	범 위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해당국 비중		
			EU25	EU15	EU10
전 산업	12.8	0~887.4	11.10	10.85	0.24
1차산업	47.9	0~887.4	9.66	9.29	0.38
제조업	6.6	0~754.3	14.93	14.62	0.31
축산	27.1	0~243	10.92	8.92	2.00
수산	16.1	5~20	2.09	1.87	0.23
농산물	108.1	0~887.4	2.43	2.39	0.04
가공식품	21.3	0~754.3	19.65	19.62	0.03
광물성 생산물	3.8	0~8	0.30	0.28	0.02
화학공업	11.8	0~754.3	21.08	20.85	0.22
플라스틱	7.0	0~8	16.24	16.15	0.10
원피·가죽·모피	7.6	2~16	23.14	23.07	0.08
목제품	7.2	1~8	6.63	6.45	0.18
목재펠트·종이	0.5	0~8	13.39	13.36	0.03
섬유제품	9.7	1~51	11.98	11.88	0.10
신발·모자	9.7	8~13	14.59	14.23	0.35
시멘트·유리	7.9	0~8	18.62	16.89	1.72
철강	2.5	0~8	8.92	8.43	0.49
비철금속	6.7	0~8	8.21	8.15	0.06
전기전자	5.8	0~13	7.86	7.47	0.39
-반도체	5.5	0~13	5.89	5.56	0.33
-통신기기	5.5	0~13	9.75	9.55	0.20
-가전기기	5.5	0~13	10.46	10.02	0.44
-컴퓨터	6.0	0~13	7.25	6.61	0.65
기계장비	6.9	0~13	24.71	24.50	0.21
-기계	6.0	0~13	26.51	26.23	0.28
-정밀기기	7.2	0~8	21.37	21.29	0.08
자동차	7.9	0~10	40.47	39.98	0.48
철도·항공기·선박	4.1	0~10	17.95	17.08	0.87
기타	4.2	0~8	20.21	20.09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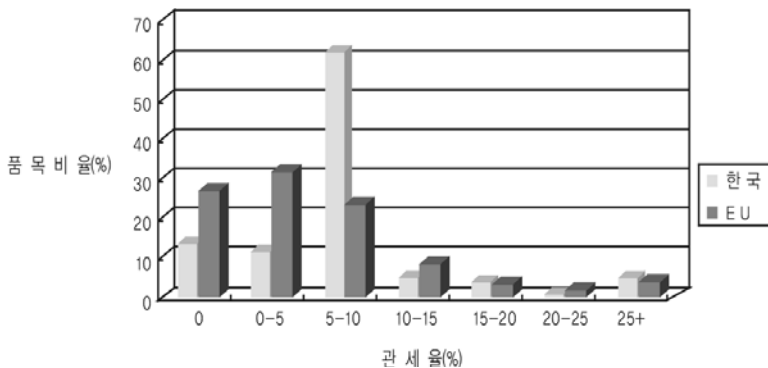
자료: 평균관세율 수준과 범위는 WTO TPR 부록에 따라 정리, 수입비중은 자체 계산.

가세 적용대상이어서 EU의 비종가세 품목비율 9.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양허관세율이 아닌 실행관세율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종가세 적용대상은 0.6%로서 더 낮아진다. 즉, 한국의 관세구조가 EU보다 투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 비종가세는 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농산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관세할당품목 비율도 한국이 1.7%로서 EU의 3.3%보다 낮은 수준이다.¹⁶⁾ 평균 관세율의 세 배를 넘는 고관세 부과품목 비율도 한국은 2.5%에 불과하나 EU의 경우는 5.8%에 달한다. [표 2-6]은 한국과 EU의 관세구조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요약하면, EU는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관세에 의한 보호 수준이 낮은 편이고, 매우 높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세 보호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EU보다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관세율 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그림 2-1]은 양자간 세율에 따른 품목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

그림 2-1. 한국과 EU의 관세구조(2004년)



자료: WTO TPR 자료 재구성.

- 16) 하지만 할당량 이상에 대한 관세율의 경우 한국이 매우 높아서 할당액 이상의 품목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7) 한국의 경우 90개가 넘는 서로 다른 관세율대(band)가 존재한다. 관세할당과 교차관세를 제외하고도 관세율이 0~72%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밴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0% 이하의 관세율 품목에서도 15개 이상의 밴드가 있다.

이 EU의 관세는 0~5%대에 가장 많은 품목이 분포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5~10%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은 품목별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과 한국의 전체 수입액 대비 해당국의 수입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축산, 가공식품, 수산, 화공, 섬유·의류, 신발·모자의 관세율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기계와 전자의 경우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관세율 수준이 높은 경우 수입비중이 낮다.

나. 한·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표 2-8]과 [표 2-9]는 UN COMTRADE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01~03년 기간 양자간 평균 교역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표 2-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1차산업과 2차산업 중 화공 및 기계류에서 적자를 보는 반면,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항공기·선박 분야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EU를 기존 15개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구분하여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신규회원국과의 교역에서 기계류 부문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표 2-9]는 한·EU 교역의 산업별 특징을 보기 위하여 전체 교역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대EU 수출비중인 13.9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제조업(14.71%)이다. 그중에서도 목제품(26.69%), 전기·전자(14.81%), 기계장비(15.55%), 자동차(20.20%), 철도·항공기·선박(33.98%) 산업의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의 경우도 대EU 수입비중인 11.10%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1차산

표 2-8. 한·EU 교역현황(2001~03년 평균)

(단위: 천 달러)

	한·EU15			한·EU10			한·EU25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 산업	21,670,038	17,077,440	4,592,598	1,866,696	383,954	1,482,742	23,536,735	17,461,395	6,075,340
1차산업	110,766	869,217	-758,451	2,540	35,247	-32,707	113,307	904,464	-791,158
제조업	21,487,729	16,102,683	5,385,046	1,864,075	341,794	1,522,281	23,351,804	16,444,477	6,907,327
축산	3,338	131,625	-128,287	68	29,519	-29,451	3,406	161,144	-157,738
수산	35,522	30,357	5,164	587	3,662	-3,076	36,108	34,020	2,089
농산물	11,522	72,342	-60,820	123	1,090	-967	11,645	73,432	-61,787
가공식품	60,384	634,892	-574,508	1,763	976	787	62,147	635,868	-573,721
광물성 생산물	71,543	105,540	-33,997	81	6,914	-6,833	71,624	112,454	-40,829
화학공업	498,253	2,670,639	-2,172,387	16,196	28,621	-12,426	514,448	2,699,261	-2,184,812
플라스틱	979,264	624,289	354,975	75,469	3,676	71,793	1,054,732	627,965	426,767
원피·가죽·모피	23,842	364,001	-340,159	4,264	1,209	3,055	28,105	365,209	-337,104
목제품	22,855	113,006	-90,151	20	3,156	-3,136	22,875	116,162	-93,288
목재펠트·종이	103,338	300,448	-197,110	2,089	625	1,463	105,426	301,073	-195,647
섬유제품	1,412,192	705,912	706,279	108,161	6,179	101,982	1,520,352	712,091	808,261
신발·모자	101,222	72,842	28,380	1,311	1,807	-496	102,533	74,649	27,884
시멘트·유리	101,509	330,946	-229,437	3,219	33,746	-30,528	104,727	364,692	-259,965
철강	439,137	651,485	-212,348	5,573	37,797	-32,225	444,710	689,283	-244,573
비철금속	273,906	438,873	-164,968	20,291	3,220	17,071	294,197	442,094	-147,897
전기전자	8,572,174	2,868,227	5,703,947	497,119	151,337	345,782	9,069,293	3,019,564	6,049,729
-반도체	1,337,288	975,723	361,566	16,609	57,273	-40,664	1,353,897	1,032,996	320,902
-통신기기	2,176,126	345,383	1,830,743	225,575	7,183	218,392	2,401,701	352,566	2,049,135
-가전기기	1,836,692	1,200,031	636,660	127,961	52,803	75,158	1,964,653	1,252,835	711,818
-컴퓨터	3,222,069	347,090	2,874,979	126,973	34,077	92,896	3,349,042	381,167	2,967,874
기계장비	2,127,285	4,839,675	-2,712,391	149,172	41,531	107,641	2,276,456	4,881,206	-2,604,750
-기계	1,683,252	3,371,873	-1,688,621	134,941	35,955	98,986	1,818,193	3,407,828	-1,589,635
-정밀기기	444,033	1,467,802	-1,023,770	14,231	5,576	8,655	458,264	1,473,378	-1,015,115
자동차	3,517,747	1,016,196	2,501,551	231,523	12,314	219,209	3,749,270	1,028,510	2,720,760
철도·항공기·선박	3,003,309	214,629	2,788,680	738,571	10,929	727,642	3,741,880	225,558	3,516,321
기타	311,698	891,515	-579,817	11,099	5,645	5,455	322,797	897,159	-574,362

주: 1) EU15는 기존의 15개 회원국(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임.

2) EU10은 EU 확대에 따라 새로 EU에 가입한 국가(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임.

자료: UN COMTRADE.

표 2-9. 한·EU 교역의 한국 전체교역 중 비중(2001~03년 평균)

(단위: %)

	한·EU15		한·EU10		한·EU2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 산업	12.83	10.85	1.11	0.24	13.94	11.10
1차산업	3.96	9.29	0.09	0.38	4.05	9.66
제조업	13.53	14.62	1.17	0.31	14.71	14.93
축산	5.78	8.92	0.12	2.00	5.89	10.92
수산	4.34	1.87	0.07	0.23	4.41	2.09
농산물	2.42	2.39	0.03	0.04	2.45	2.43
가공식품	4.17	19.62	0.12	0.03	4.29	19.65
광물성 생산품	0.98	0.28	0.00	0.02	0.98	0.30
화학공업	6.42	20.85	0.21	0.22	6.63	21.08
플라스틱	9.98	16.15	0.77	0.10	10.75	16.24
원피·가죽·모피	1.69	23.07	0.30	0.08	2.00	23.14
목제품	26.67	6.45	0.02	0.18	26.69	6.63
목재펠프·종이	5.33	13.36	0.11	0.03	5.44	13.39
섬유제품	9.24	11.88	0.71	0.10	9.94	11.98
신발·모자	11.82	14.23	0.15	0.35	11.98	14.59
시멘트·유리	11.52	16.89	0.37	1.72	11.88	18.62
철강	5.36	8.43	0.07	0.49	5.43	8.92
비철금속	8.24	8.15	0.61	0.06	8.85	8.21
전기전자	14.00	7.47	0.81	0.39	14.81	7.86
-반도체	9.67	5.56	0.12	0.33	9.79	5.89
-통신기기	14.03	9.55	1.45	0.20	15.49	9.75
-가전기기	11.29	10.02	0.79	0.44	12.08	10.46
-컴퓨터	20.59	6.61	0.81	0.65	21.40	7.25
기계장비	14.53	24.50	1.02	0.21	15.55	24.71
-기계	13.99	26.23	1.12	0.28	15.11	26.51
-정밀기기	17.05	21.29	0.55	0.08	17.60	21.37
자동차	18.95	39.98	1.25	0.48	20.20	40.47
철도·항공기·선박	27.28	17.08	6.71	0.87	33.98	17.95
기타	8.27	20.09	0.29	0.13	8.56	20.21

자료: UN COMTRADE.

업보다는 제조업(14.93%)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화공(21.08%), 플라스틱(16.24%), 원피·가죽·모피(23.14%), 목재펄프·종이(13.39%), 섬유제품(11.98%), 신발·모자(14.59%), 시멘트·유리(18.62%), 기계장비(24.71%), 자동차(40.47%), 철도·항공기·선박(17.95%) 등이다. 수입의 경우 특이한 점은 1차산업 제품 중에도 한국이 EU로부터 상당한 수입의존도를 보이는 품목이 있다는 점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전체 한국 수입비중의 1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도 10.92%의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은 축산과 가공식품 분야 수입에서 EU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구분해볼 때 특이한 점은 수출에서 철도·항공기·선박 분야에 대한 신규회원국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신규회원국에 대한 전체 수출비중이 1.11%밖에 안되는데 이 부문에 대한 수출비중은 무려 6.7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신규회원국 전체에 대한 우리의 동 부문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품목의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몰타 탱커(HS 8901200000) 수출이 매년 2억~4억 달러의 실적을 보이는 등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¹⁸⁾ 통신기기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수입의 경우 축산(2%)과 시멘트·유리(1.72%) 부문에서 신규회원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산업별 교역구조 분석은 한국과 EU가 기본적으로 산업화된 경제로서 제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교역은 기존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산과 가공식품 분야 수입에서 우리나라는 EU에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으며, 기계장비의 경우 신규회원국에는 한국이 무역

18) 연도별 대몰타 탱커 수출액을 살펴보면, 1억 8,400만 달러(2001년), 2억 9,200만 달러(2002년), 2억 1,300만 달러(2003년) 그리고 4억 8,800만 달러(2004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10개 신규회원국에 대한 철도·항공기·선박류 수출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기존회원국에는 적자를 보고 있다.

산업별 양자간 교역관계의 특징을 국가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¹⁹⁾ 먼저 가장 큰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독일 간 상품무역관계를 산업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4년 양국간 교역에서 한국은 1억 5천여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이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고, 외환위기 직후 3년을 제외하고는 독일과의 교역에서 10억 달러 내외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다. 특히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큰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 부문에서 독일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학, 플라스틱, 비철금속, 가공식품 및 가전제품 등에서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부문은 컴퓨터·반도체 등 전기전자와 신발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군이다. 쌍방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문은 정밀기기, 가전기기, 통신기기, 자동차, 섬유제품, 철도·항공기·선박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동 부문에서의 교역활성화가 우리나라 대세계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흑자규모가 매우 크다는 게 특징이다. 가공식품 등 1차산업과 화학 부문에서 비교적 큰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가전기기 등 전기전자에서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계장비, 자동차, 철도·선박·항공기 등의 부문에서는 양방향 교역규모가 상당히 큰 특성을, 즉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이탈리아 교역은 대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2004년 들어 한국의 흑자 규모가 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철도·항공기·선박, 통신기기, 비철금속, 수산물 등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원피·가죽, 신발·모자, 섬유제

19) 이하는 UN COMTRADE를 이용하여 2001~03년 사이 양자간 평균 교역량을 기본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2-10. 한·EU회원국 교역의 한국 전체교역 중 비중(2001~03년 평균)

(단위: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 산업	2.80	3.55	2.34	1.59	1.35	1.37	1.00	1.37	1.51	0.75	0.25	0.06	0.21	0.04
1차산업	0.25	0.87	0.25	3.58	0.48	0.40	0.31	1.18	0.27	1.01	0.01	0.27	0.01	0.07
제조업	2.98	4.99	2.47	1.94	1.43	1.91	1.06	1.84	1.57	0.97	0.26	0.07	0.22	0.04
축산	0.44	0.29	0.00	0.20	0.00	0.08	0.82	1.56	0.10	1.91	0.06	1.69	0.00	0.30
수산	0.02	0.02	0.01	0.58	0.49	0.12	0.06	0.08	0.08	0.24	0.00	0.00	0.00	0.04
농산물	0.15	1.05	0.11	0.08	0.14	0.18	0.41	0.40	0.53	0.41	0.00	0.00	0.01	0.02
가공식품	0.41	1.39	0.44	9.91	0.60	0.88	0.40	2.29	0.30	1.54	0.02	0.00	0.02	0.02
광물성 생산품	0.00	0.02	0.18	0.07	0.00	0.01	0.01	0.02	0.60	0.04	0.00	0.00	0.00	0.00
화학공업	0.74	6.45	0.86	2.58	0.82	2.26	0.61	3.92	1.74	1.43	0.04	0.04	0.10	0.05
플라스틱	1.56	5.94	1.53	2.65	1.55	1.77	0.65	1.79	0.86	1.23	0.15	0.03	0.16	0.03
원피·가죽	0.27	0.87	0.24	0.69	0.31	14.74	0.26	3.22	0.07	0.15	0.03	0.02	0.09	0.02
목제품	0.24	1.27	0.49	0.04	0.10	1.18	3.07	0.22	0.11	0.08	0.00	0.01	0.02	0.05
목재펠프·종이	0.22	2.74	0.81	3.12	0.21	2.02	0.15	1.62	0.27	0.67	0.02	0.00	0.01	0.00
섬유제품	1.98	1.07	1.77	1.38	1.18	6.33	1.26	0.95	0.70	0.34	0.05	0.03	0.48	0.02
신발·모자	2.31	0.75	1.85	0.77	0.52	11.34	2.52	0.44	1.79	0.08	0.05	0.08	0.03	0.01
시멘트·유리	5.12	4.27	1.87	1.35	1.57	3.07	0.37	2.03	0.47	0.30	0.21	0.01	0.04	0.02
철강	0.59	2.14	0.84	1.27	1.02	0.68	0.22	1.07	0.45	0.30	0.03	0.02	0.01	0.12
비철금속	1.58	3.64	1.15	1.01	1.45	0.62	0.81	0.88	0.86	0.38	0.18	0.01	0.14	0.01
전기전자	3.78	2.18	3.50	0.72	0.79	0.40	1.87	1.60	2.14	0.32	0.41	0.13	0.23	0.04
-반도체	5.17	1.70	1.70	0.33	0.08	0.14	2.18	1.66	0.08	0.23	0.01	0.02	0.01	0.00
-통신기기	2.17	1.59	3.16	0.85	1.52	0.40	3.08	3.85	1.00	0.50	0.77	0.01	0.59	0.17
-가전기기	2.44	3.77	2.48	1.38	1.01	0.81	1.31	1.41	1.79	0.46	0.32	0.15	0.15	0.06
-컴퓨터	5.53	0.57	6.50	0.46	0.46	0.30	1.76	0.27	5.46	0.19	0.48	0.55	0.17	0.00
기계장비	2.92	11.45	1.94	2.55	1.86	2.68	0.69	1.95	2.53	2.50	0.45	0.02	0.30	0.04
-기계	1.97	13.51	1.75	2.36	2.00	3.35	0.79	2.06	2.56	1.00	0.52	0.01	0.33	0.05
-정밀기기	7.27	7.60	2.80	2.88	1.21	1.43	0.43	1.75	2.39	5.29	0.14	0.02	0.15	0.01
자동차	3.06	22.73	2.72	2.35	3.25	2.54	1.14	0.67	1.38	3.61	0.34	0.26	0.32	0.12
철도·선박·항공	5.93	2.09	2.42	2.95	2.98	0.39	3.32	5.51	1.10	0.68	0.00	0.00	0.00	0.09
기타	2.15	2.98	2.13	10.81	0.69	2.67	0.33	1.27	0.41	0.75	0.04	0.00	0.14	0.05

자료: UN COMTRADE.

품, 화학, 기계부문에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집약부문에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한 이탈리아의 산업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프랑스 교역의 특성은 우리나라가 전 산업에 걸쳐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 2004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신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자동차, 반도체, 섬유, 신발 등이며, 철도·항공기·선박, 기계장비, 통신기기 등 전자, 화학, 플라스틱, 가공식품 등의 부문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1차산업, 특히 축산과 가공식품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프랑스 교역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섬유제품, 전기전자(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등의 부문에서는 산업내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네덜란드 교역은 한·영 교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차 산업에서는 적자를, 제조업에서는 흑자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가전기기 등 전기전자, 기계, 신발·모자 부문에서 흑자를, 그리고 자동차, 축산, 농산물에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신규회원국의 대표적 예로 헝가리와 폴란드와의 교역을 산업별로 분석해 본다. 한국은 헝가리와의 교역에서 축산을 중심으로 1차산업에서 무역적자가

표 2-11. EU의 대한민국 투자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국 가	2003년		2004년		2005년 3/4		누계(1962~2005. 3/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U	283	3,062	366	3,009	117	729	4,123	34,451
네덜란드	40	161	60	1,309	20	198	746	12,599
독일	68	370	95	487	29	271	1,099	6,731
영국	55	871	62	642	26	131	710	5,471
프랑스	43	150	54	180	14	46	575	3,515
벨기에	13	1,347	17	179	1	-	124	2,530
아일랜드	14	15	15	30	8	9	165	1,429

자료: 산업자원부.

있으나 전기전자(통신기기, 가전기기), 기계장비, 플라스틱 등 제조업에서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커다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비중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한·폴란드 교역도 한·헝가리 교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 등 1차산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전자(통신기기, 컴퓨터, 가전기기), 기계장비, 자동차, 플라스틱에서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 한·EU 투자현황

1962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신고 기준)은 2005년 9월말 현재 1,11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EU로부터의 투자는 344억 5,130만 달러로 전체의 30.9%를 점하고 있다.

1962년 이후 EU로부터의 투자를 살펴보면, 초창기에 매년 수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1987년 이후 1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 이후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연도별로 상당한 변동을 보이지만 EU는 최근 한국에 매년 30억 달러 내외의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이었으나 1999년, 2000년, 2003년, 그리고 2005의 경우 EU가

표 2-12. 한국의 대EU 투자추이(신고 기준)

(단위: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EU 전체	259.6	2,247.8	1,152.7	289.9	732.1	617.5
신규회원국	80.0	46.2	53.5	62.5	164.3	378.1
아시아	2,240.2	1,913.4	3,107.4	4,243.9	5,091.0	4,240.3
북미	1,361.6	1,921.2	1,430.9	796.3	1,466.7	1,070.3
합계	6,036.8	6,352.7	6,299.9	5,805.8	7,942.1	7,240.7

주: EU는 확대 이전이라도 25개국을 기준으로 하였음. *2005년의 경우 10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5),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http://www.koreaexim.go.kr>.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며, 1962년 이후 누적투자규모로 보면 미국의 335억 9,617만 달러를 약 9억 달러 능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주로 에너지, 전자·전기, 통신사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EU가 투자한 업종은 반도체 LCD, 자동차부품, 화장품도매, 유통업, 발전업 등이다. EU국가 중 네덜란드가 누적투자규모 126억 달러에 달해 최대투자국이며, 독일 67억 달러, 영국 55억 달러, 프랑스 35억 달러, 그리고 벨기에가 25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연도별로 상당한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1990년대 중반 급증했던 한국의 대EU 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1년 22억 5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11억 5천만 달러, 2억 9천만 달러, 7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2005년 10월 현재 한국은 6억 2천만 달러를 EU에 투자했다.

특이한 것은 2004년 EU 확대 이후 신규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대EU 투자의 1/4~1/3 수준에 머물렀던 신규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2005년에는 기존회원국에 대한 투자금액을 넘어 전체 대EU 투자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신규회원국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로 EU의 통상장벽을 넘어서고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에 기인한 것이며, EU 회원국이 되면서 신규회원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규회원국을 제외한 대EU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동유럽 및 아시아, 특히 대중국 투자급증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우자동차의 대EU 및 동구지역 투자실패도 투자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과 EU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의 산업구조 개관

EU 경제는 3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5년 2/4분기 EU 25개국의 GDP를 각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액으로 환산해 보면, 무역, 수송 및 통신서비스업(21.4%),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27.4%), 기타 서비스(23.1%) 등 유통·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3차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71.9%에 달하고 있다.²⁰⁾

국가별로 보면, 독일 및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아 이 부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국 및 프랑스는 금융부문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은 무역, 수송, 통신서비스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회원국은 농업과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3. EU의 산업별 총부가가치액(2005년 2/4분기)

(단위: 백만 유로)

산 업	농업 및 어업	산업(에너지 포함)	건 설	무역, 수송 및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	기타 서비스	총 액
총부가가치액	44,938.3 (40,502.4)	505,033.5 (473,414.5)	145,439.1 (138,056.6)	528,574.7 (497,109.2)	677,897.4 (656,806.5)	570,286.2 (546,175.1)	2,472,169.2 (2,352,064.2)
산업별비중(%)	1.8 (1.7)	20.4 (20.1)	5.9 (5.9)	21.4 (21.1)	27.4 (27.9)	23.1 (23.2)	100.0 (100.0)

주: 괄호 안은 EU 15개국의 경우임.

자료: Eurostat(2005. 11. 5).

20) EU 15개국만 보면, 3차산업 비중이 약간 늘어나 7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3차산업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나. 산업별 경쟁력

우리나라 시장에서 EU 회원국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일반적인 지표는 한국시장 전체 수입액에서 EU 회원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즉 시장점유율이다. 먼저 시장점유율로 국가별 산업경쟁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EU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경우 전 산업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은 2001~03년 기간 평균 3.53%이나 제조업의 경우는 4.96%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기계류의 시장점유율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시장에서 기간평균 점유율은 21.82%로 일본의 점유율 33.77%에 이어 둘째로 큰 수치를 기

표 2-14. EU 주요회원국의 산업구조

(단위: 백만 유로)

	총부가가치액	농수산업	산업 (에너지포함)	건설	무역, 수송,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기타 서비스
EU	8,997,851	185,315 (2.1%)	1,907,878 (21.2%)	507,583 (5.6%)	1,942,956 (21.6%)	2,452,364 (27.3%)	2,001,755 (22.2%)
독일	1,978,770	22,040 (1.1%)	482,700 (24.4%)	84,010 (4.2%)	356,510 (18.0%)	603,530 (30.5%)	429,980 (21.7%)
영국	1,467,537	13,705 (0.9%)	280,990 (19.1%)	89,633 (6.1%)	336,259 (22.9%)	416,658 (28.4%)	330,295 (22.5%)
프랑스	1,436,531	37,775 (2.6%)	269,435 (18.8%)	72,030 (5.0%)	266,779 (18.6%)	445,741 (31.0%)	344,771 (22.1%)
이탈리아	1,218,828	30,882 (2.5%)	263,077 (21.6%)	61,437 (5.0%)	286,812 (23.5%)	333,081 (27.3%)	243,537 (20.0%)
스페인	695,480	21,932 (3.2%)	129,715 (18.7%)	67,600 (9.7%)	192,474 (27.7%)	139,936 (20.1%)	143,823 (20.7%)
네덜란드	420,619	9,765 (2.3%)	78,984 (18.8%)	24,903 (5.9%)	89,166 (21.2%)	110,534 (26.3%)	105,375 (25.1%)
폴란드	161,771	4,782 (3.0%)	40,194 (24.8%)	9,445 (5.8%)	49,195 (30.4%)	25,406 (15.7%)	32,750 (20.2%)

주: 2003년 경상가격 기준. 괄호 안은 산업별 부가가치액 비중.
자료: Eurostat(2005. 2).

록하고 있다.²¹⁾ 독일 기계산업의 시장점유율은 기간 중 평균 13.48%로 일본 37.38% 및 미국 22.98%에 이어 셋째로 한국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표 2-15. EU회원국 및 미·중·일의 한국시장점유율(2001~03년 평균)

(단위: %)

	FRA	GER	IRE	ITA	NET	SPA	SWE	UK	HUN	POL	CHN	JPN	USA
전 산업	1.38	3.53	0.46	1.37	0.75	0.25	0.37	1.59	0.06	0.03	11.04	19.60	15.01
1차산업	1.18	0.87	0.32	0.39	1.01	0.40	0.08	3.59	0.27	0.07	21.69	3.61	26.78
제조업	1.86	4.96	0.64	1.91	0.97	0.32	0.52	1.95	0.07	0.04	12.38	27.18	18.73
축산	1.65	0.29	0.11	0.08	2.02	0.01	0.11	0.21	1.76	0.32	2.51	0.38	50.78
수산	0.09	0.02	0.22	0.11	0.25	0.45	0.00	0.57	0.00	0.04	40.52	8.41	9.30
농산물	0.40	1.04	0.00	0.18	0.41	0.14	0.00	0.08	0.00	0.02	32.61	0.80	32.45
가공식품	2.27	1.39	0.76	0.88	1.54	0.81	0.18	9.90	0.00	0.02	10.83	5.27	19.07
광물성 생산품	0.02	0.02	0.00	0.01	0.04	0.04	0.00	0.07	0.00	0.00	4.48	1.60	1.40
화학공업	3.95	6.43	0.85	2.27	1.44	0.70	0.36	2.61	0.04	0.05	8.01	30.46	19.63
플라스틱	1.80	5.99	0.05	1.78	1.24	0.37	0.43	2.68	0.03	0.03	6.10	40.08	18.71
원피·가죽·모피	3.23	0.86	0.05	14.76	0.15	1.66	0.02	0.68	0.02	0.02	16.53	1.35	36.83
목제품	0.22	1.26	0.00	1.17	0.08	0.53	0.38	0.04	0.01	0.05	13.10	0.54	8.75
목재펠트·종이	1.62	2.73	0.00	2.03	0.67	0.16	0.90	3.13	0.00	0.00	2.82	9.42	27.84
섬유제품	0.95	1.07	0.07	6.32	0.34	0.25	0.11	1.38	0.03	0.02	45.09	8.21	5.96
신발·모자	0.45	0.71	0.00	11.33	0.08	0.27	0.01	0.83	0.08	0.01	67.58	1.62	2.19
시멘트·유리	2.03	4.29	0.07	3.08	0.31	2.63	0.08	1.36	0.01	0.02	25.29	29.34	13.33
철강	1.12	2.22	0.00	0.68	0.30	0.24	0.90	1.26	0.02	0.11	10.49	46.20	8.39
비철금속	0.88	3.61	0.05	0.63	0.38	0.11	0.55	1.00	0.01	0.01	14.00	17.74	9.59
전기전자	1.62	2.17	1.37	0.39	0.32	0.08	0.13	0.73	0.14	0.04	13.74	25.97	20.67
-반도체	1.70	1.68	1.24	0.14	0.23	0.04	0.01	0.33	0.02	0.00	3.72	23.12	27.05
-통신기기	3.89	1.57	0.77	0.40	0.50	0.08	0.62	0.85	0.01	0.17	14.58	30.23	23.70
-가전기기	1.43	3.78	0.45	0.80	0.46	0.17	0.20	1.41	0.15	0.06	24.60	34.13	12.46
-컴퓨터	0.27	0.57	4.35	0.30	0.19	0.02	0.06	0.46	0.55	0.00	22.14	13.98	15.73
기계장비	1.96	11.41	0.16	2.67	2.45	0.22	1.11	2.59	0.02	0.04	4.27	37.41	23.79
-기계	2.06	13.48	0.04	3.34	1.00	0.29	1.31	2.41	0.01	0.05	3.16	37.38	22.98
-정밀기기	1.77	7.54	0.38	1.44	5.15	0.11	0.73	2.92	0.02	0.01	6.34	37.46	25.31
자동차	0.62	21.82	0.01	2.63	3.84	1.05	3.82	2.17	0.26	0.11	3.14	33.77	16.30
철도·항공기·선박	5.48	2.10	0.01	0.39	0.67	0.12	0.08	2.96	0.00	0.09	3.52	10.49	44.79
기타	1.28	2.96	0.49	2.71	0.78	0.25	0.05	10.95	0.00	0.05	11.07	7.94	14.06

21) 같은 기간 미국산 자동차 부문의 한국시장점유율은 16.30%이다.

으로 점유율이 높은 부문은 화학 및 플라스틱으로 각각 6.43% 및 5.99%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영국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골고루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가공식품(9.9%), 철도·항공기·선박(2.96%), 정밀기기(2.92%) 및 기타 제조업(10.95%) 분야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높다. 특히 가공식품과 기타 제조업의 점유율은 미국, 중국에 이어 셋째로 크다.

EU국가 중 3위의 교역대상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특정산업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상당히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죽제품, 신발류의 한국시장점유율은 각각 14.76% 및 11.33%에 이르며 섬유제품, 기계 및 자동차에서의 점유율도 각각 6.32%, 3.34% 및 2.63%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시장점유율이 높은 부문은 철도·항공기·선박(5.48%), 통신기기(3.89%), 화학공업(3.95%), 가죽제품(3.23%)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가공식품(2.27%), 축산물(1.65%) 등 1차산품의 한국시장점유율이 1.18%로 영국과 함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EU FTA시 농산물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해당 농산물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EU국가를 보면 아일랜드는 컴퓨터(4.35%)에서, 네덜란드는 정밀기기(5.15%) 및 자동차(3.84%), 스페인은 시멘트·유리(2.63%) 및 가죽제품(1.66%)에서, 스웨덴은 자동차(3.82%)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높다.

다음으로 10개 신규회원국을 살펴보면, 헝가리 및 폴란드는 축산물(각각 1.76% 및 0.32%)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키프로스와 몰타는 한국 광산물 시장에서, 체코공화국은 시멘트·유리 및 기계장비에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철강에서, 몰타는 반도체에서 상당한 한국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다 개관적인 지표인 대세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²²⁾를 사용하여 한국 및 EU 회원국의 대세계 경쟁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2-16]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그 나라의 총수출에서 그 산업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 산업이 그 나라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 철도·항공기·선박(3.32), 통신기기(3.08)와 반도체(2.18) 등 전기전자(1.87), 그리고 섬유(1.58), 플라스틱(1.40), 철강(1.39), 자동차(1.14)에서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고 있으나, 축산(0.03), 농산물(0.13), 가공식품(0.26), 정밀기기(0.43)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계(1.77), 자동차(1.89), 철도·항공기·선박(1.76)의 대세계 RCA 지수가 높게 나타나 이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도 철도·항공기·선박(1.88), 통신기기(1.86), 화학공업(1.56), 기계(1.43)의 RCA 지수가 대단히 높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신발·모자(3.14), 시멘트·유리(2.98), 가죽제품(2.93), 기계(2.14), 섬유제품(1.76)의 RCA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경우는 철도·항공기·선박(3.44), 자동차(1.47), 화학(1.54) 등 제조업 이외에도 축산(2.04), 농산물(1.25), 가공식품(1.78)의 경쟁력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컴퓨터(2.34), 정밀기기(1.64), 화학(1.48) 등 제조업과 가공식품(2.60), 축산물(3.50), 농산물(2.58) 등 농산품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컴퓨터(3.80), 반도체(1.71), 정밀기기(1.55), 화학(4.51), 축산물(2.16)

- 22)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지수)는 사후적으로 나타난 각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비중을 통하여 한 나라의 품목별 비교우위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특정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에서 그 나라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특정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CA_{kj} = (X_{ki}/X_k)/(X_i/X)$$

(X_{ki} = i국의 k품목 수출액, X_k = k품목의 세계전체 수출액,

X_i = i국의 전산업 수출액, X = 산업의 세계전체 수출액)

RCA 지수가 1보다 크면(혹은 작으면) 그 품목이 수출에서 비교우위(혹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16. 한·EU회원국의 대세계 경쟁력: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

(2001~03년 평균)

	KOR	FRA	GER	GRE	IRE	ITA	NET	POR	SPA	UK	HUN	POL
전 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차산업	0.22	1.53	0.61	3.06	1.00	0.90	2.58	0.99	1.99	0.75	1.01	1.06
제조업	1.15	1.05	1.15	0.80	1.12	1.11	0.89	1.10	0.99	1.05	1.11	1.06
축산	0.03	2.04	0.98	1.01	2.16	0.62	3.50	0.56	1.38	0.59	1.99	1.61
수산	0.65	0.40	0.11	2.84	0.52	0.15	0.86	1.18	1.61	0.51	0.02	0.43
농산물	0.13	1.25	0.35	2.84	0.14	0.78	2.58	0.49	2.81	0.24	1.05	0.90
가공식품	0.26	1.78	0.76	4.07	1.25	1.26	2.60	1.47	1.74	1.20	0.82	1.08
광물성 생산품	0.42	0.27	0.16	1.06	0.05	0.20	0.71	0.25	0.34	0.81	0.16	0.51
화학공업	0.52	1.54	1.15	0.92	4.51	0.87	1.48	0.47	0.95	1.56	0.52	0.55
플라스틱	1.40	1.09	1.29	1.01	0.24	1.16	1.45	0.95	1.22	0.76	0.97	1.20
원피·가죽	1.01	1.07	0.37	3.10	0.23	2.93	0.42	0.45	1.02	0.41	0.62	0.98
목제품	0.04	0.57	0.58	0.29	0.25	0.45	0.25	4.00	0.70	0.17	0.98	2.72
목재펠프·종이	0.49	1.09	1.19	0.61	0.26	0.93	1.09	2.06	1.22	0.98	0.61	1.55
섬유제품	1.58	0.70	0.57	3.14	0.16	1.76	0.51	3.07	0.82	0.49	0.85	1.18
신발·모자	0.52	0.40	0.29	0.34	0.04	3.14	0.54	5.86	1.67	0.29	1.00	0.73
시멘트·유리	0.48	1.34	1.10	1.36	0.35	2.98	0.60	3.21	2.88	0.82	1.06	2.05
철강	1.39	1.27	1.11	1.04	0.08	1.39	0.90	0.90	1.22	0.78	0.72	1.93
비철금속	0.71	0.85	1.22	2.95	0.17	1.08	0.82	0.84	0.94	0.87	0.96	1.67
전기전자	1.87	0.68	0.71	0.30	1.79	0.40	1.08	0.71	0.41	1.04	1.79	0.58
-반도체	2.18	0.50	0.47	0.04	1.71	0.25	0.44	0.63	0.13	0.73	0.18	0.05
-통신기기	3.08	0.92	0.84	0.66	0.80	0.46	0.76	0.21	0.40	1.86	3.35	0.28
-가전기기	1.31	0.85	0.95	0.41	0.79	0.62	0.63	1.30	0.73	0.84	2.28	1.34
-컴퓨터	1.76	0.43	0.47	0.12	3.80	0.18	2.34	0.24	0.19	1.10	1.40	0.04
기계장비	0.69	1.10	1.60	0.46	0.60	1.73	0.96	0.55	0.71	1.36	1.41	0.89
-기계	0.79	1.18	1.77	0.54	0.23	2.14	0.70	0.65	0.83	1.43	1.74	1.17
-정밀기기	0.43	0.88	1.18	0.26	1.55	0.67	1.64	0.30	0.38	1.18	0.57	0.19
자동차	1.14	1.47	1.89	0.08	0.06	0.86	0.53	1.48	2.40	0.94	0.90	0.98
철도·항공기·선박	3.32	3.44	1.76	0.74	0.09	1.18	0.46	0.54	1.24	1.88	0.19	3.18
기타	0.33	0.39	1.01	0.47	0.68	1.30	0.28	0.45	0.65	0.98	0.80	1.44

에서 경쟁력이 있다. 스페인은 자동차(2.40), 철도·항공기·선박(1.24) 등 제조업과 축산(1.38), 수산(1.61), 농산물(2.81), 가공식품(1.74) 등 전 농산품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헝가리는 통신기기(3.35), 가전기기(2.28), 기계(1.74), 축산(1.99)에서, 폴란드는 철도·항공기·선박(3.18), 시멘트·유리(2.05), 목제품(2.72) 및 펄프·종이(1.55)와 축산물(1.61)에서 수출비중이 높다. 그리스의 경우 1차산품의 경쟁력이 높은 가운데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 그리고 원피 등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RCA 지수로 각국의 대세계 경쟁력을 조망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EU 개별회원국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한국과 EU 회원국 간 무역특화지수²³⁾를 사용하여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2-17]은 양국간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대독일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철도·항공기·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및 섬유제품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그리고 기계, 화학, 농산물 등에서 강한 수입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영국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역시 전기전자, 철도·항공기·선박 및 자동차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그리고 화학 및 농산물 부문에서 강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프랑스 교역에서는 자동차, 철도·항공기·선박, 신발류 등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농산물 부문 및 화학, 철강에서는 강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반도체에서는 강한 수입지향성을, 컴퓨터 및 통신기기에서는 수출지향성을 보여 전기전자 전체에서는 특별한 지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3)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한 나라가 특정품목의 국제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X_{kij} , M_{kij} 를 각각 i 국(미국)의 j 국(한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낸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TSI_{kij} = |X_{kij} - M_{kij}| / (X_{kij} + M_{kij})$$

교역상대국이 해당품목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일수록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수입지향적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표 2-17. 한국의 대EU회원국 무역특화지수(TSI)

(2001~03년 평균)

	FRA	GER	GRE	IRE	ITA	NET	POR	SPA	SWE	UK	HUN	POL
전 산업	-0.12	-0.08	0.93	-0.10	0.03	0.37	0.78	0.62	-0.13	0.22	0.57	0.73
1차산업	-0.85	-0.84	-0.67	-1.00	-0.46	-0.85	-0.14	0.06	-0.47	-0.96	-0.96	-0.87
제조업	-0.10	-0.07	0.98	-0.07	0.04	0.40	0.79	0.65	-0.13	0.29	0.66	0.76
축산	-0.96	-0.90	0.00	-1.00	-1.00	-1.00	0.00	-1.00	-1.00	-1.00	-1.00	-1.00
수산	-0.51	-0.21	0.99	-0.97	0.37	-0.69	-0.39	0.54	-1.00	-0.99	0.00	-0.83
농산물	-0.73	-0.95	0.25	-1.00	-0.77	-0.66	-0.33	-0.60	0.73	-0.53	-0.94	-0.87
가공식품	-0.85	-0.77	-0.72	-1.00	-0.52	-0.84	-0.05	-0.24	-0.47	-0.96	0.27	-0.10
광물성 생산물	-0.79	-0.89	-1.00	-1.00	-0.59	0.34	-0.92	-0.95	-0.99	-0.41	-0.96	0.77
화학공업	-0.83	-0.87	0.48	-0.86	-0.64	-0.15	0.58	-0.54	-0.83	-0.67	-0.33	0.09
플라스틱	-0.04	-0.20	0.98	0.86	0.38	0.28	0.93	0.73	0.48	0.18	0.86	0.87
원피·가죽	-0.87	-0.56	-0.40	-0.85	-0.96	-0.34	-0.42	-0.87	0.24	-0.52	0.11	0.71
목제품	-0.48	-0.98	-0.38	-1.00	-0.99	-0.83	-0.84	-0.68	-0.89	-0.28	0.00	-0.95
목재펠프·종이	-0.86	-0.87	0.61	0.32	-0.83	-0.55	-0.40	-0.65	-0.92	-0.64	0.93	0.67
섬유제품	0.54	0.65	0.94	0.35	-0.35	0.68	0.55	0.83	0.76	0.53	0.64	0.97
신발·모자	0.81	0.68	1.00	0.94	-0.85	0.94	-0.17	0.69	0.97	0.61	-0.02	0.58
시멘트·유리	-0.84	-0.29	-0.43	-0.88	-0.62	-0.16	-0.79	-0.85	-0.13	-0.28	0.39	-0.06
철강	-0.64	-0.55	0.97	0.73	0.23	0.24	0.93	0.41	-0.75	-0.17	0.20	-0.82
비철금속	-0.28	-0.57	0.28	0.25	0.18	0.17	0.90	0.64	-0.66	-0.17	0.84	0.76
전기전자	-0.02	0.46	0.95	-0.10	0.52	0.83	0.74	0.89	0.52	0.77	0.58	0.82
-반도체	-0.80	0.41	0.92	0.14	-0.36	-0.54	-0.07	0.04	0.55	0.60	-0.43	0.25
-통신기기	0.30	0.70	0.99	-0.65	0.88	0.77	0.99	0.98	0.58	0.87	1.00	0.87
-가전기기	0.01	-0.07	0.91	-0.31	0.27	0.67	0.72	0.79	0.29	0.42	0.47	0.54
-컴퓨터	0.77	0.93	0.90	-0.33	0.63	0.98	0.49	0.96	0.76	0.95	0.25	0.99
기계장비	-0.44	-0.68	0.96	-0.63	-0.32	-0.12	0.92	0.64	-0.72	-0.28	0.90	0.72
-기계	-0.37	-0.76	0.96	0.07	-0.28	0.42	0.92	0.68	-0.70	-0.18	0.94	0.72
-정밀기기	-0.61	-0.47	0.96	-0.93	-0.51	-0.69	0.80	0.34	-0.80	-0.47	0.42	0.65
자동차	0.91	0.00	1.00	0.99	0.81	0.45	1.00	0.90	0.03	0.80	0.74	0.91
철도·항공기·선박	0.46	0.90	1.00	0.76	0.97	0.30	-0.33	0.38	-0.12	0.68	0.00	-0.95
기타	-0.25	-0.23	0.38	-0.80	-0.63	-0.37	0.31	0.25	0.52	-0.69	0.83	0.44

대이탈리아 교역에서는 역시 자동차, 철도·항공기·선박, 통신기기, 컴퓨터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제품, 가죽제품, 화학,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서 높은 수입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네덜란드 교역에서는 전기전자 및 섬유제품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정밀기기 및 농산물 전 부문에서 수입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헝가리 교역은 화학, 광물성 생산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제조업 전 부문에서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축산 등 전 농산물 부문에서는 강한 수입지향성을 보인다. 대폴란드 무역특화지수는 제조업에서 강한 수출지향성을, 1차산업에서 수입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헝가리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목제품, 철강, 철도·항공기·선박 등에서 수입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지수와 함께 보완성 지표로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와 무역결합도지수(TII)를 구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표 2-18]과 [표 2-19]에 정리하였다.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전기전자(가전기기, 통신기기)와 플라스틱에서 산업내무역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EU FTA 이후 동 산업에서의 협력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역결합도지수로 평가할 때 보완성이 큰 산업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과 독일 간에는 자동차산업에서의 무역결합도지수가 1.14로 양국간 자동차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에서의 양국간 TSI는 0이다. 산업내무역지수로 평가할 때는 자동차는 물론 가전기기, 플라스틱 등에서 산업내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과 영국 간에는 기타제조업에서의 무역결합도가 아주 큰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영국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으로, 양국이 서로 경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양국간 산업내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은 기계, 철강, 비철금속 및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TSI로 평가한 경쟁력에서

표 2-18. 한·EU회원국간 산업내무역지수(GL지수)

(2001~03년 평균)

	FRA	GER	IRE	ITA	NET	POR	SPA	SWE	UK	HUN	POL
전 산업	0.88	0.92	0.90	0.96	0.63	0.22	0.38	0.87	0.78	0.43	0.27
1차산업	0.15	0.16	0.00	0.54	0.15	0.80	0.94	0.53	0.04	0.04	0.13
제조업	0.90	0.93	0.92	0.96	0.60	0.21	0.35	0.87	0.71	0.34	0.24
축산	0.04	0.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산	0.49	0.79	0.03	0.63	0.31	0.09	0.46	0.00	0.01	0.00	0.17
농산물	0.27	0.05	0.00	0.23	0.34	0.67	0.40	0.27	0.47	0.06	0.13
가공식품	0.15	0.23	0.00	0.48	0.16	0.79	0.76	0.53	0.04	0.46	0.76
광물성 생산물	0.21	0.11	0.00	0.28	0.54	0.08	0.05	0.01	0.59	0.04	0.23
화학공업	0.17	0.13	0.14	0.36	0.85	0.42	0.46	0.17	0.33	0.67	0.77
플라스틱	0.95	0.80	0.14	0.62	0.72	0.07	0.27	0.52	0.82	0.14	0.13
원피·가죽·모피	0.13	0.44	0.15	0.04	0.66	0.56	0.13	0.69	0.48	0.75	0.29
목제품	0.27	0.02	0.00	0.01	0.17	0.16	0.32	0.11	0.60	0.00	0.05
목재펠프·종이	0.14	0.13	0.68	0.17	0.45	0.60	0.35	0.08	0.36	0.07	0.33
섬유제품	0.46	0.35	0.65	0.65	0.32	0.45	0.17	0.24	0.47	0.36	0.03
신발·모자	0.19	0.32	0.06	0.15	0.06	0.69	0.31	0.03	0.39	0.50	0.42
시멘트·유리	0.16	0.71	0.12	0.38	0.84	0.21	0.15	0.86	0.65	0.61	0.69
철강	0.36	0.45	0.27	0.77	0.76	0.07	0.59	0.25	0.80	0.60	0.18
비철금속	0.72	0.43	0.69	0.82	0.83	0.10	0.36	0.34	0.80	0.16	0.24
전기전자	0.93	0.54	0.90	0.48	0.17	0.26	0.11	0.48	0.23	0.42	0.18
-반도체	0.20	0.59	0.86	0.64	0.46	0.79	0.46	0.45	0.40	0.56	0.75
-통신기기	0.70	0.30	0.35	0.12	0.23	0.01	0.02	0.42	0.13	0.00	0.13
-가전기기	0.97	0.93	0.69	0.73	0.33	0.28	0.21	0.71	0.58	0.53	0.46
-컴퓨터	0.23	0.07	0.67	0.37	0.02	0.51	0.04	0.24	0.05	0.50	0.01
기계장비	0.56	0.32	0.37	0.68	0.88	0.08	0.36	0.28	0.72	0.10	0.28
-기계	0.63	0.24	0.87	0.72	0.58	0.08	0.32	0.30	0.82	0.06	0.28
-정밀기기	0.39	0.53	0.07	0.49	0.31	0.20	0.66	0.20	0.53	0.58	0.35
자동차	0.09	0.91	0.01	0.19	0.55	0.00	0.10	0.92	0.20	0.26	0.09
철도·항공기·선박	0.54	0.10	0.24	0.03	0.20	0.01	0.56	0.25	0.32	0.00	0.05
기타	0.75	0.77	0.20	0.37	0.63	0.69	0.75	0.48	0.31	0.17	0.56

주. 상호보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품목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 무역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산업내 무역(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의 상호보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루벨-로이드 지수(GL 지수)를 사용하였다.

$$GL_{ij}^k = 1 - TSF_{ij}^k = \{ |X_{ij}^k - M_{ij}^k| / (X_{ij}^k + M_{ij}^k) \}$$

X_{ij}^k , M_{ij}^k 는 각각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

표 2-19. 한·EU회원국간의 무역결합도지수(TII)

(2001~03년 평균)

	FRA	GER	IRE	ITA	NET	SPA	SWE	UK	HUN	POL
전 산업	0.28	0.35	0.33	0.32	0.25	0.12	0.27	0.35	0.11	0.05
1차산업	0.16	0.14	0.23	0.10	0.13	0.10	0.14	1.07	0.48	0.10
제조업	0.36	0.43	0.40	0.41	0.36	0.15	0.33	0.41	0.11	0.06
축산	0.17	0.03	0.04	0.03	0.19	0.00	0.35	0.08	1.56	0.30
수산	0.05	0.01	0.30	0.18	0.10	0.14	0.00	0.24	0.00	0.15
농산물	0.07	0.30	0.00	0.06	0.05	0.02	0.01	0.07	0.00	0.04
가공식품	0.26	0.18	0.43	0.16	0.20	0.22	0.23	1.82	0.01	0.02
광물성 생산품	0.01	0.01	0.04	0.02	0.02	0.05	0.00	0.02	0.00	0.00
화학공업	0.52	0.56	0.14	0.61	0.32	0.35	0.26	0.37	0.13	0.15
플라스틱	0.34	0.46	0.13	0.36	0.28	0.14	0.35	0.79	0.06	0.03
원피·가죽·모피	0.61	0.23	0.16	1.19	0.12	0.77	0.05	0.37	0.07	0.03
목제품	0.08	0.21	0.01	0.62	0.11	0.35	0.09	0.06	0.01	0.03
목재펠프·종이	0.30	0.23	0.01	0.51	0.20	0.06	0.15	0.71	0.00	0.00
섬유제품	0.28	0.19	0.30	0.85	0.23	0.15	0.29	0.63	0.05	0.02
신발·모자	0.23	0.24	0.06	0.86	0.05	0.08	0.03	0.63	0.14	0.02
시멘트·유리	0.31	0.39	0.14	0.24	0.17	0.44	0.08	0.37	0.02	0.01
철강	0.18	0.20	0.04	0.11	0.11	0.10	0.40	0.36	0.05	0.08
비철금속	0.21	0.30	0.20	0.14	0.15	0.06	0.35	0.26	0.02	0.01
전기전자	0.48	0.30	0.55	0.23	0.10	0.09	0.12	0.16	0.14	0.10
-반도체	0.68	0.35	0.54	0.13	0.28	0.14	0.06	0.11	0.19	0.14
-통신기기	0.85	0.19	0.63	0.22	0.23	0.09	0.16	0.11	0.00	0.98
-가전기기	0.34	0.40	0.41	0.31	0.24	0.11	0.18	0.37	0.12	0.07
-컴퓨터	0.14	0.12	0.84	0.39	0.03	0.04	0.21	0.10	0.70	0.08
기계장비	0.36	0.71	0.19	0.37	0.84	0.15	0.57	0.42	0.02	0.06
-기계	0.35	0.76	0.12	0.37	0.47	0.16	0.59	0.37	0.01	0.06
-정밀기기	0.41	0.64	0.18	0.51	1.03	0.14	0.56	0.55	0.07	0.09
자동차	0.08	1.14	0.18	0.73	2.40	0.21	2.27	0.50	0.51	0.16
철도·항공기·선박	0.33	0.12	0.08	0.08	0.52	0.05	0.09	0.35	0.00	0.05
기타	0.67	0.31	0.52	0.49	0.93	0.18	0.03	2.51	0.01	0.05

주. 양 국가간 교역에 나타나는 상호보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역결합도지수(TII_{ij}^k)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II_{ij}^k = (X_{ij}^k/X_i^k)/(M_j^k/M^k)$$

X_{ij}^k 는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 X_i^k 는 i국의 k품목 총수출, M_j^k 는 j국의 k품목 총수입, M^k 는 k품목의 세계 총수입.

TII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의 무역에 관해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세계평균보다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상호보완성이 세계평균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는 정밀기기에서 1보다 큰 무역결합성이 나타난다. 역시 TSI로 평가할 때 네덜란드의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양국간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계장비, 비철금속, 화학 등이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에는 전기전자(반도체), 기계 산업에서 산업내무역비중이 높다.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는 가전기기, 자동차, 플라스틱 산업에서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다. 원피·가죽·모피 등에서 양국간 무역결합도지수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동 산업에서는 이탈리아에서 거의 완전특화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간 경쟁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국과 스웨덴 간에도 자동차산업에서 높은 무역결합도 수치를 발견할 수 있다. 동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력은 비슷하며 산업내무역지수도 0.92에 달해 한·EU FTA 이후 상호보완적으로 양국간 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회원국의 경우 한국과의 산업내무역지수도 작고 무역결합도도 낮아 현재로서는 한국의 수출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1) 분류체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24개 산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산업별 경쟁력을 추정하고 있다.

- 제1산업군(경쟁력강 산업군)
- 제2산업군(경쟁력열위 산업군): 제1산업군보다 경쟁력이 작으나 제3산업군보다는 커서 조건부로 자유화가 가능한 산업군
- 제3산업군(민감 산업군, 보호대상 산업군)

- 제4산업군(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 경쟁력이 없어 FTA에 따른 추가적 무역자유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취약산업군

본 장에서는 4단계를 거치면서 산업군을 조정하며 경쟁력에 따라 분류해보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대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 절대적 경쟁력지표)를 출발점으로 활용하여 산업군 분류를 시작한다. 2단계에서는 제4산업군(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 선정의 오류, 즉 쉽게 포기함으로써 손해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수정작업을 할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3산업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나 4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전면 자유화하는 오류를 배제하고자 한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대상국가와의 무역특화지수로 평가한 EU 각 회원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업경쟁력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산업을 한·EU회원국 간 민감산업 및 취약산업, 경쟁력 산업으로 분류한다. 4단계에서는 대상국별로 분류된 산업군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 지표를 사용하여 보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독일 수입특화 산업일지라도 대세계 경쟁력이 아주 강할 경우 무세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제1단계

1단계에서는 RCA 지수를 통하여 모든 산업의 객관적인 경쟁력에 의해 4개 산업군으로 분류한다.

[표 2-20]에서 제1산업군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협상에서 무세

표 2-20. RCA_j^k 값에 따른 산업군 분류기준

품 목 군	기 준	실 명
제1산업군	$RCA_j^k \geq 1$	경쟁력강 산업군(FTA 적극추진 산업)
제2산업군	$0.5 \leq RCA_j^k < 1$	경쟁력열위 산업군(조건부 협상추진 산업군)
제3산업군	$0.1 \leq RCA_j^k < 0.5$	보호대상 산업군(민감 산업군)
제4산업군	$RCA_j^k < 0.1$	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

화 추진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제4산업군은 우리나라가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경쟁력 취약을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FTA 무역자유화가 국내산업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작은 산업이다. 제2산업군과 제3산업군은 각각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품목들로서 외국제품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조건부 무역자유화 추진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3산업군으로 분류될 경우 민감산업으로 장기간 보호 검토가 필요한 산업이다.

나) 제2단계

2단계에서는 RCA 지수의 증가율로 4품목군(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 선정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한다. 즉, RCA 지수의 증가율이 높으면 미래에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RCA 지수가 낮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여 손해 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의 제1단계에서는 단순히 대세계 RCA 지수를 이용한 경쟁력만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각 산업별 동태적인 경쟁력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제2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은 약하지만 RCA 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²⁴⁾ 산업인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들 산업군을 제3품목군으로 이동하였다.

표 2-21. 제2단계에 의한 변화

변 화 기 준	제1단계	제2단계
	제1 산업군	변화없음
	제2산업군	변화없음
	제3산업군	변화없음
RCA_j^k 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제4산업군	제3산업군

24) 여기서는 기간을 1996~97년, 1998~2000년, 2001~03년 등 세 기간으로 나누고 기간 평균 RCA 지수가 증가하는 경우 산업군을 조정하였다.

다) 제3단계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EU 회원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EU 회원국과의 무역특화지수로 산업분류를 조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평가에서 경쟁이 치열(제2산업군)하거나 경쟁력이 취약(제3산업군)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 가운데 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을 추출하여 이들을 제1산업군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EU 회원국과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제1품목군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추출, 이를 제2산업군으로 이동시킨다. 즉, 앞의 제1단계에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 평가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수출특화산업군인 제1산업군으로 분류되었으나, 협상 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제3산업군으로 이동한다.

표 2-22. 제3단계에 의한 변화

변화기준	제2단계	제3단계
TST_{ij}^k 에 의해 제2산업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산업군	제2산업군
TST_{ij}^k 에 의해 제1산업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2산업군	제1산업군
TST_{ij}^k 에 의해 제1산업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3산업군	제1산업군
	제4산업군	변화없음

라) 제4단계

3단계에서 협상대상국별로 선정된 산업군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 지표를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3단계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경쟁력 수준을 강조한 것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단계다. 즉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한 나라의 특

정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 비교, 상대적인 지수로 분류한 것을 다시 절대적인 대세계 경쟁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완해 준다. 예를 들면 대독일 수입특화 산업일지라도 대세계 경쟁력이 아주 강할 경우 FTA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2, 3, 4산업군 중 RCA_j^k 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RCA 지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산업을 선정하여 제4산업군에 속해 있던 산업은 제3산업군으로 조정하고, 제2, 3산업군에 속해 있던 산업은 제1산업군으로 조정한다.

표 2-23. 제4단계에 의한 변화

변화기준	제3단계	제4단계
	제1산업군	변화없음
$RCA_j^k \geq 2$	제2산업군	제1산업군
$RCA_j^k \geq 2$	제3산업군	제1산업군
$RCA_j^k \geq 2$	제4산업군	제3산업군

2) 분류 결과

1, 2단계에서 1산업군(경쟁력강 산업군)으로 선정된 산업은 자동차, 섬유제품, 컴퓨터, 가전기기, 통신기기, 철도·항공기·선박,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철강, 반도체 등 10개 산업이었고, 제2산업군(경쟁력열위 산업군)에는 신발·모자, 수산, 화학공업, 비철금속, 기계 등 5개 산업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물, 목재펄프·종이, 시멘트·유리, 기타제조업, 정밀기기 등 7개 산업이 제3산업군(보호대상 민감산업군)으로, 마지막으로 축산, 목제품 등 2개 산업이 제4산업군(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으로 분류되었다.

3단계에서 양국간 TSI를 사용하여 산업군을 조정하였는데 한·프랑스의 경우 신발·모자가 2산업군에서 1산업으로,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철강, 반도체

는 1산업군에서 차순위 경쟁력 산업군인 제2산업군으로 변동하였다. 4단계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1산업군으로 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한·프랑스 양국간 관계에서 민감품목(제3산업군)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펠트·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이 분류되었다. 또한 4산업군(절대적 경쟁력취약 산업군)으로 축산 및 목재 산업이 선정되었다.

한·독일의 경우는 3단계 품목군 조정에서 역시 신발·모자가 2산업군에서 1산업군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전,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및 철강이 제1산업군에서 제2산업군으로 이동하였다. 4단계에서의 산업군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산업군 및 1산업군은 한·프랑스의 경우와 동일하며,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오직 가전만 1산업군에서 2산업군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다. 한·영국간의 산업군 분류도 앞의 두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최종결과를 볼 때 3산업군 및 1산업

표 2-24. 각 단계별 산업군 변화: 24개 산업

(단위: 개)

구 분		제1산업 (경쟁력강)	제2산업 (경쟁열위)	제3산업 (민감)	제4산업 (절대취약)
공통	1단계	10	5	7	2
	2단계	10	5	7	2
프랑스	3단계	7	8	7	2
	4단계	8	7	7	2
독일	3단계	7	8	7	2
	4단계	7	8	7	2
이탈리아	3단계	9	6	7	2
	4단계	10	5	7	2
영국	3단계	9	6	7	2
	4단계	9	6	7	2
헝가리	3단계	16	4	2	2
	4단계	17	3	2	2
폴란드	3단계	16	3	3	2
	4단계	17	2	3	2

군으로 분류된 산업이 동일하다. 한·독일과 비교할 때, 가전기기 및 플라스틱이 2산업군(경쟁력위 산업군)에서 1산업군(경쟁력강 산업군)으로 이동한 것만 차별적이다.

그러나 한·이탈리아간의 산업군 분류는 전통적 경공업제품에서 기술 및 디자인 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앞의 경우와

표 2-25. 24개 산업의 주요국별 산업군 분류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폴란드
1 산업군	섬유제품, 신발·모자,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기· 선박	섬유제품, 신발·모자,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기· 선박	수산,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기· 선박	플라스틱, 섬유제품, 신발·모자,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자동차, 철도·항공기· 선박	가공식품,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목재펠프·종이, 섬유제품, 시멘트·유리,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철도·항공 기·선박, 기타제조업	광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플라스틱, 원피·가죽·모피, 목재펠프·종이, 섬유제품, 신발·모자, 비철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기기, 컴퓨터, 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철도·항공기· 선박, 기타제조업
2 산업군	수산, 화학공업, 플라스틱, 원피·가죽· 모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수산, 화학공업, 플라스틱, 원피·가죽· 모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가전기기, 기계	화학공업, 원피·가죽· 모피, 섬유제품, 신발·모자, 기계	수산, 화학공업, 원피·가죽· 모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수산, 화학공업, 신발·모자	수산, 철강
3 산업군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펠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펠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펠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농산물, 광물성 생산품	농산물, 가공식품, 시멘트·유리
4 산업군	축산, 목제품	축산, 목제품	축산, 목제품	축산, 목제품	축산, 목제품	축산, 목제품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이탈리아간 무역특화지수로 산업군을 조정한 3단계에서 수산 및 비철금속이 2산업군에서 1산업군으로 이동했으나, 섬유제품, 원피·가죽, 반도체가 1산업군에서 2산업군으로 하향이동했다.²⁵⁾

EU 신규회원국을 대표하는 헝가리 및 폴란드의 경우는 더 큰 차별성을 보이며, 기존회원국 산업군 분류와 완전히 다른 산업선정 결과를 보여준다.

한·헝가리의 경우 2단계에서 1산업군이었던 반도체가 2산업군으로 이동했으나, 2단계에서 2산업군 또는 3산업군이었던 7개 산업(비철금속, 기계, 가공식품, 목재펄프·종이, 시멘트·유리, 기타제조업, 정밀기기)이 1산업군으로 이동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력강 산업군(1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이 17개이었으며, 2산업군으로 수산, 화학공업, 신발·모자 등 3개 부문이, 그리고 3산업군으로 농산물, 광물성 생산품 등 2개 부문이 선정되었다.

한·폴란드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국이 아주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헝가리의 경우와 유사하다. 17개 부문이 1산업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쟁력 열위의 2산업군으로는 수산, 철강 등 2개 부문이, 마지막으로 보호대상 민감산업군으로는 농산물, 가공식품, 시멘트·유리 등 3개 부문이 선정되었다.

각국별 민감산업군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한·EU FTA 추진시 민감산업 후보군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펄프·종이, 시멘트·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 7개 산업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중 광물성 생산품, 목재펄프·종이는 물론 우리의 경쟁력이 약하나 자원의 성격이 강해 우리가 개방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민감산업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²⁶⁾ 반면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제조업의 핵심 중추산업인 기계 산업

25) 4단계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높은 RCA 지수를 반영하여 1품목군으로 재조정하였다.

26) 이를 반영하여 동 산업에서의 관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광물성 생산품(HS 25~27)의 2004년 관세율은 1.30~5.25이며, 목재펄프·종이(HS 47~49)의 관세율은 0~1.37 범위에 있다.

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기계 산업도 민감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민감산업 후보군은 농산물, 가공식품, 시멘트·유리, 기계,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 6개 부문이다.

동 후보군의 기본 무역자료를 다시 정리한 것이 [표 2-26]이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유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산업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으로 본 우리나라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한·EU FTA에 따른 국내 업체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 인접성 및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의 경우도 EU국가의 한국시장점유율이 그다지 크지 않아 FTA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의 한국시장점유율이 각각 9.9%, 2.3%, 3.1%로 어느 정도 충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부품목별로 볼 때 농업적 특성보다는 제조업 특성이 강한 품목에서의 수입비중이 커서 국내 산업이 받을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로 국내산업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민감산업은 역시 기계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일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산업에서는 EU 주요국의 한국시장점유율이 크고, 무역적자 폭도 상당한 규모이며, 상대적인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U 주요국으로부터의 선진화된 기계류 수입을 통하여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3. 한·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3절에서는 그동안 양국간 제기되어 온 주요 통상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는 양자 경제관계의 기본구도를 살펴본바, 이제는 미시적으로 들어가 양자간 어떠한 통상현안이 있으며, 이러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살펴볼

표 2-26. 민감산업 후보군의 주요지표

		농산물	가공식품	시멘트·유리	기계	정밀기기	기타 제조업
HS 단위		6~14	15~24	68~70	84(-8471, 8473)	90~92	71, 93~99
4단계	대 프랑스	4	4	4	3	4	4
	대 독일	4	4	4	3	4	4
	대 이탈리아	4	4	4	3	4	4
	대 영국	4	4	4	3	4	4
	대 헝가리	4	1	1	1	1	1
	대 폴란드	4	4	4	1	1	1
한국시장 점유율 (%)	프랑스	0.40	2.27	2.03	2.06	1.77	1.28
	독일	1.04	1.39	4.29	13.48	7.54	2.96
	이탈리아	0.08	9.90	1.36	2.41	2.92	10.95
	영국	0.85	3.06	2.69	6.34	3.39	8.22
상품수지 (천 달러)	대 프랑스	-10,215	-68,146	-36,465	-144,999	-92,286	-23,002
	대 독일	-30,895	-39,010	-38,604	-1,499,689	-334,512	-51,258
	대 이탈리아	-1,936	-314,228	-9,915	-93,268	-125,824	-399,399
	대 영국	-4,861	-19,852	-46,374	-190,262	-67,234	-92,672
산업특성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천달러)	-2,546,664	-1,788,136	-1,077,813	-824,698	-4,292,236	-669,543
	한국수출비중(%)	0.29	0.86	0.52	7.11	1.52	2.22
	한국수입비중(%)	1.92	2.07	1.24	8.15	4.36	2.79
무역특화 지수	대 프랑스	-0.73	-0.85	-0.84	-0.37	-0.61	-0.25
	대 독일	-0.95	-0.77	-0.29	-0.76	-0.47	-0.23
	대 이탈리아	-0.77	-0.52	-0.62	-0.28	-0.51	-0.63
	대 영국	-0.53	-0.96	-0.28	-0.18	-0.47	-0.69
대세계 RCA 지수	한국	0.13	0.26	0.48	0.79	0.43	0.33
	프랑스	1.25	1.78	1.34	1.18	0.88	0.39
	독일	0.35	0.76	1.10	1.77	1.18	1.01
	이탈리아	0.78	1.26	2.98	2.14	0.67	1.30
	영국	0.24	1.20	0.82	1.43	1.18	0.98

것이다. 이는 양자간 경제관계의 기본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현안이 주요 협상의제로 다시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현안은 크게 통상현안과 협력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가. 주요 통상현안

그동안 한국과 EU 간 현안이 되어 온 조선분쟁과 DRAM 분쟁이 WTO 패널의 판정으로 해결단계로 접어들어 따라 2005년 현재 양국간 통상관계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통상현안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개별사안에서 적지 않은 협의사안이 있는 바, 이를 무역구제조치를 포함하는 상품무역 분야, 서비스무역 분야, 지식재산권, 환경 등으로 구분해서 논의를 전개한다.

1) 상품무역 분야

자동차 분야는 양국간 매년 협의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EU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심각한 무역역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04년도 한국산 승용차의 대EU 판매는 총 59만대로 EU시장 점유율은 3.3%인 데 반해 EU자동차의 국내 판매는 1만 4천대로 EU의 국내 승용차시장점유율은 1.6%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최근 수입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²⁷⁾ 특히 EU산 자동차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 EU산 자동차의 국내판매 증가율은 2001년 64.6%, 2002년 114.5%, 2003년

27) 2004년 수입차시장 규모는 3만 4,712대, 13억 3천만 달러로 4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물량으로는 3.1배, 금액으로는 4.6배 급팽창하였다. 2005년 1~4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는 1만 1,491대로 2004년 동기대비 3.5%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내수판매가 5.7%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25.8%, 2004년 4.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이 중·소형차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U측에서 중·소형 승용차의 판매에 좀 더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²⁸⁾

자동차 분야와 관련하여 EU측은 무역역조 이외에도 많은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 한 예로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기준을 미국식으로 따르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이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측이 디젤차의 경우 유럽식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도 현재 UN/ECE/WP29(UN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 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조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EU에 대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국간 현안은 시장접근과 관련된 것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이 까다롭고 수입기준이 EU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이 부문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SPS)이 사실상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²⁹⁾ 한편 우리측은 인삼제품의 수출에 있어 독일이 이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출에 추가적 비용이 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⁰⁾ 또한 우리측은 삼계탕을 포함한 신선가금육의 수출을 허용해줄 것과 목재포장재 지

28) 2005년 4월 배기량별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배기량 구분	국산차(대)	수입차(대)	수입차시장점유율(%)
1000cc 이하	16,381	0	0.00
1001~1500cc	37,067	32	0.09
1501~2000cc	160,990	1,496	0.93
2000cc 이상	56,579	5,879	10.39
합 계	271,017	7,407	2.73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29) 예를 들어 축산물 수입허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공공장 등록과 관련하여 미국·캐나다와 EU 회원국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이하여 EU회원국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한 후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30) HS10단위의 30개 인삼관련 품목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는 현재 식품으로 수출되는 데 반해 스위스와 독일에는 의약품으로 수출되고 있다. 의약품은 등록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침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의약품은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많은 개선을 요청해온 사안이다. EU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산정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 다국적 제약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유럽제약협회(EFPIA)의 청원을 수용하여 1999년 6월 무역장벽규제(Trade Barriers Regulation; TBR)³¹⁾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³²⁾ 한국 보건복지부의 약가산정 방식 개선에 따라 동 조사는 2000년 중지되었으나,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장기 계류되고 있어서 완전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현안으로는 A-7 pricing,³³⁾ 약가재평가제도(Triennial Re-pricing),³⁴⁾ 실거래

31) EU는 당초 역외국가들의 불공정무역에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1984년 신통상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NCPI)을 채택하였다. NCPI는 역외국의 불법적이고 다자간 무역협정에 위배되는 통상관행이 EU 산업에 중대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가쳐오는 경우나 제3국 시장에서 EU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발동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대응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NCPI에 따른 특정조치의 채택은 국제규범, 특히 GATT나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조치가 가능한 301조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301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NCPI가 발동된 건수는 총 5건인데 이 중 한 건이 서비스 분야인 해상운송과 관련되어 발동되었다. NCPI는 WTO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1994년 TBR로 수정·보완되었다. TBR에서는 NCPI와 달리 청원권자의 범위에 EU의 산업 및 회원국뿐만 아니라 EU내 개별기업도 포함되었다. TBR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면 EU내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절차를 거친 후, 적합한 경우 심사절차를 걸쳐 각료이사회에서 조건부 가중다수결로 제재조치가 채택될 수 있다. 제재조치로는 해당국가에 대한 양허유예 및 철회, 관세인상 및 과징금 부과, 수량규제 등이 사용된다.

32) 1999년 6월 15일 유럽제약협회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신약 시판과 관련한 각종 규제 및 약가산정 등에 있어 수입의약품을 차별대우하고 있어 GATT NT(내국민대우), Transparency(투명성), WTO TBT(기술장벽협정),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EU 업계에 연 4.5억~5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음을 이유로 EU 집행위에 TBR 조사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33) 신약 중에서 약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적 신약(innovative drug)’의 경우 선진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의 약가를 기준으로 한 조정평균가로 약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는 선진 7개국 의약품 판매가격의 약 83% 수준(일반 신약의 경우 4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EU는 혁신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신약에 대해 A-7 pricing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4) 최초 가격산정시 참고하고 있는 외국 7개국의 약값 변화 등 가격변동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가상환제도(Actual Transaction Pricing),³⁵⁾ 그리고 의약품관련 자료보호(Data Protection)³⁶⁾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EU는 TBR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은 그 조건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여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의 적합성 및 안전성 검사와 기능성화장품제도 도입이 EU측 화장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EU 집행위는 1998년 5월 이래 이 문제와 관련하여 TBR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그동안 사전품질검사제의 사후관리제로의 전환, 라벨링 사전 승인제 폐지, 화장품 원료에 대한 EU내 검사결과 인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시 제출자료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TBR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종결하기를 요청하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능성 심사를 통과한 수입화장품의 품목 수는 2002년 100개 품목(12.9%)에서 2003년 180개 품목(17.7%), 2004년 369개 품목(28%)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캄코더의 세번(Tariff Headings) 분류 문제도 있다.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캄코더가 그 기능에 따라 관세율이 4.9%와 14%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가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이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다. 더구나 추가기능이 가능한 캄코더의 경우 이미 통관된 물품에 대해 14%의 관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약값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통상적으로 약값은 대체약품의 증가,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다. EU는 가격인상 요인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및 약국에 상환하는 약가를 산정함에 있어 도매상 공급가격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기존 약가를 재평가하는 제도로서 도매상들이 EU 제약업체로부터 가격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36) 이는 TRIPS와 관련된 사안으로 EU는 품목허가를 위해 식약청에 제출한 미공개 자료가 보호받지 못하며, 학술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여 복제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식약청과 특허청의 업무 연계를 통해 특허침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TRIPS에 따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학전문지에 출판된 임상시험자료가 TRIPS 39.3조의 보호대상인 “허가목적으로 정부에 제출된 미공개 정보”로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가별로 소급적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는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한국측이 제기하고 있다.

2) 무역구제조치

EU는 인도, 미국과 함께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편이다. 2005년 6월까지 WTO에 보고된 반덤핑 제소건수를 보면 EU는 1995년 이후 총 318건을 제소하여 인도(412건), 미국(358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EU가 제기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최근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제소건수를 보면 EU는 인도(80건), 미국(67건), 중국(60건)에 이어 52건으로 여전히 넷째로 반덤핑 제소를 빈번히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EU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총 25건에 달해, 중국(56건), 인도(27건)에 이어 EU로부터 셋째로 많은 피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의 대EU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EU의 한국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 조사 및 제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2005년 12월 현재 총 6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 품목은 덤핑 조사 중이다(표 2-27 참고). 아울러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7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이다.

반덤핑 규제와 관련하여 2005년 7월까지만 해도 총 9건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주철제관연결구류, 14인치 컬러 브라운관, 상업용 전자저울의 3건에 대해 반덤핑 부과가 종결되었으며, PET 칩의 경우는 2005년 12월 1일부로 종결 예정이었으나 EU 기업들의 문제제기로 현재 중간재심판정이 내려져 일단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며,³⁷⁾ 한국산 합성고무와 철강제 로프 및 케이블의 경우는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나 전자의 경우 무혐의, 후자의 경우 미소마

진으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상계관세와 관련해서 EU는 자신의 적극적인 보조금 활용정책을 고려하여 상계관세조치 부과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1997년부터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6건이 제소된 바 있다. 현재 D램 반도체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2003년 4월 33%의 예비판정을 하였고, 8월에는 34.8%의 최종상계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표 2-27. EU의 대한민국 수입규제현황(2005년 12월 현재)

구 분	품 목 명	규 제 내 용	관세율(%)
반덤핑 관 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 2001. 6 제소, 조사 개시 - 2002. 8 덤핑 최종판정	44
	PET 필름	- 2000. 5 조사 개시 - 2001. 8 덤핑 최종판정	0~7.5
	컬러TV (16인치 이하, 17인치 이상)	- 1998. 12 D사 15.1% 판정 - 2002. 8 중간 재심판정	15
	3.5인치 플로피디스크	- 1994. 9 덤핑 최종판정 - 2002. 2 지속판정 - 2006. 6 종료 예정	8.1
	PET 칩	- 1999. 9 제소 - 2000. 11 덤핑 최종판정 - 2005. 12 부분 중간재심판정	0~26.5
	폴리에스테르 합성단섬유	- 2000. 9 제소 - 2000. 12 최종 확정판정	0~20.2
	양문형 냉장고	- 2004. 6 조사개시	조사중
세이프가드	철강제품(7개 제품)	- 2002. 3 잠정관세 부과 - 2002. 9 긴급수입제한으로 전환	
상계 관세	반도체(D램)	- 2002. 6 제소 - 2003. 8 확정관세 결정	34.8

자료 : www.kotra.or.kr에서 정리.

- 37) 양문형 냉장고의 2004년 대EU 수출실적은 4.4억 달러, 2005년 1/4분기에는 2.1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는 상계관세의 적절성 여부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3월 22일 EU집행위는 EU로 수입되는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가 적절히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개시를 공표하였다. 이는 EU 집행위가 상계관세부과조치 감시를 위해 2004년 6월 및 10월 각각 하이닉스로부터 제출받은 통계가 불일치하며, 독립적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이후 행해진 조치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계관세부와 이후에도 하이닉스의 EU내 시장점유율이 유지 내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EU 업계가 지적하면서 우회수출 가능성 등 상계관세부과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관련 자료 제출 및 청문회 등의 일정이 남아 있으나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판정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처럼 EU가 꾸준히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외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조선

1999~2004년 계속된 한·EU 조선분쟁은 2004년 12월 WTO 패널이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사안이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과 선박제작금융 부문을 제외한다면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EU가 2002년 6월 결정한 계약가액 6% 한도의 보조금 지급 결정은 WTO 규정에 합당하지 않음을 밝혔다.³⁸⁾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조선업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한·EU 조선분쟁은 사실상 한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며, 현시점에서 조선분야는 더 이상 양자간 분쟁의 쟁점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자간 입장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양자간 시장접근 분야와

38) 보다 자세한 경과과정은 김홍중·이종화(2004) 참고.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WTO에서의 분쟁절차와는 별도로 2002년 12월부터 OECD 조선작업반에서는 OECD 신조선협정(New Shipbuilding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OECD 신조선협상의 주요 이슈는 보조금(subsidies)과 가격관행(pricing practices)인데, 우리측은 WTO 협정보다 강화된 보조금 규율은 선호하나 가격관행 도입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는 이 협상에서 우리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가격관행에 대한 규율 도입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SNG 회의 이후 중단된 가격관행 논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³⁹⁾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EU, 일본 및 한국이 현행 WTO 보조금 협정보다 강화된 규제를 의미하는 ‘WTO Plus’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현재 협상진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4) 서비스 무역

가) 법률시장 개방

EU는 그동안 한·EU 공동위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영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촉구해 왔다. 즉, 한국이 제출한 GATS 양허안⁴⁰⁾을 평가하지만,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여전히 만족할 만

39) EU와 일본은 조선업계의 원가이하 판매행위 등 저가수주(low pricing)를 규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조선시장의 특성상 가격관행규율의 이론적·현실적 근거가 희박함을 이유로 가격관행규율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해서 불법보조금으로 담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가격 자체에 대한 규율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40) 2003년 3월과 2005년 5월에 WTO에 제출된 우리측 개방안은 외국 로펌이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 변호사들이 ‘외국법 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자격으로 자격취득국법과 국제공법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법 자문사의 국내법적 절차인 민·

한 수준이 아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 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 GATS 협상 결과 이전에 대폭적인 개방을 요청해 오고 있다. EU는 법률서비스시장 조기개방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EU 이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총 11개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미국, 호주 등은 국내 변호사·로펌과의 동업·합작과 국내 설립된 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까지 요구는 상황이다.

부문별로 한국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변호사의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문제에서는 아직 한국 법률서비스업계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표 2-28. 주요국 1차 양허안 비교(총 60개국 양허)

	양허 범위	동업 및 고용
한국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공법만 가능	불허
미국	16개국 및 D.C.에서만 자격취득국법 서비스 가능	뉴욕 등 일부 주에서 허용
EU	자격취득국법, EC법, 국제법 가능	허용
일본	자격취득국법 및 제3국법 자문	고용은 불허, 동업은 경력 5년 이상시 허용
중국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 자문, 중국법 관련 업무는 수탁으로 가능	외국로펌과 국내로펌 간 수탁계약 가능
스위스	모든 법률자문 가능	허용

주: 일본은 1986년 외국 로펌과 사안별 제휴를 인정한 이후 1994년 특정 공동사업 인정, 1998년 협외 사법에 대한 제한 철폐에 이어 2003년 외국변호사와 동업 및 고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2005년 7월 이후 발효되었음.

자료: 외교통상부(2005).

형사소송의 법정 대리 등은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 로펌은 국내에 대표사무소 설립은 가능하나 국내 로펌과의 동업·합작 및 국내변호사 고용은 불허하고 있다.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법률서비스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여건 변화를 보아가며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⁴¹⁾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및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바, 동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내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경쟁력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법률시장 개방환경을 증진시킬 것으로 한국측은 평가한다.

나) 뉴스 공급업 개방

EU는 한국이 조속히 뉴스 공급업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뉴스 제공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주권 보호, 문화정책성 유지, 여론형성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한국내 통신사가 외국의 우수 통신사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므로, 한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앞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그동안 뉴스 제공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2000년부터 25%까지 허용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2001년 9월 로이터와 뉴스공급 계약을 맺은 뉴시스(Newsis)를 허용하는 등 경쟁적 조치를 취하였다.⁴²⁾

외국통신사 직배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⁴³⁾

41) 현재 법률서비스시장은 사실상 미개방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국내활동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현재 국내 로펌내 legal 컨설턴트로 근무 중이나, 공식적인 법적 자문은 금지되어 있다. 현재 국제한인변호사협회 등록 외국법자격취득 변호사는 1,181명이며, 2002년 기준 국내 로펌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는 2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6년 12월 OECD 가입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적 요건을 폐지했으나, 외국인의 국내변호사자격 취득 사례는 아직 없다.

42) 국내 통신사는 2001년 뉴시스의 통신사 등록 전까지 연합뉴스(1980년 창립)가 독점하였다. 연합뉴스는 2003년 4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6년간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었다.

43) 관련법규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규정)와 제8조(등록)로서,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

다) 금융서비스 개방

(1) 5%보고제도

5%보고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의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그 보유 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로서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라고 한다. 5%보고제도는 주식유통시장에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 작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며, M&A시장에서 기존 경영진에 방어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과 관련한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 1월 17일 한국 정부는 증권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5%보고제도를 개정하여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반복공개매수 허용 등 M&A 과정에서의 공격과 방어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보유목적은 추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자에 대하여는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추가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외신은 이 제도의 개정이 외국인투자자를 통제하고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하였는바, 한국 정부는 5%보고제도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5%보고제도 변경시 미국 제도 등

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와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 동 법의 규정에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 통신사의 국내 언론사에 대한 직배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뉴스통신사의 정의 및 등록 규정을 유추해석할 경우, 외국 통신사는 국내 통신사와 반드시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해야만 뉴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을 감안하여 제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외국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보유목적 기재사항 등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 금융기관 이사 수 제한

2005년 1월 한국 여·야 의원 21명은 외국인 임원의 거주지 제한 및 외국인 이사 수 제한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재경위에 제출하였다.⁴⁴⁾ 이에 대해 해외언론과 외국투자자들은 이를 개방정책의 후퇴 및 반(反)외국인투자 정서로 보았으며, EU는 같은 해 4월 20일 맨덜슨(Mandelson) 통상담당집행위원의 서한을 통해 외국인 이사의 제한은 한국의 WTO/GATS 양허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을 법제화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이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⁴⁵⁾

5) 지식재산권

EU는 한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명품 등 고가 사치재 위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입국자에 의한 위조물품 통관에 대해 효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과도한 소송비용과 높은 형량 등 지재권 보호규정이 지나치게

44) 현행 한국의 은행법령은 은행 이사의 국적을 제한하거나 외국인 이사 비중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이사의 자격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1998년 5월 은행법 제13차 개정시 유능한 외국인의 임원선임을 통한 전문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임원 국적제한 관련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은행 임원의 국적제한 및 거주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임원에 대한 적격성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와는 차별화되는 사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립은행의 이사는 미국시민권을 보유해야 하고, 다수의 이사가 선임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뉴욕주법은행 이사는 과반수가 이사선임 및 재임기간 중 미국시민권을 보유해야 한다.

45) 감독당국은 현행 은행법령에 근거하여 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합병인가 등 과정에서 임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경영계획(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엄격해 현실적으로 그 적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샴페인 등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의 보호가 미흡함을 언급하고 있다.⁴⁶⁾

이에 대해 우리측은 WTO/TRIPS 협정 등 지재권 보호가 국가 경제발전 및 국제적 협력강화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 위조상품 단속,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04년 5월 ‘지재권보호 정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밝혔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및 이행을 위해서 현재 특허청장회담 개최, 심사관 교류 및 특허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환경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신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승인(Authorisation) 시스템을 통해 제조자 및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여 등록·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한국 등 역외국은 이 제도가 역외국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을 우려해 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2003년 10월 최종안 발표 이후 일부 수정된 법안이 2005년 11월 17일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⁴⁷⁾

46) 2002년 6월 제15차 한·프 경제공동위시 프랑스측은 샴페인 명칭이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용기에 샴페인 명칭이 표기된 무알코올 발포성 음료를 생산·판매하는 한국스프레쉬(주)와 무학(주)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 바 있다. 2003년 2월 통상법률팀의 법률자문에 근거, 법무부·특허청은 단속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특허청은 한국 소비자가 샴페인을 발포성 음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속불가를 통보하였다. 2003년 7월 청주지검은 샴페인을 지리적 표시로 인정, 한국스프레쉬(주)를 기소하고 2003년 10월 벌금 100만원을 판결 확정하였다. 현재 특허청은 이 판결을 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47) 당초의 법안은 역외국의 우려와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부과되던 등록의무는 10톤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반면 잠재적 위험물질에 대한

REACH는 원래 화학물질로부터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EU내 화학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이용되어 EU에 대한 세계 각국의 화학제품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10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의 대EU 화학물질 수출은 REACH 시행으로 EU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및 독성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REACH가 WTO 규범에 합치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REACH가 WTO TBT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⁴⁸⁾ 왜냐하면 REACH가 화학물질의 실제 위험도와 상관없이 연간 10톤 이상의 모든 제조, 유통,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며, 제조사 및 수입자는 동일 물질의 사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의무를 지는 등 관련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REACH 외에 환경관련 통상현안은 납 성분이 포함된 수출품에 대한 규제다. 한국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PDP 패널의 경우 기술적 문제점으로 납 성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EU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대체가능성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외가 적용되어야 관련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피해와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

승인요건은 더욱 엄격해졌다.

- 48) REACH는 등록절차가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 물질까지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TBT 2.2조 위반)할 수 있다. 또한 일부규정은 수입품에 대해 차별대우를 부과하고 있어 TBT 2.1조 및 GATT III: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
- 49) 완제품내 위험물질이 사전에 등록된 경우 동 위험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은 등록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제3국의 제조자 및 EU내 수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심한 완제품관련 일부규정은 EU 역외생산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므로, PDP 제조 때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납이 포함된 물질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EU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⁵⁰⁾

나. 협력 분야

최근에 와서 한국과 EU는 산업,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산업 협력의 경우 양자는 2001년 5월 제1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시 산업·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 수요조사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측 조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정보통신, 자동차, 바이오, 조선, 환경, 방산·항공, 기계, 부품·소재, 대체에너지, 산업디자인,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 및 협의하고 있으며 상호인증협정 체결, 산업디자인 협력, 대체 에너지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한·EU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설치, EU 비즈니스 로드쇼 및 한·E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EU 중소기업 협력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한 EU 기업인 방한연수 프로그램인 ETP(Executive Training Program)의 확대·발전도 협의하고 있다. 수송안전 및 보안과 관련해서 EU는 보안 수준이 동등한 주요 교역국가와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통해 통관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원활화를 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 협력의 경우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과 한·EU 핵융합협력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EU가 환경, 생명공학, 에너지, 교통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5년 주기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2~06년)에

50)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에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예외 인정을 PDP 패널에서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공동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GPS에 대항하여 EU가 개발 중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2002년 시작되었다. EU는 막대한 비용조달 및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제 3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10월 EU와 협력협정을 체결, 2억 유로의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이스라엘은 2004년 3월 EU와 협력협정을 가서명, 1억 4천만 유로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EU는 현재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개최된 제4차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정책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많다. EU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EU 경쟁법을 집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EU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역외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양자협정 체결을 하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 기업의 행위에 대한 일방적 역외 적용을 피하고, 효과적인 법집행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체결된 ‘한·EU간 경쟁정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양자협력협정으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환경 분야의 협력은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EU와의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2004년 11월 한국의 환경연수단이 EU에 파견된 바 있으며, 2005년 3월에도 환경담당 공무원,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가 EU 집행위 및 영국을 방문하여 EU의 환경 정책 및 시설을 참관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제 시작단계다. 2005년 4월 20일 서울에서 주한 EU대표부 및 한국 정통부 후원으로 한·EU간 embedded SW분야의 협력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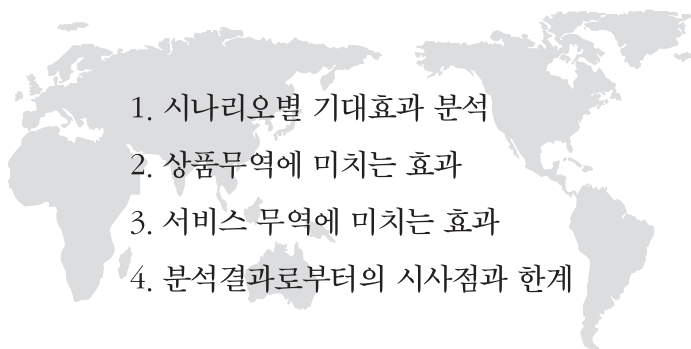
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EU는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학, 나노기술, 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도 IT산업 발전을 위해 WiBro, DMB 등 8대 서비스, BcN, U-센서 네트워크 등 3대 인프라, 그리고 텔레메틱스 등 9대 신성장동력을 내용으로 하는 ‘IT839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첨단 IT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 인정받고 있다.

교육·문화 협력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당초 유럽회원국 내에서의 교육 및 문화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유럽뿐만 아니라 비유럽국가간 문화적 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분야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EU 25개 회원국, EEA 3개국 및 EU 가입 협상대상국 2개국의 고등교육기관간 학생 및 교수진 교환 프로그램이었으나 제3국 대학졸업생 및 교수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었다.⁵¹⁾ 이외에도 양자간 에너지 협력, 자금세탁방지 협력 등의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51)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석사과정지원제도로써 학점 상호인정에 따른 복수학위 인정, 제3국 학생을 위한 입학할당제 도입 및 각종 편의 제공 등이 있으며, 둘째 학생장학제도로써 최대 2년간 재정이 지원된다. 5년간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2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교환 교수지원제도가 있는데 제3국 교수를 초빙, 강의·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004-08년간 2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2004-05년 프로그램에 한국학생 4명이 참여하였다.

제3장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GE 모형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으로 전통적 무역이론에 바탕을 두고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국내경제 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균형모형이며, FTA 및 DDA 협상 같은 국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해 최적해를 제공하도록 컴퓨터로 연산하는 모형이다.

즉 CGE 모형은 생산, 소비,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데이터와 각 방정식에 들어 있는 변수의 값을 서로 연결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여 하나의 변수 값이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의 값이 변하는데, 각 변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계산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화된 변수의 값을 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EU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장벽이 낮아져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한국제품의 대EU 수출도 증가, 국내 산업의 생산이 변화하게 된다. 국내 산업 생산의 증가 혹은 감소 여부는 해당산업의 경쟁력, FTA 체결 이전의 관세율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WTO DDA 등 다자간 협상과 FTA의 경제적 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한·EU FTA 체

결에 따른 정태적 효과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태적 효과로 인한 소득증가의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하였다는 데 있다.

1) 선행연구

EU의 1992년 단일시장 형성 및 동유럽으로의 확대가 해당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mith and Venables(1988)는 부분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하여 EU의 단일시장 형성으로 인한 생산요소 이동의 파급효과에 비해 회원국간 가격차별 제거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Baldwin *et al.*(1997)은 EU의 동유럽으로의 확대로 동유럽국가의 후생은 3.8~7.3% 증가하고 기존 EU 회원국의 후생은 약 0.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euss(2001)는 동유럽국가의 실질국내총생산은 4~9% 증가하는 반면, 기존 EU 회원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0.1%에 그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Lejour *et al.*(2001)은 관세 철폐 외에 무역원활화 및 위험감소로 동유럽국가의 GDP는 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종화·박순찬(2001)은 EU 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EU의 긴밀한 무역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까닭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EU 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박순찬(2004)과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에서 시작된다. 박순찬(2004)은 CGE 모형분석을 통하여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및 산업별 분석을 하였으나 GTAP 표준모형의 한계로 말미암아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이 반영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는 박순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회귀분석 방식을 이용한 탄력성 분석을 통해 산업별로 탄성치를 구

한 다음 그 탄성치를 이용하여 FTA 체결 효과를 도출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비스업 개방 효과를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분석결과가 1999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반면, 본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된 CGE 결과는 2001년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추세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연구는 기존 EU 회원국인 15개국만 고려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신규가입국 10개국을 포함한 EU 25개국을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 자본축적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이론으로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하는 전통적 무역이론, 불완전 경쟁과 규모의 경제를 가정하는 신무역이론,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자본축적과정으로 연결시킨 고전적 경제성장모형의 응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이론은 무역자유화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각기 중점을 두는 부분이 상이한데,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CGE 모형을 구성할 경우 각기 장단점이 있어 어떤 CGE 모형이 더 우월하다고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한다.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하는 전통적 무역이론은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파악하며, 그 효과는 한시적인 것에 그친다.⁵²⁾ 전통적 무역이론에 기반한 CGE 모형으로 FTA 또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

52) 이를 one-shot effect라고 한다.

석하면 그 효과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이라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이 일정 정도의 독점력을 지니고 있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실세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정태적 CGE 모형은 여태까지 수많은 실증분석에서 확인되고 확립된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Krueger(1978), World Bank(1987),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의 개방성과 경제성장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Lee(1995)는 국제무역을 통한 수입 자본재의 사용이 자본축적의 효율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Levine and Renelt(1992)는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50여개 변수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장과 투자 그리고 투자와 무역이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유인-투자주도 경제성장(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의 관계는 Baldwin and Seghezza (1996)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이들 실증분석이 함의하는 바는 무역자유화가 투자를 매개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대한 풍부한 실증분석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CGE 모형은 이러한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무역자유화의 관계를 CGE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은 Baldwin(1989, 1992)이다. 무역자유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은 다시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촉진되고,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정태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소득증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Baldwin(1989, 1992)은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라고 칭하고 있다.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단지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고 투자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의 연속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충격 발생 당시 모든 국가의 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에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 국제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태적 CGE 모형과 아울러 자본축적효과를 반영하는 동태적 CGE 모형 중 어떤 특정한 모형을 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형을 동시에 이용하여 한·EU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있다.

3) 서비스 자유화

최근 체결되는 FTA는 농산물 및 공산품의 관세철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자유화, 기술 상호인정,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서비스의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간적·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이 요구되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어렵다. 또한 서비스는 유형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할 때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Sauvant 1990; Sampson and Snape 1985). 즉, 서비스의 무역장벽은 관세가 아닌 각종 법적·제도적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CGE 모형을 비롯한 실증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업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장벽에 대한 자료가 필수불가결하다. 서비스의 교역을 직접 관찰할 수 없고 무역장벽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장벽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무역장벽을 지수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Hoekman(1995)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WTO 주요 회원국과 여러 서비스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Hoekman(1995)은 각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제출한 양허안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추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양허내용을 ‘완전 제한 없음(none)’의 경우 1, ‘개방 안함(unbound)’의 경우 0, 그리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개방한 경우 0.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양허표상의 공급형태(mode)별 양허 수의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비율(x)을 산출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믿음에 근거하여 서비스 업종별로 무역제한 정도에 따라 사전관세율을 부과하는데, 무역장벽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운송서비스는 200%, 나머지 업종은 20~50%의 사전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 업종별 무역장벽지수는 사전관세율에 $(1-x)$ 를 곱하여 구하고 있다. 즉, 어떤 국가가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많이 제출하면 개방대상이 되는 전체 양허수준에 대한 비율(x)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 국가의 무역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양허안을 상대적으로 적게 제출한 국가는 전체 양허수준에 대한 양허비율(x)이 작기 때문에 이 국가의 무역장벽은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Hoekman 지수를 사용하여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다.⁵³⁾ 주요 서비스 부문별 관세상당치는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53) Hoekman 접근방법의 문제점으로 운송서비스에 200%를 부과하는 식으로 각 서비스 부문에 대해 사전관세율을 연구자 임의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Hoekman의 지수는 흔히 *guesstimate*라 불린다. Hoekman 지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국의 실질적인 장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국이 제출한 긍정적인 양허안만 고려하기 때문에,

표 3-1. Hoekman의 서비스 무역장벽지수

	건설	유통	운송·통신	금융	기타
한국	16.0	21.4	184.9	36.3	40.7
EU	10.0	10.0	182.0	27.2	23.6

자료: Hoekman(1995).

기존의 CGE 모형은 제조업과 농업의 관세 철폐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 한·EU FTA로 양국간 서비스 무역장벽이 축소 또는 철폐될 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CGE 모형을 변형해야 한다.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일반상품 관세철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듯이, 서비스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수입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그 만큼 하락한다.

그러나 기존 CGE 모형에는 서비스 무역장벽을 나타내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Hertel et al.(2002)의 방법에 따라

어떤 국가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국가의 서비스 산업은 높은 무역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경우 복잡한 양허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Hoekman 지수에서 개발도상국의 무역장벽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각각의 양허안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문제점이 있다(Hardin and Holmes 1997). 즉 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실질적인 무역장벽의 제거에 대한 양허안과 그렇지 않은 양허안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무역장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Hoekman 지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Hoekman and Francois(1999)는 미국과 몇몇 국가간의 서비스 무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장벽을 추정하였으나,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간 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통해 서비스 장벽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Kalirajan et al.(2000)은 은행서비스, Trewin and Warren(2001)은 통신서비스의 장벽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서비스 또는 특정국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다부문 다국가의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효가격(effective price) 개념을 도입한다. s 국가가 r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i 서비스의 실효가격을 P_{irs}^* 로 표시하면,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관찰가격(P_{irs})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irs}^* = \frac{P_{irs}}{B_{irs}} \quad (3-1)$$

식 (3-1)에서 변수 B_{irs} 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 무역장벽이 수입된 서비스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B_{irs} 가 증가하면 r 국가에서 수입되는 i 서비스의 실효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는 공산품의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초기균형에서 B_{irs} 값은 1이며, 이 경우 실효가격과 명목가격은 일치한다.

CGE 모형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양을 분리하여 나타내는데, 모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양적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Q_{irs}^* = Q_{irs} \cdot B_{irs} \quad (3-2)$$

Q_{irs}^* 는 실효수입량(effective quantity of imports)을 나타낸다. 식 (3-1)과 식 (3-2)의 양변을 서로 곱하면 $P_{irs}^* Q_{irs}^* = P_{irs} Q_{irs}$ 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GE 모형은 비선형 등식을 선형화하여 변화율로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식 (3-1)과 식 (3-2)를 전미분하여 기존의 CGE 모형에서 가격과 수입량을 나타내는 모든 등식에 반영한다.

$$\frac{dQ_{irs}}{Q_{irs}} = -\frac{dB_{irs}}{B_{irs}} + \frac{dQ_{is}}{Q_{is}} + \sigma_{im} \left(\frac{dP_{irs}}{P_{irs}} - \frac{dB_{irs}}{B_{irs}} - \frac{dP_{is}}{P_{is}} \right) \quad (3-3)$$

$$\frac{dP_{is}}{P_{is}} = \sum_k \theta_{iks} \left(\frac{dP_{iks}}{P_{iks}} - \frac{dB_{irs}}{B_{irs}} \right) \quad (3-4)$$

여기서 P_{is} 및 Q_{is} 는 i 품목의 총수입가격 지수 및 총수입량을 가리키고, σ_{im} 과 θ_{iks} 는 수입품간의 대체탄력성과 k 국가의 수입비중을 나타낸다.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EU 전체의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EU 개별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EU는 25개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시장이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EU 회원국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EU FTA가 EU 전체와 더불어 개별 EU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다. CGE 모형에 포함된 국가와 산업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한·EU FTA는 최근 추세에 따라 포괄적 FTA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GATS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분야가 무역자유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국가의 신규가입으로 EU 회원국간 역내 서비스 자유화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EU FTA에서 아세안국가가 역외국인 한국에 대해 완전개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EU FTA에서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한·EU간 서비스 교역에 대해 부문별 서비스 관세 상당치가 50% 감소될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기타 서비스에는 행정 및 국방 서비스를 비롯한, 정

표 3-2. 국가 및 산업분류와 대체탄력성

국 가	산 업	대체탄력성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
1. 한국	농수산물	3.6	0.31
	가공식품	2.0	1.12
2. 독일	섬유·의류	3.8	1.26
3. 프랑스	석유화학	2.9	1.26
4. 영국	철강·금속	3.6	1.26
	자동차	2.8	1.26
5. 기타 기존 EU 회원국	기타 운송장비	4.3	1.26
6. 신규 EU 회원국	전자제품	4.4	1.26
7. 일본	기계	4.1	1.26
8. 중국	기타 제조업	3.3	1.26
	건설 서비스	1.9	1.40
9. 미국	유통·사업 서비스	1.9	1.68
10. 아세안	운송·보관 서비스	1.9	1.55
11. 기타	금융서비스	1.9	1.26
	기타 서비스	2.0	1.00

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GATS에서도 무역자유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기타 서비스 부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타 서비스 부문은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시나리오 III은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FTA와 가장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I: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시나리오 II: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시나리오 III: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본 연구는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 모형과 자본축적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으로 한·EU FTA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총 여섯 가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한·EU FTA 발효 후 일정한 이행기간 동안 국내총생산, 후생, 수출입, 교역조건, 산업별 생산 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한꺼번에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EU FTA를 이행하면서 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이하의 분석결과는 한·EU FTA에 따른 총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⁵⁴⁾

다. 거시경제적 효과

정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할 때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첫째, 무역장벽 제거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되어 무역창출(trade creation) 및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발생한다.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가격은 각국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반영하게 되어 각 국가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즉, 무역창출효과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FTA 체결국가간 무역증가로 제3국과의 무역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역전환효과라 한다.

54) 정태적 분석 결과는 FTA가 체결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한 일회적인 효과(one-shot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단기 효과로 해석된다. 자본축적 효과는 동태적 분석의 결과로서, 무역개방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가 투자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자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기간으로서 통상적으로 장기로 해석되고 있음.

둘째,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장벽 제거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변화될 수 있다. 교역조건은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으로 정의되는데, FTA 체결국가간 수입관세 철폐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교역조건 개선 및 악화 여부는 수입가격 하락에 비해 수출가격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높아져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소비 가능성이 확대되고, 투자 수익률을 높게 돼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여 생산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표 3-3]은 한·EU FTA가 농업 및 제조업의 무역장벽을 완전철폐하는 시나리오 I을 정태적 CGE 모형으로 평가하였을 때 국내총생산, 가계소득, 후생, 대세계 총수출 및 총수입, 교역조건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가계소득은 각각 0.64%와 0.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U는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이 0.05% 증가하는데, 회원국별로는 독일이 0.04%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신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국내총생산의 변화는 각국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추정치를 나타낸다. 또한 한·EU FTA로 한국의 총수출은 약 2.11% 증가하고 교역조건은 0.36%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과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II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EU의 국내총생산은 각각 1.97% 및 0.0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대 경제에서 서비스가 7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국제무역에서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EU는 서비스 부문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또한 유통, 물류, 회계 등 많은 서비스는 제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데 서비스 무역자유화로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면 곧 제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어 국내총생산이 더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EU FTA로 한국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와 서비스 무역장벽이 50% 감축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

만, 농업 관세가 50%만 감축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III의 결과는 시나리오 II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EU 간 농산물 교역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8]에 나타나 있듯이 EU 25개국의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대한민국 총수출은 약 2억 7천만 달러이고, 한국의 동 제품의 대EU25 수출은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시나리오 III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 2.02%, 소득은 2.16% 증가할 것으로

표 3-3.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정태모형)

(단위: %)

	국내 총생산	소 득	후 생	총수출	총수입	교역조건
시나리오 I						
한국	0.64	0.67	0.25	2.11	2.93	0.36
독일	0.04	0.04	0.01	0.08	0.11	0.03
프랑스	0.02	0.03	0.01	0.07	0.07	0.01
영국	0.04	0.04	0.01	0.10	0.12	0.02
기존회원국	0.03	0.04	0.01	0.07	0.10	0.02
신규회원국	0.00	0.00	-0.01	0.06	0.07	-0.01
시나리오 II						
한국	1.97	2.11	1.30	2.70	3.95	0.66
독일	0.07	0.08	0.05	0.11	0.18	0.04
프랑스	0.06	0.07	0.04	0.12	0.15	0.03
영국	0.07	0.07	0.05	0.19	0.23	0.05
기존회원국	0.10	0.11	0.06	0.10	0.16	0.03
신규회원국	0.04	0.04	0.03	0.11	0.13	0.00
시나리오 III						
한국	2.02	2.16	1.34	2.62	3.81	0.67
독일	0.07	0.08	0.05	0.11	0.18	0.04
프랑스	0.06	0.06	0.04	0.11	0.15	0.02
영국	0.07	0.07	0.05	0.19	0.23	0.05
기존회원국	0.09	0.10	0.06	0.09	0.15	0.03
신규회원국	0.01	0.02	0.02	0.08	0.11	-0.01

추정되었는데, 이는 시나리오 II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이다. 개방 폭이 클수록 경제 효과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인데, 한·EU FTA의 경우 비록 소폭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시나리오 II와 비교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생산은 거의 동일하게 변화하지만, 농업 및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덜 감소하고 교역조건이 조금 개선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농업을 완전개방하지 않고 50%로 부분개방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소득 및 후생은 완전개방의 경우보다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신규회원국과 기존회원국 중 프랑스 등의 국내총생산과 소득 증가분이 완전개방의 경우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표 3-4]는 한·EU FTA의 시나리오 I, II, III을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국내총생산, 후생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태모형은 FTA의 효과를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이에 따른 소득 증가로 파악하는데 반해, 자본축적모형은 정태적 효과로 인해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또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포착한다.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정태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득, 후생 등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시나리오 I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정태모형에서는 0.64% 증가하는 데 반해, 중·장기적 효과를 의미하는 자본축적 효과를 감안하면 1.08%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II에서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국내총생산은 1.97%에서 3.04%, 후생은 1.3%에서 2.42%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의 경우도 한국에 비해 그 크기는 작지만 한·EU FTA의 중·장기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에 비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경제규모가 큰 독일, 프랑스 및 영국에 비해 작게 증가

하는데, 이는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나리오 III을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한 경우를 정태분석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2%에서 3.08%, 후생은 1.34%에서 2.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의 50% 부분개방의 경우 완전개방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소득 및 후생 수준이 더 증가하는 반면, 신규회원국의 경우 그 증가폭이 둔화되는 특징은 여전히 유지된다.

표 3-4.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자본축적모형)

(단위: %)

	국내 총생산	소 득	후 생	총수출	총수입	교역조건
시나리오 I						
한국	1.08	1.01	0.72	2.90	3.4	0.21
독일	0.05	0.04	0.03	0.11	0.12	0.02
프랑스	0.03	0.03	0.02	0.08	0.08	0.01
영국	0.05	0.04	0.02	0.13	0.13	0.02
기존회원국	0.05	0.05	0.03	0.11	0.11	0.01
신규회원국	0.02	0.01	0.01	0.09	0.09	-0.02
시나리오 II						
한국	3.04	2.92	2.42	4.57	5.08	0.30
독일	0.10	0.09	0.09	0.18	0.20	0.03
프랑스	0.10	0.10	0.09	0.19	0.20	0.02
영국	0.10	0.09	0.09	0.26	0.26	0.04
기존회원국	0.16	0.15	0.12	0.20	0.22	0.02
신규회원국	0.09	0.09	0.09	0.19	0.19	-0.01
시나리오 III						
한국	3.08	2.96	2.45	2.62	3.81	0.32
독일	0.10	0.09	0.09	0.18	0.20	0.03
프랑스	0.10	0.10	0.09	0.18	0.20	0.02
영국	0.10	0.09	0.09	0.27	0.26	0.04
기존회원국	0.15	0.14	0.12	0.19	0.21	0.02
신규회원국	0.07	0.06	0.08	0.16	0.17	-0.02

현실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시나리오 III의 경우를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와 비교해 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분석은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와 비교하여 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25개국을 모두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연구에서 한·EU FTA 체결 결과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약 1.3%, 장기적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2004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단기적으로 9.8조원, 장기적으로 14.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⁵⁵⁾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이후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약 2.02%(약 15.7조 원), 장기적으로는 3.08%(약 24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경우보다 한국의 GDP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GDP 증가폭이 늘어난 것은 일단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개방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GDP 증가분도 늘어났으며, 과거 연구가 외환위기 시점인 1997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각 산업의 수출과 생산 관련 데이터가 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에서 1인당 소득은 단기에 1.33%, 장기에 1.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를 2004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단기에 22만원, 장기에 29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 1인당 소득은 단기에 2.16%, 장기에 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금액기준으로 하면 단기에 35만원, 장기에 48만원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역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조업에서의 무역 증가액만을 추정한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에서는 한-EU FTA 이후 수출 27억 달러(1.1%), 수입 13억 달러(0.8%) 각각 증가할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55) 김홍중·김균태·박순찬(2005), pp. 10~11.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교역까지 포함한 이번 연구에 의하면 수출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단기에 64.7억 달러(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 달러(4.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 달러(3.81%), 장기에는 81.9억 달러(4.92%)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단기에 1.3억 달러(0.16%), 장기에는 28.5억 달러(3.54%)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표 3-5]와 [표 3-6]은 정태모형으로 한·EU FTA의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

표 3-5. 시나리오 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모형)

(단위: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51	0.06	0.12	0.02	0.23	0.36
가공식품	-1.58	0.38	0.18	0.31	0.17	0.08
섬유·의류	3.19	-0.40	-0.10	-0.14	0.00	-0.44
석유화학	-0.05	0.10	0.12	0.06	0.05	0.00
철강·금속	-0.20	0.03	-0.03	0.12	-0.03	-0.05
자동차	6.06	-0.35	-0.42	-0.30	-0.38	-0.39
기타 운송장비	-0.20	-0.16	-0.01	-0.15	-0.09	-0.17
전기·전자	0.63	-0.25	-0.14	-0.30	-0.23	-0.06
기계	-0.96	0.34	0.14	0.12	0.12	0.07
기타 제조업	-0.57	0.01	0.05	0.01	0.02	0.00
건설	1.63	0.07	0.03	0.08	0.07	0.03
유통	0.83	0.03	0.02	0.04	0.04	0.00
운송·통신	0.22	0.03	0.02	0.03	0.02	0.02
금융·사업	0.72	0.04	0.02	0.03	0.02	0.01
기타 서비스	0.79	0.04	0.02	0.04	0.03	0.00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를 분석하였을 때 기대되는 산업별 생산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⁵⁶⁾

시나리오 I에서 한·EU FTA로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산업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 산업으로 6% 이상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생산이 약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2005년부터 쿼터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EU FTA로 인한 한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생산증가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높

표 3-6. 시나리오 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모형)

(단위: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47	0.03	0.05	-0.01	0.15	0.33
가공식품	-0.94	0.40	0.18	0.32	0.17	0.10
섬유·의류	0.19	-0.37	-0.10	-0.14	-0.03	-0.42
석유화학	-0.81	0.09	0.09	0.02	0.01	-0.02
철강·금속	-2.35	0.02	-0.04	0.07	-0.06	-0.05
자동차	4.98	-0.30	-0.37	-0.25	-0.32	-0.32
기타 운송장비	-3.85	-0.17	-0.01	-0.2	-0.09	0.00
전기·전자	-0.97	-0.24	-0.13	-0.33	-0.26	-0.02
기계	-2.77	0.30	0.11	0.05	0.05	0.06
기타 제조업	-1.42	0.02	0.05	0.00	-0.03	0.01
건설	3.84	0.13	0.08	0.14	0.17	0.08
유통	1.73	0.06	0.06	0.08	0.10	0.05
운송·통신	4.23	-0.21	-0.10	-0.06	-0.04	-0.12
금융·사업	1.40	0.08	0.06	0.09	0.08	0.05
기타 서비스	2.12	0.07	0.07	0.08	0.10	0.03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56) 시나리오 I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변화는 서비스 무역자유화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농업 및 제조업의 생산변화로 인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생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파생수요로 인한 생산의 변화를 나타낸다.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쿼터제 폐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EU FTA가 서비스 자유화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II에 따를 경우 산업별 생산변화는 시나리오 I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시나리오 II에서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5% 증가하는 데 그쳐, 시나리오 I에 비해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또한 시나리오 II의 경우, 시나리오 I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제조업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GE 모형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시나리오 I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이동했던 생산요소 중 일부가 서비스 부문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표 3-7. 시나리오 I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정태모형)

(단위: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35	-0.01	-0.03	-0.03	-0.03	0.06
가공식품	-0.90	0.40	0.18	0.32	0.16	0.08
섬유·의류	0.10	-0.36	-0.09	-0.14	-0.01	-0.38
석유화학	-0.90	0.09	0.10	0.02	0.02	0.00
철강·금속	-2.38	0.02	-0.03	0.07	-0.05	-0.01
자동차	4.97	-0.3	-0.36	-0.25	-0.31	-0.3
기타 운송장비	-3.84	-0.16	0.01	-0.19	-0.05	0.04
전기·전자	-0.96	-0.24	-0.12	-0.33	-0.23	0.01
기계	-2.77	0.30	0.12	0.05	0.07	0.10
기타 제조업	-1.43	0.02	0.06	0.00	-0.01	0.04
건설	3.81	0.13	0.09	0.14	0.16	0.07
유통	1.76	0.06	0.06	0.08	0.09	0.04
운송·통신	4.23	-0.21	-0.11	-0.06	-0.04	-0.12
금융·사업	1.40	0.08	0.06	0.09	0.07	0.05
기타 서비스	2.15	0.07	0.07	0.08	0.09	0.02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표 3-7]은 농업 관세를 50% 감축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는 시나리오 II와 동일하게 무역자유화를 단행하는 시나리오 III에 따라 한·EU FTA가 진행될 때 국가별 산업생산의 변화를 정태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다. 시나리오 II와의 차이점은 농업의 관세감축 정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 농업의 생산 감소는 -0.47%에서 -0.35%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외의 산업 생산은 시나리오 II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경우 시나리오 II와는 달리 농산물의 생산증가 효과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8]과 [표 3-9]는 자본축적모형으로 한·EU FTA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표 3-8. 시나리오 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모형)

(단위: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26	0.09	0.14	0.04	0.26	0.39
가공식품	-1.33	0.39	0.19	0.31	0.19	0.1
섬유·의류	3.90	-0.37	-0.1	-0.13	0.03	-0.43
석유화학	0.55	0.11	0.12	0.08	0.07	0.02
철강·금속	0.66	0.05	-0.02	0.14	0.01	-0.01
자동차	6.55	-0.35	-0.43	-0.30	-0.37	-0.38
기타 운송장비	0.70	-0.15	-0.01	-0.14	-0.07	-0.17
전기·전자	1.59	-0.27	-0.16	-0.29	-0.22	-0.04
기계	0.01	0.36	0.14	0.14	0.15	0.1
기타 제조업	0.02	0.03	0.07	0.03	0.05	0.03
건설	1.85	0.06	0.04	0.07	0.08	0.04
유통	1.25	0.04	0.04	0.05	0.05	0.02
운송·통신	0.54	0.04	0.04	0.04	0.05	0.04
금융·사업	1.16	0.04	0.03	0.04	0.04	0.02
기타 서비스	1.22	0.04	0.04	0.04	0.05	0.02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정태모형의 결과에 비해 생산의 변화가 더 크다는 점이 차이점이며,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의 차이는 정태모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시나리오 I의 경우, 한국 농수산물의 생산은 소폭 감소하는 데 반해, EU 회원국의 경우 약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데 반해, EU 회원국의 경우 약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상된 경쟁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EU 회원국의 경우

표 3-9. 시나리오 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모형)

(단위: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12	0.1	0.14	0.06	0.25	0.41
가공식품	-0.34	0.43	0.22	0.35	0.22	0.14
섬유·의류	1.78	-0.32	-0.07	-0.1	0.06	-0.37
석유화학	0.59	0.14	0.15	0.09	0.09	0.06
철강·금속	-0.41	0.08	0.01	0.13	0.03	0.02
자동차	6.12	-0.26	-0.34	-0.23	-0.28	-0.27
기타 운송장비	-1.81	-0.14	0.07	-0.17	-0.02	-0.02
전기·전자	1.26	-0.28	-0.12	-0.32	-0.23	0.03
기계	-0.56	0.35	0.17	0.11	0.15	0.15
기타 제조업	-0.06	0.07	0.1	0.04	0.06	0.08
건설	4.38	0.13	0.13	0.16	0.21	0.13
유통	2.74	0.09	0.11	0.1	0.15	0.09
운송·통신	5.09	-0.18	-0.06	-0.03	0.02	-0.06
금융·사업	2.45	0.1	0.1	0.12	0.15	0.1
기타 서비스	3.13	0.09	0.1	0.11	0.15	0.09

주: 시장가격으로 평가.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기계 산업으로, 시나리오 I의 경우 독일은 0.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은 시나리오 III을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산업별 생산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시나리오 I 및 시나리오 II와 유사하게 한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기타 운송장비의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산업생산의 변화는 시나리오 II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정태모형과 비교할 때 농산물과 가공식품에서 EU 회원국의 생산증가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표 3-10. 시나리오 III에 따른 산업생산의 변화(자본축적모형)

(단위: %)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농수산물	0.24	0.07	0.05	0.04	0.08	0.14
가공식품	-0.30	0.42	0.21	0.35	0.21	0.12
섬유·의류	1.67	-0.31	-0.05	-0.10	0.09	-0.33
석유화학	0.48	0.15	0.16	0.09	0.10	0.08
철강·금속	-0.47	0.07	0.02	0.13	0.05	0.07
자동차	6.09	-0.26	-0.34	-0.23	-0.27	-0.24
기타 운송장비	-1.83	-0.13	0.10	-0.16	0.01	0.02
전기·전자	1.26	-0.27	-0.11	-0.31	-0.19	0.08
기계	-0.59	0.34	0.18	0.11	0.17	0.19
기타 제조업	-0.09	0.07	0.11	0.04	0.08	0.12
건설	4.36	0.14	0.14	0.15	0.21	0.13
유통	2.76	0.09	0.10	0.11	0.15	0.08
운송·통신	5.09	-0.17	-0.05	-0.04	0.02	-0.05
금융·사업	2.43	0.11	0.10	0.12	0.14	0.10
기타 서비스	3.15	0.09	0.11	0.11	0.15	0.07

주: 시장가적으로 평가.

이번엔 상기의 산업생산에 관한 CGE 분석결과에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생산 및 고용 효과를 따로 도출한다. 2000년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이용하여 한·EU FTA가 1차산업 및 제조업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적용,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를 추계하였다.

한·EU FTA에 따른 1차산업과 제조업의 생산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3-11] 및 [표 3-12]와 같다. 정태모형에서 1차산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시나리오 I의 경우에만 생산이 증가하였다. 즉 시나리오 I에서 1차산업은 1조 1천억여 원 감소하며, 시나리오 II와 III에서는 각각 약 7,400억 원, 6,7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시나리오 I에서는 생산이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하지만, 시나리오 II와 III에서는 각각 약 4조 4천억 원, 4조 6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으로 EU와의 FTA 체결시 서비

표 3-11. 한·EU FTA에 따른 생산효과(정태모형)

(단위: 조 원,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1차산업	97.4	96.2	-1.13(-1.2)	96.6	-0.74(-0.8)	96.7	-0.67(-0.7)
농수산물	38.3	38.1	-0.20(-0.5)	38.1	-0.18(-0.5)	38.2	-0.13(-0.3)
가공식품	59.1	58.2	-0.93(-1.6)	58.5	-0.56(-0.9)	58.6	-0.53(-0.9)
제조업	588.3	592.9	4.66(0.8)	583.8	-4.41(-0.8)	583.7	-4.56(-0.8)
섬유·의류	46.9	48.4	1.50(3.2)	47.0	0.09(0.2)	46.9	0.05(0.1)
석유화학	88.6	88.6	-0.04(-0.1)	87.9	-0.72(-0.8)	87.8	-0.80(-0.9)
철강·금속	78.7	78.5	-0.16(-0.2)	76.8	-1.85(-2.3)	76.8	-1.87(-2.4)
자동차	59.2	62.8	3.59(6.1)	62.1	2.95(4.9)	62.1	2.94(4.9)
기타 운송장비	15.4	15.4	-0.03(-0.2)	14.8	-0.59(-3.8)	14.8	-0.59(-3.8)
전기·전자	142.4	143.3	0.90(0.6)	141.0	-1.38(-1.0)	141.1	-1.37(-1.0)
기계	49.9	49.5	-0.48(-1.0)	48.6	-1.38(-2.8)	48.6	-1.38(-2.8)
기타 제조업	107.1	106.5	-0.61(-0.6)	105.6	-1.52(-1.4)	105.6	-1.53(-1.4)

스 무역장벽을 제거할 경우 제조업 부문 생산요소 중 일부가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여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조업 중 섬유·의류와 자동차의 경우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생산이 증가하였다.

자본축적모형을 고려한 효과를 살펴보면, 1차산업의 경우는 역시 모든 시나리오에서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모든 경우 생산이 증가하였다. 즉 시나리오 I에서 제조업은 생산이 약 9조 1천억 원 증가하며, 시나리오 II와 III에서는 각각 약 5조 8천억 원, 5조 6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표 3-12. 한·EU FTA에 따른 생산효과(자본축적모형)

(단위: 조 원,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1차산업	97.4	96.5	-0.89(-0.9)	97.2	-0.15(-0.2)	97.3	-0.09(-0.1)
농수산물	38.3	38.2	-0.10(-0.3)	38.3	0.05(0.1)	38.4	0.09(0.2)
가공식품	59.1	58.3	-0.79(-1.3)	58.9	-0.20(-0.3)	58.9	-0.18(-0.3)
제조업	588.3	597.4	9.11(1.6)	594.1	5.83(1.0)	593.8	5.56(1.0)
섬유·의류	46.9	48.7	1.83(3.9)	47.7	0.83(1.8)	47.7	0.78(1.7)
석유화학	88.6	89.1	0.49(0.6)	89.1	0.52(0.6)	89.1	0.43(0.5)
철강·금속	78.7	79.2	0.52(0.7)	78.4	-0.32(-0.4)	78.3	-0.37(-0.5)
일반차량 및 부품	59.2	63.1	3.88(6.6)	62.8	3.62(6.1)	62.8	3.61(6.1)
기타 운송장비	15.4	15.5	0.11(0.7)	15.1	-0.28(-1.8)	15.1	-0.28(-1.8)
전기·전자	142.4	144.7	2.26(1.6)	144.2	1.79(1.3)	144.2	1.79(1.3)
기계	49.9	49.9	0.005(0.01)	49.7	-0.28(-0.6)	49.6	-0.29(-0.6)
기타 제조업	107.1	107.1	0.02(0.02)	107.0	-0.06(-0.1)	107.0	-0.10(-0.1)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제조업의 생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산업별로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부문의 생산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EU FTA에 따른 1차산업 및 제조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는 [표 3-13] 및 [표 3-14]와 같다. 정태모형에서 1차산업은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제조업은 시나리오 I의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즉 시나리오 I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약 7만 7천 명 증가하지만, 시나리오 II와 III의 경우 각각 약 4만 3천 명과 4만 6천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축적모형의 경우, 서비스 산업 개방시에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서비스 산업 개방을 고려

표 3-13.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정태모형)

(단위: 천 명,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1차산업	2,512	2,465	-46.7(-1.9)	2,479	-32.1(-1.3)	2,483	-28.1(-1.1)
농수산물	2,229	2,216	-13.2(-0.6)	2,216	-12.1(-0.5)	2,219	-9.1(-0.4)
가공식품	283	250	-33.5(-11.8)	263	-19.9(-7.0)	264	-19.1(-6.7)
제조업	2,912	2,989	76.9(2.6)	2,868	-43.4(-1.5)	2,866	-45.5(-1.6)
섬유·의류	511	543	32.0(6.3)	512	1.9(0.4)	511	1.0(0.2)
석유화학	324	323	-0.5(-0.2)	315	-8.1(-2.5)	314	-9.1(-2.8)
철강·금속	337	335	-1.7(-0.5)	317	-19.7(-5.9)	317	-19.9(-5.9)
자동차	212	265	52.3(24.7)	255	43.0(20.3)	255	42.9(20.2)
기타 운송장비	98	98	-0.5(-0.5)	89	-8.8(-9.0)	89	-8.8(-9.0)
전기·전자	559	569	9.0(1.6)	545	-13.9(-2.5)	545	-13.8(-2.5)
기계	373	365	-7.9(-2.1)	349	-22.8(-6.1)	349	-22.8(-6.1)
기타 제조업	497	491	-6.0(-1.2)	482	-14.9(-3.0)	482	-14.9(-3.0)

한 시나리오 II와 III의 경우에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각각 약 8만 2천 명과 7만 8천 명 증가하였다.

표 3-14.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자본축적모형)

(단위: 천 명,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1차산업	2,512	2,477	-34.9(-1.4)	2,507	-4.1(-0.2)	2,511	-0.14(0.0)
농수산물	2,229	2,222	-6.7(-0.3)	2,231	3.1(0.1)	2,235	6.2(0.3)
가공식품	283	255	-28.2(-9.9)	275	-7.2(-2.5)	276	-6.3(-2.2)
제조업	2,912	3,043	131.6(4.5)	2,993	81.9(2.8)	2,990	78.4(2.7)
섬유·의류	511	549	39.2(7.6)	528	17.8(3.5)	527	16.7(3.3)
석유화학	324	329	5.5(1.7)	329	5.9(1.8)	328	4.8(1.5)
철강·금속	337	342	5.5(1.6)	333	-3.4(-1.0)	333	-3.9(-1.2)
자동차	212	269	56.6(26.6)	265	52.9(24.9)	265	52.6(24.8)
기타 운송장비	98	99	1.6(1.6)	94	-4.1(-4.2)	94	-4.2(-4.3)
전기·전자	559	582	22.8(4.0)	577	18.1(3.2)	577	18.1(3.2)
기계	373	372	0.08(0.02)	368	-4.6(-1.2)	367	-4.8(-1.3)
기타 제조업	497	497	0.2(0.04)	496	-0.6(-0.1)	496	-0.9(-0.2)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FTA는 양자간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때문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양자간 수출입과 타국과의 수출입 변화다. Viner(1954)가 지적하였듯이, FTA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갖는다. 즉,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을 FTA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

게 된다. 여기서 제3국이 효율적인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FTA 파트너 국가로 수입이 전환될 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FTA 체결 이전에 높은 관세로 인해 효율적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국내생산자에 의해 공급되었으나, FTA 체결로 FTA 파트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무역창출효과라 정의한다. 또한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무역확대효과(trade expansion effect)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확대효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FTA 체결 이전에 어떤 국가가 효율적인 생산자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역창출효과에 의해서든, 무역전환효과에 의해서든 FTA로 인해 당사국 양자간 무역이 증진되는 것은 명확하다.

[표 3-15]는 한·EU FTA의 시나리오를 정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할 때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⁵⁷⁾ 시나리오 I에 따라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수출은 영국,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약 32.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대한국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U 회원국간 무역은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한·EU FTA 체결로 양자간 교역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회원국간 무역이 한국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이 50% 추가로 감축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약 36.6억 달러 증가한다. 전체 수출액은 시나리오 I의 경우보다 약 4.2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국가별 수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I에서 한국의 독일, 영국으로의 수출증가액은 약 9억 및 10억 달러였으나 서비스가 개방

57) CGE 모형의 데이터가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별 수출입 변화액도 2001년을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앞서의 수출입액 예상 효과치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되는 시나리오 II에서 대독일 및 대영국 수출증가액은 약 19억 달러 및 21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존회원국으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TA로 인해 한·EU간 무역이 증가함과 동시에 서비스 개방으로 특히 운송부문의 서비스 교역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농업 관세율이 50% 감축되는 시나리오 III에서 한국의 총수출은 약 35억 달러 증

표 3-15. 국가별 수출 변화(정태모형)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 I								
수출국 \ 수입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	931.1	549.5	1,045.1	2,952.1	698.2	-2937.6	3,238.4
독일	2,497.2	0	-176.8	-221.2	-892.8	-260.3	-622.1	324.0
프랑스	1,022.6	-88.5	0	-100.7	-376.8	-54.6	-232.3	169.7
영국	1,119.7	-93.4	-64.7	0	-342.5	-37.8	-356.5	224.9
기존회원국	3,715.7	-428.2	-278.3	-360.2	-871.3	-204.4	-979.7	593.5
신규회원국	364.0	-56.4	-7.3	-16.1	-89.1	-52.8	-36.4	106.0
시나리오 II								
수출국 \ 수입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	1,937.3	1,157.8	2,116.9	5,252.2	826.6	-7,631.0	3,659.9
독일	3,081.0	0	-204.2	-281.8	-981.8	-248.3	-871.1	493.9
프랑스	1,636.9	-150.2	0	-168.6	-510.3	-60.9	-409.9	337.0
영국	2,032.1	-179.3	-116.3	0	-558.4	-51.4	-601.2	525.6
기존회원국	6,493.9	-831.6	-485.4	-692.7	-1,573.0	-256.0	-1,765.7	889.5
신규회원국	593.96	-76.2	-18.5	-41.8	-133.3	-50.3	-93.6	180.2
시나리오 III								
수출국 \ 수입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0	1,928.6	1,149.1	2,109.3	5,214.5	825.3	-7,737.6	3,489.2
독일	3,057.9	0.0	-206.2	-281.5	-987.9	-252.8	-835.3	494.3
프랑스	1,569.6	-146.3	0.0	-164.2	-498.0	-60.8	-371.3	329.2
영국	2,020.6	-181.3	-117.4	0.0	-563.8	-52.4	-581.6	524.0
기존회원국	5,893.7	-748.6	-434.5	-641.1	-1,442.1	-246.0	-1,524.8	856.5
신규회원국	422.4	-41.5	-12.7	-35.5	-96.4	-35.1	-47.4	153.7

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시나리오 II에 비해 약 1억 6천 달러 적게 증가하는 것이다.

표 3-16. 국가별 수출 변화(자본축적모형)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 I								
수출국 \ 수입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	1,005.2	577.8	1,107.5	3,102.4	724.4	-1,499.4	5,017.9
독일	2,533.0	0	-163.1	-211.2	-831.9	-251.2	-553.2	522.4
프랑스	1,042.4	-87.2	0	-98.4	-359.7	-53.9	-216.2	226.9
영국	1,144.5	-83.1	-54.8	0	-300.7	-35.0	-299.4	371.5
기존회원국	3,786.5	-367.9	-236.2	-321.0	-738.7	-186.8	-782.5	1,153.3
신규회원국	370.2	-42.9	-4.5	-13.1	-74.4	-47.1	-20.9	167.1
시나리오 II								
수출국 \ 수입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	2,125.8	1,233.6	2,279.0	5,641.3	890.0	-4,333.7	7,836.0
독일	3,169.8	0	-162.9	-257.9	-820.1	-223.6	-701.3	1,003.9
프랑스	1,689.9	-131.6	0	-152.8	-424.7	-55.2	-316.7	608.9
영국	2,096.4	-164.8	-96.3	0	-479.1	-46.4	-499.8	810.0
기존회원국	6,685.6	-674.1	-363.0	-592.0	-1217	-206.9	-1,242.8	2,390.3
신규회원국	610.4	-41.5	-10.8	-34.5	-94.6	-34.9	-53.8	340.2
시나리오 III								
수출국 \ 수입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존 회원국	신규 회원국	기타 3국	총계
한국	0.0	2,114.9	1,224.3	2,269.6	5,599.7	887.9	-4,480.0	7,616.4
독일	3,145.5	0.0	-163.3	-256.4	-822.1	-226.8	-658.2	1,018.7
프랑스	1,620.9	-126.8	0.0	-147.7	-410.4	-54.8	-273.9	607.2
영국	2,084.2	-166.0	-96.5	0.0	-482.3	-47.1	-475.8	816.4
기존회원국	6,072.5	-591.5	-311.6	-540.3	-1,086.7	-196.4	-1,000.0	2,345.9
신규회원국	435.8	-4.5	-4.5	-27.7	-55.5	-18.7	-4.8	320.1

[표 3-16]은 한·EU FTA로 인한 각국간 수출 변화를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본축적모형으로 평가할 때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수출증가액

은 50억~78억 달러에 달해 정태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보다 18억~42억 달러 많다. 정태모형에 비해 한국의 대EU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에는 생산설비가 확장되면서 제3국으로의 수출 여력이 확충된 결과로 해석된다.

시나리오 III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76억 달러의 수출증가효과가 나타나는데 주요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신규회원국으로의 수출 증가도 8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 EU회원국의 경우도 독일의 대한 수출이 31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프랑스와 영국의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타 회원국의 대한 수출도 6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1절에서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소득, 후생, 총수출입, 산업별 생산효과 등 종합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한·EU FTA 체결이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품목별로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량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의 품목별 대EU 수출입 함수식 추정을 통해 도출한 수출입 가격탄력성과 한국과 EU의 관세장벽 자료를 이용하여 한·EU FTA 체결 시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제조업 부문의 관세장벽 완전철폐시의 한국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비관세장

벽 제거 문제나 투자 및 기술교류 등 양국간 산업협력요인을 제거한 순수한 관세 효과만 고려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Senhadji and Montenegro(1998) 및 Senhadji(1998)의 수출입함 수식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EU 수출입 모형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대EU 수입함수식은 식 (3-5)와 같은바, 실질수입은 상대수입가격과 실질국민소득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동 함수식의 독립변수에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도 포함되었는바, 이러한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RDL) 변수를 포함한 함수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추정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⁸⁾ 동 함수식은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과 닮았으나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이 차분(difference) 변수가 아니라 수준(level) 변수라는 점에서 오차수정모형과 다르다. Pesaran and Shin(1997)은 이러한 ARDL 변수가 함수식에 적절하게 포함된다면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이 1차적분된 시계열[즉 I(1)]일지라도 안정성(stationarity)하에서의 통상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식 (3-5)에서 경제이론상 수입품의 가격하락은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γ 는 음(-)의 부호를, 소득증가는 수입수요를 증대시키므로 δ 는 양(+)의 부호를 갖게 된다. 이때 γ 는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δ 는 수입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각각 나타내며, ϵ_t 는 잔차항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탄력성은 단기탄력성을 의미한다.

$$\ln(M_{i,t}) = \alpha + \beta \ln(M_{i,t-1}) + \gamma \ln\left(\frac{P_{i,t}^m}{PK_t}\right) + \delta \ln(YK_t) + \epsilon_{i,t} \quad (3-5)$$

58) Senhadji and Montenegro(1998), p. 9.

단, M_i 는 i 재화에 대한 대EU 실질수입, PK 는 한국의 물가수준, P_i^m 은 i 재화의 수입가격, YK 는 한국의 실질소득을 나타낸다.

한국의 대EU 수출함수식도 식 (3-6)과 같이 수입함수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⁵⁹⁾ 역시 경제이론상 수출가격탄력성(γ)은 음(-)의 부호를, 소득탄력성(δ)은 양(+)의 부호를 갖게 된다.

$$\ln(X_{i,t}) = \alpha' + \beta' \ln(X_{i,t-1}) + \gamma' \ln\left(\frac{P_{i,t}^x}{PEU_t}\right) + \delta' \ln(YEU_t) + \epsilon_t \quad (3-6)$$

단, X_i 는 i 재화에 대한 대EU 실질수출액, PEU 는 EU의 물가수준, P_i^x 은 EU에 수출되는 i 재화의 수출가격, YEU 는 EU의 실질소득수준을 나타낸다.

양국이 관세를 철폐하면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이러한 가격변화는 각 품목별 가격탄력성에 의해 품목별 수출입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품목별 가격탄력성 크기를 수출입 변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는 함수식 (3-5) 및 (3-6)의 설정을 통해 동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1998년 1/4분기부터 2004년 4/4분기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EU의 경제통합동맹(EMU)이 1999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따라서 EMU의 공통된 물가자료가 1998년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 분석에서는 한국과 기존 EU 15개국과의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신규회원국과의 관계는 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⁶⁰⁾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품목별 무역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품목 분류는 CGE 분석결과 및 산업연관분석의 부문분류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표 3-17]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59) 한국의 대EU 수출은 EU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입이므로, 한국의 대EU 수출함수식은 수입함수식과 동일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60) 추가적 분석은 라절 EU 신규회원국의 경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한국의 품목별 대EU 실질수출과 실질수입은 KOTIS의 품목별 무역통계액 자료에 한국은행의 품목별 수출입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무역액으로 변환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의 품목별 적용은 역시 [표 3-17]과 같은 기준에 따랐다. 단, 기타 수송기기(철도차량, 선박, 항공기)의 경우, 수출입물가지수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적용한 수출입물가지수와 동일한 자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과 EU의 무역액은 기존 EU 15개국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17. 품목 분류

	HS 코드	수출입물가지수
1차산업		
농수산물	1~14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15~24	음식료품
제조업		
석유화학	27~40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섬유·의류·가죽	41~43, 50~67	섬유의복가죽제품
철강·금속	71~83	금속1차제품
전기·전자	-	-
반도체	8541, 8542	반도체소자
통신기기	8525~8526, 8529, 8517	통신장비
가전기기	반도체, 통신기기를 제외한 85	영상 및 음향기기
컴퓨터	8471, 8473	사무회계용기계
기계	8471과 8473을 제외한 84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
정밀기기	90~92	정밀기기제품
일반차량 및 부품	87	운송장비제품
기타 수송기기	86, 88, 89	운송장비제품
기타 제조업	44~49, 68~70, 93~97	기타 공산품

- 한국과 EU의 실질소득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를 사용하였다. EU의 경우, 명목 GDP를 GDP deflator로 나누어 실질치로 변환시켰으며, 한국은 분석기간의 GDP와 GDP deflator 자료가 모두 가능하지 않아 GN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하였다. 단, EU의 물가지수로 사용한 GDP deflator는 EMU의 자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 품목별 상대수출가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품목별 수출물가지수에 EU의 물가수준(GDP deflator)과 환율을 적용하여 변환시켰으며, 상대수입가격도 한국은행의 품목별 수입물가지수에 한국의 물가수준(CPI)과 환율을 적용하여 변환시킨 자료를 사용하였다.
- 한편 동 분석에 사용한 통계 데이터는 분기별 자료이므로 수출입액 및 GDP(GNI)의 경우, 계절조정을 한 후 사용하였다.

나. 추정결과

식 (3-5)와 (3-6)에 사용한 세 변수들이 모두 시계열 자료이므로 추세안정적(Trend-Stationary; TS) 변수이거나 차분안정적(Difference-Stationary; DS) 변수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사례 1) 세 변수 모두 DS일 경우: 세 변수간 공적분 관계가 없을 경우 허구적 회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 변수간 공적분 검정을 수행함.

(사례 2) 세 변수 중 1개가 TS일 경우: 이 경우 DS인 두 변수간 공적분 관계가 없다면 허구적 회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공적분 검정을 수행함.

(사례 3) 세 변수 중 2개가 TS일 경우: 세 변수간 안정적 추세를 나타내는 선형

결합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형 추정이 불가능함.

(사례 4) 세 변수 모두 TS일 경우: 고전적 회귀분석 방법이 가능함.

각각의 경우에 따라 모형 추정의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형 추정 전에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함수식에 사용된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 (3-5)와 식 (3-6)에 포함된 변수들이 안정적인 시계열 인지 먼저 검정하기로 한다. 수출함수에서 사용된 변수들, 즉 실질수출(x), 상대수출가격(px), EU의 실질소득($eugdp$), 그리고 수입함수에서 사용된 변수들, 즉 실질수입(m)과 상대수입가격(pm), 한국의 실질소득($kgdp$)에 대하여 ADF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을 활용하여 단위근(unit root)이 있는지 검정하였다.

표 3-18. 수출함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x	k	px	k	$eugdp$	k	$nobs$
농수산물		-2.01	0	-1.37	0	-1.01	0	28
가공식품		-2.24	0	-0.47	0	-1.01	0	28
석유화학		-1.65	8	1.34	0	-1.01	0	28
섬유·의류·가죽		-2.75*	2	-0.68	3	-1.01	0	28
철강·금속		-2.34	0	-3.27**	2	-1.01	0	28
전기·전자	반도체	-2.20	0	-0.22	4	-1.01	0	28
	통신기기	1.20	4	1.66	0	-1.01	0	28
	가전기기	-0.52	1	1.88	0	-1.01	0	28
	컴퓨터	-1.46	0	0.03	0	-1.01	0	28
기계		-1.36	0	0.79	0	-1.01	0	28
정밀기기		-0.34	0	0.60	0	-1.01	0	28
일반차량 및 부품		-1.13	0	-1.74	3	-1.01	0	28
기타 수송기기		-2.59	0	0.71	0	-1.01	0	28
기타 제조업		-2.78*	0	0.65	0	-1.01	0	28

주: x 는 실질수출, px 는 수출상대가격, $eugdp$ 는 EU의 실질소득, $nobs$ 는 관측치수, k 는 Schwarz Criterion에 따른 적정 시차변수의 개수임. *, **는 각각 10%, 5%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단위근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표 3-18]과 [표 3-19]에서와 같이 사례 1 및 사례 2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수출함수의 경우, 모두 14개 품목 중 11개가 사례 1이었으며, 나머지 3개 품목이 사례 2에 해당되었다. 어떤 품목도 사례 3과 사례 4에 해당되지 않았다. 한편 수입함수의 경우 14개 품목 중 사례 1이 7개, 사례 2가 7개였으며, 역시 사례 3과 사례 4는 없었다.

대부분이 사례 1과 사례 2에 해당되었으므로 다시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통해 변수들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변수들간 공적분 관계가 있을 때 동 방정식의 회귀분석 결과, 즉 품목별 수출입 가격탄력성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⁶¹⁾

표 3-19. 수입함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i>m</i>	<i>k</i>	<i>pm</i>	<i>k</i>	<i>kgdp</i>	<i>k</i>	<i>nobs</i>
농수산물		-2.22	2	-4.52***	0	-0.65	0	28
가공식품		-2.62	4	-5.75***	0	-0.65	0	28
석유화학		-2.11	0	-2.10	1	-0.65	0	28
섬유·의류·가죽		-1.20	0	-2.17	0	-0.65	0	28
철강·금속		-3.58**	1	-1.85	0	-0.65	0	28
전기·전자	반도체	0.66	0	-0.88	1	-0.65	0	28
	통신기기	-1.37	0	-1.13	0	-0.65	0	28
	가전기기	-0.38	1	-1.26	0	-0.65	0	28
	컴퓨터	-4.47***	6	-1.99	0	-0.65	0	28
기계		0.74	0	-2.23	0	-0.65	0	28
정밀기기		-2.18	4	-2.36	0	-0.65	0	28
일반차량 및 부품		-0.23	0	-4.67***	0	-0.65	0	28
기타 수송기기		-2.74*	0	1.23	0	-0.65	0	28
기타 제조업		-2.12	0	2.81*	0	-0.65	0	28

주: *m*은 실질수입, *pm*은 수입상대가격, *kgdp*는 한국의 실질소득, *nobs*는 관측치수, *k*는 Schwarz Criterion에 따른 적정 시차변수의 개수임.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 61) 불안정한 시계열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비롯한 전통적인 분석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불안정 시계열 사이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즉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EU 수출입함수식인 식 (3-5)와 식 (3-6)에서 추정한 주요 품목별 수출입 가격탄력성과 공적분 검정 결과는 [표 3-20] 및 [표 3-21]에 정리되어 있다. [표 3-20]에서 px 의 추정치들은 품목별 한국의 대EU 수출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표 3-20. 수출함수 품목별 추정결과

		x_{t-1}	px	$eugdp$	$d-w$	R^2	EG
농수산물		0.641 (3.427)	-0.673 (-0.932)	0.346 (0.206)	1.424	0.600	-3.829**
가공식품		0.539 (3.395)	-0.555 (-1.824)	0.868 (0.336)	1.964	0.847	-4.027**
석유화학		0.003 (0.017)	-0.513 (-3.625)	-0.589 (-1.077)	1.634	0.590	-3.593***
섬유·의류·가죽		0.481 (2.921)	-0.376 (-2.335)	3.173 (0.793)	2.056	0.814	-2.274
철강·금속		-0.092 (-0.399)	-1.338 (-1.566)	-0.980 (-0.048)	2.154	0.692	-5.038*
전기·전자	반도체	0.330 (1.787)	-0.208 (-1.780)	0.606 (0.387)	1.811	0.708	-3.267
	통신기기	0.718 (6.865)	-0.841 (-3.844)	-0.081 (-0.055)	2.065	0.983	-4.061**
	가전기기	0.869 (5.520)	-0.940 (-2.682)	3.313 (1.944)	1.438	0.964	-3.105
	컴퓨터	0.682 (4.564)	-1.359 (-2.834)	3.043 (1.324)	1.339	0.950	-3.38***
기계		0.108 (0.559)	-0.511 (-2.177)	6.118 (3.235)	1.855	0.865	-4.074**
정밀기기		0.759 (6.284)	-0.631 (-2.457)	-0.440 (-0.433)	2.006	0.847	-3.330
일반차량 및 부품		0.045 (0.249)	-2.440 (-4.978)	2.253 (3.080)	2.281	0.832	-3.924**
기타 수송기기		0.023 (0.109)	-1.814 (-1.062)	9.416 (3.804)	2.002	0.583	-4.699*
기타제조업		0.055 (0.288)	-0.764 (-3.391)	4.951 (1.746)	1.877	0.536	-4.08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값임.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표 3-21. 수입합수 품목별 추정결과

		m_{t-1}	pm	$kgdp$	$d-w$	R^2	EG
농수산물		0.546 (2.697)	-0.368 (-0.481)	0.135 (0.296)	2.061	0.694	-3.241
가공식품		0.383 (2.528)	-0.584 (-2.651)	2.376 (3.270)	2.524	0.926	-2.494
석유화학		0.068 (0.415)	-0.640 (-4.727)	0.802 (5.176)	2.158	0.865	-5.245*
섬유 · 의류 · 가죽		0.828 (5.551)	-0.414 (-1.019)	0.085 (0.234)	1.622	0.902	-2.645
철강 · 금속		0.537 (2.675)	-0.603 (-0.763)	-0.758 (-0.702)	1.514	0.287	-3.670***
전기 · 전자	반도체	0.587 (4.361)	-0.612 (-1.842)	-0.164 (-0.216)	1.865	0.861	-3.496***
	통신기기	0.577 (3.821)	-0.945 (-2.391)	-0.393 (-0.776)	2.065	0.809	-5.421*
	가전기기	0.148 (1.164)	-1.063 (-5.049)	0.752 (3.543)	2.083	0.973	-4.486*
	컴퓨터	0.484 (2.714)	-1.282 (-2.064)	0.322 (0.531)	2.563	0.965	-3.137***
기계		0.606 (6.981)	-0.589 (-2.332)	0.391 (2.010)	2.417	0.977	-3.843**
정밀기기		0.553 (3.853)	-1.675 (-1.405)	0.530 (0.800)	2.254	0.783	-5.749*
일반차량 및 부품		0.433 (3.640)	-1.142 (-2.433)	2.217 (3.546)	2.288	0.981	-3.760***
기타 수송기기		0.223 (0.980)	-3.570 (-1.382)	-3.646 (-1.102)	2.004	0.390	-3.835***
기타제조업		0.425 (2.793)	-0.878 (-3.675)	0.713 (2.844)	2.257	0.744	-4.04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값임.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을, *eugdp*의 추정치들은 소득탄력성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표 3-21]의 *pm*과 *kgdp*는 각각 한국의 대EU 수입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의미한다.

먼저 탄력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 품목들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소득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동 분석에서 의미있는 변수는 명암처리가 되어 있는 수출입가격탄력성이다. 식 (3-5)와 식 (3-6)에서 추정한 수출입가격탄력성을 한국과 EU의 관세에 적용하여 한·EU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입증대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본 탄력성 분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품목들은 변수들간 공적분 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일부 품목은 공적분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합수의 경우는 섬유·의류·가죽, 가전기기 및 정밀기기 등 3개 품목이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입합수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섬유·의류·가죽 등의 품목에서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ngle-Granger(EG)의 2단계 공적분 검정법을 사용하였으며, 공적분 검정 결과는 [표 3-20] 및 [표 3-21]의 EG 항목에 나타나 있다.⁶²⁾

다. 무역효과

수출입합수 모형에서 추정한 수출입탄력성 결과와 한국과 EU의 관세율을 2004년도 한·EU 교역액에 적용하여 한·EU FTA에 따른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및

62) 공적분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계량경제이론에 의하면 허구적 회귀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분 관계가 없는 품목의 경우도 추정된 탄력성 계수를 수출입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EU FTA에 따르는 품목별(산업별) 수출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한 품목도 분석에서 제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일부 품목의 탄력성 추정치도 수출입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이 본 연구의 한계다.

무역수지 변화를 예측하였다. 관세장벽은 한국과 EU의 2004년도 관세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표 3-22]와 같다.

표 3-22. 한·EU 품목별 가중평균관세율 비교

(단위: %)

		한 국	EU
농수산물		49.78	9.99
가공식품		19.32	16.71
석유화학		6.90	4.00
섬유·의류·가죽		9.08	8.23
철강·금속		4.22	1.44
전기·전자	반도체	0.00	0.00
	통신기기	5.00	2.83
	가전기기	11.52	5.24
	컴퓨터	0.17	0.19
기계		6.33	5.21
정밀기기		6.01	1.84
일반차량 및 부품		7.53	6.38
기타 수송기기		2.93	1.16
기타 제조업		4.77	2.32

주: 2004년도 MFN 실행관세율 기준이며, 품목분류시 한·EU15간 교역액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관세율임.

자료: WTO(2005).

[표 3-23]과 같이 한·EU FTA 체결로 제조업의 경우 2004년도 기준 약 17억 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1차산업은 약 850만 달러의 증대효과만 예상된다. 공산품 중 일반차량이 가장 높은 대EU 수출증가율(14.6%)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동 품목의 수출가격탄력성 추정치(-2.440)가 크

표 3-23. 수출증대 효과(200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EU 수출액		수출증감액(변동률)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1차산업	119.2	127.7	8.5 (7.1%)
농수산물	53.6	56.9	3.3 (6.1%)
가공식품	65.6	70.8	5.2 (7.9%)
제조업	37,709.2	39,412.8	1,703.6 (4.5%)
석유화학	2,185.0	2,228.1	43.1 (2.0%)
섬유·의류·가죽	1,616.3	1,662.5	46.2 (2.9%)
철강·금속	1,190.5	1,213.1	22.6 (1.9%)
전기·전자	16,284.9	16,607.7	322.8 (2.0%)
-반도체	1,603.7	1,603.7	0.0 (0.0%)
-통신기기	7,564.1	7,739.2	175.1 (2.3%)
-가전기기	2,924.4	3,061.3	136.9 (4.7%)
-컴퓨터	4,192.6	4,203.4	10.8 (0.3%)
기계	2,871.4	2,944.1	72.7 (2.5%)
정밀기기	928.7	939.3	10.6 (1.1%)
일반차량 및 부품	7,361.8	8,439.1	1,077.3 (14.6%)
기타 수송기기	4,904.6	5,006.6	102.0 (2.1%)
기타 제조업	366.0	372.3	6.3 (1.7%)

고, EU 관세율이 6.38%로 타 품목에 비하여 비교적 높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차량의 수출증가액은 1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기기와 가전기기 등이 각각 약 1억 8천만 달러, 1억 4천만 달러 증가하는 등 전기전자 품목의 수출도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수입증대효과를 보면, 1차산업은 약 1억 달

러 이상, 공산품의 경우 약 11억 달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기기의 수입액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대 폭은 2억 1천만 달러(9.5%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의 수입증가액도 1억 9천만 달러(4.1% 증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전기와 기계의 수입도 각각 1억 8천만 달러(11.0% 증가)와 1억 7천만 달러(3.5% 증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 효과를 보면, 한·EU FTA 체결로 1차산업의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이

표 3-24. 수입증대 효과(200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EU 수입액		수입증감액(변동률)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1차산업	1,122.8	1,241.3	118.4 (10.5%)
농수산물	441.9	496.0	54.1 (12.2%)
가공식품	680.9	745.3	64.4 (9.5%)
제조업	22,997.2	24,089.6	1,092.4 (4.8%)
석유화학	4,527.6	4,714.7	187.0 (4.1%)
섬유·의류·가죽	1,132.8	1,171.8	39.0 (3.4%)
철강·금속	3,243.9	3,323.1	79.2 (2.4%)
전기·전자	3,836.7	4,034.4	197.7 (5.2%)
-반도체	1,424.4	1,424.4	0.0 (0.0%)
-통신기기	375.9	392.9	16.9 (4.5%)
-가전기기	1,638.2	1,818.0	179.9 (11.0%)
-컴퓨터	398.1	399.0	0.9 (0.2%)
기계	4,915.5	5,087.8	172.4 (3.5%)
정밀기기	2,248.3	2,461.8	213.5 (9.5%)
일반차량 및 부품	1,566.2	1,691.4	125.2 (8.0%)
기타 수송기기	281.8	310.5	28.6 (10.2%)
기타 제조업	1,244.4	1,294.2	49.7 (4.0%)

상 무역적자가 확대되지만, 제조업은 6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차량, 통신기기, 컴퓨터, 기타 수송기기, 섬유·의류·가죽 부문의 대EU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반면, 나머지 교역품목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차량은 약 9억 5천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16.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기기도 약 1억 6천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2.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정밀기기(2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표 3-25. 무역수지 효과(200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EU 무역수지		무역수지증감액 (변동률)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1차산업	-1,003.6	-1,113.6	-110.0 (11.0%)
농수산물	-388.3	-439.1	-50.8 (13.1%)
가공식품	-615.3	-674.5	-59.2 (9.6%)
제조업	14,712.0	15,323.2	611.2 (4.2%)
석유화학	-2,342.7	-2,486.6	-143.9 (6.1%)
섬유·의류·가죽	483.5	490.6	7.2 (1.5%)
철강·금속	-2,053.3	-2,109.9	-56.6 (2.8%)
전기·전자	12,448.2	12,573.3	125.1 (1.0%)
-반도체	179.3	179.3	0.0 (0.0%)
-통신기기	7,188.2	7,346.3	158.2 (2.2%)
-가전기기	1,286.3	1,243.3	-43.0 (-3.3%)
-컴퓨터	3,794.5	3,804.4	9.9 (0.3%)
기계	-2,044.1	-2,143.8	-99.7 (4.9%)
정밀기기	-1,319.6	-1,522.5	-202.9 (15.4%)
일반차량 및 부품	5,795.7	6,747.7	952.1 (16.4%)
기타 수송기기	4,622.7	4,696.1	73.4 (1.6%)
기타 제조업	-878.5	-921.9	-43.4 (4.9%)

확대), 석유화학(1억 4천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의 품목은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지금까지 한·EU FTA 체결시 한국과 기존 EU 15개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날 무역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한·EU FTA 체결시 EU 신규회원국만을 고려한 무역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신규회원국이 EU에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기존회

표 3-26. 수출함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x'	k	px'	k	$eugdp'$	k	$nobs$
농수산물		-2.21	0	-1.44	0	0.34	0	28
가공식품		-2.41	0	-0.70	0	0.34	0	28
석유화학		-5.36*	0	-1.472	0	0.34	0	28
섬유·의류·가죽		-2.70***	1	0.14	0	0.34	0	28
철강·금속		-4.09*	0	-2.31	2	0.34	0	28
전기·전자	반도체	0.97	6	-1.58	0	0.34	0	28
	통신기기	0.83	1	-0.64	0	0.34	0	28
	가전기기	-0.55	0	0.37	0	0.34	0	28
	컴퓨터	-0.55	0	-1.78	0	0.34	0	28
기계		-3.94*	0	-0.24	0	0.34	0	28
정밀기기		3.36	3	-0.02	0	0.34	0	28
일반차량 및 부품		-1.20	2	0.00	0	0.34	0	28
기타 수송기기		-9.52*	5	0.00	0	0.34	0	28
기타 제조업		-2.65***	0	0.27	0	0.34	0	28

주: x' 는 실질수출, px' 는 수출상대가격, $eugdp'$ 는 신규가입 3개국 실질소득, $nobs$ 는 관측치수, k 는 Schwarz Criterion에 따른 적정 시차변수의 개수임. *, ***는 각각 1%,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원국과 신규회원국 간에는 상당한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산업구조와 산업별 경쟁력면에서도 양자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분석모형은 식 (3-5)와 (3-6)으로 기존 EU15와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과 동일하다. 다만 분석대상이 신규회원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에 사용하는 데이터도 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되는 신규회원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개국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신규회원국 중 한국과의 교역은 대부분 이 3개국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도 모두 시계열 자료이므로 EU 15개국 분석과

표 3-27. 수입합수 변수들에 대한 ADF 검정 결과

		m'	k	pm'	k	$kgdp'$	k	$nobs$
농수산물		-1.40	6	-3.16**	1	-0.65	0	28
가공식품		-3.54**	0	-2.21	2	-0.65	0	28
석유화학		-1.08	1	-1.98	1	-0.65	0	28
섬유·의류·가죽		3.09	8	-1.17	1	-0.65	0	28
철강·금속		-3.73	0	-1.98	0	-0.65	0	28
전기·전자	반도체	-1.75	1	-1.92	1	-0.65	0	28
	통신기기	0.68	0	-1.45	0	-0.65	0	28
	가전기기	-1.52	0	-1.97	0	-0.65	0	28
	컴퓨터	-1.51	0	-2.25	1	-0.65	0	28
기계		-0.47	0	-0.93	1	-0.65	0	28
정밀기기		2.88	2	-2.83***	0	-0.65	0	28
일반차량 및 부품		2.18	7	-2.54	1	-0.65	0	28
기타 수송기기		-2.45	0	-2.54	1	-0.65	0	28
기타 제조업		-2.42	0	-0.59	3	-0.65	0	28

주: m' 은 실질수입, pm' 은 수입상대가격, $kgdp'$ 은 한국의 실질소득, $nobs$ 는 관측치수, k 는 Schwarz Criterion에 따른 적정 시차변수의 개수임.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동일한 방법으로 수출입함수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26]과 [표 3-27]에서 보듯이 변수들간 관계는 사례 1과 사례 2에 해당되었다. 품목별 추정결과는 [표 3-28]과 [표 3-29]에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 품목들의 가

표 3-28. 수출함수 품목별 추정결과

		x_{t-1}'	px'	$eugdp'$	$d-w$	R^2	EG'
농수산물		0.156 (0.696)	-4.498 (-1.728)	11.409 (2.407)	1.705	0.599	-4.090**
가공식품		0.606 (4.455)	-0.793 (-1.776)	-3.877 (-2.474)	1.715	0.876	-3.624***
석유화학		0.506 (4.535)	-0.909 (-2.910)	0.797 (1.333)	2.612	0.722	-3.406***
섬유·의류·가죽		0.006 (0.030)	-0.282 (-0.844)	7.918 (2.673)	1.946	0.822	-3.925**
철강·금속		-0.172 (-0.816)	-0.475 (-0.438)	3.505 (2.762)	1.996	0.507	-6.016*
전기·전자	반도체	-0.428 (2.165)	-0.546 (-0.790)	8.490 (2.208)	1.886	0.807	-3.448***
	통신기기	0.509 (2.816)	-1.560 (-2.523)	11.429 (2.254)	1.768	0.972	-3.459***
	가전기기	0.409 (2.048)	-1.292 (-1.488)	3.283 (0.913)	2.160	0.867	-4.025**
	컴퓨터	0.289 (1.577)	-2.539 (-3.101)	-1.668 (-0.556)	1.963	0.919	-3.928**
기계		0.157 (0.824)	-0.333 (-0.403)	2.030 (0.640)	2.052	0.251	-1.634
정밀기기		-0.208 (-1.061)	-1.343 (-3.105)	0.611 (0.451)	1.802	0.608	-5.893*
일반차량 및 부품		0.772 (6.909)	-2.831 (-2.408)	-3.340 (-1.822)	2.629	0.763	-3.748***
기타 수송기기		0.892 (9.437)	-2.754 (-2.249)	-2.986 (-1.458)	2.568	0.877	-1.494
기타 제조업		0.619 (4.392)	-1.104 (-1.915)	-3.230 (-2.078)	2.350	0.616	-2.91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값임.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격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소득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규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입함수식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중 많은 품목들이 통

표 3-29. 수입함수 품목별 추정결과

		m_{i-l}'	pm'	$kgdp'$	$d-w$	R^2	EG'
농수산물		0.531 (3.235)	-2.677 (-1.936)	-0.357 (-0.813)	1.358	0.616	-4.917*
가공식품		-0.087 (-0.482)	-3.914 (-1.696)	3.734 (1.602)	2.605	0.424	-4.373*
석유화학		0.540 (3.371)	-0.742 (-1.085)	-0.772 (-1.674)	2.727	0.571	-3.442***
섬유·의류·가죽		0.323 (1.705)	-0.709 (-0.536)	-0.105 (-0.063)	2.232	0.834	-3.938**
철강·금속		0.153 (0.787)	-0.674 (-0.374)	3.835 (3.129)	2.097	0.431	-2.461
전기·전자	반도체	-0.153 (-0.741)	-1.286 (-1.177)	6.667 (3.164)	2.128	0.823	-3.625***
	통신기기	0.397 (2.061)	-1.161 (-0.947)	2.447 (1.317)	1.854	0.791	-3.609***
	가전기기	0.419 (2.669)	-2.555 (-1.516)	-0.095 (-0.050)	2.038	0.912	-2.472
	컴퓨터	0.795 (6.994)	-1.783 (-2.114)	-1.652 (-1.478)	2.175	0.878	-3.831***
기계		0.590 (4.136)	-0.425 (-0.295)	1.810 (1.502)	1.731	0.879	-5.972*
정밀기기		-0.002 (-0.012)	-2.950 (-1.197)	4.198 (3.193)	2.016	0.779	-4.551**
일반차량 및 부품		0.366 (2.298)	-2.046 (-1.365)	2.743 (1.937)	2.557	0.880	-4.112**
기타 수송기기		0.116 (0.588)	-1.617 (-0.461)	3.788 (1.191)	1.466	0.372	-4.401**
기타 제조업		0.483 (3.119)	-1.184 (-2.333)	0.721 (1.594)	1.872	0.651	-4.48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t-통계값임.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함.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공적분 검정결과, 수출함수에서는 기계, 기타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수입함수에서는 철강·금속과 가전기기 등의 품목에서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EU 신규가입국 간에 적용된 관세율은 [표 3-30]과 같다.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 모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EU 15개국과 신규회원국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석에서 교역액을 가중치로 둔 가중평균관세율을 사용하기 때문

표 3-30. 한·신규회원국의 품목별 가중평균관세율 비교

(단위: %)

		한 국	EU
농수산물		24.67	6.18
가공식품		16.56	18.09
석유화학		6.74	4.79
섬유·의류·가죽		11.20	7.13
철강·금속		2.90	2.36
전기·전자	반도체	0.00	0.00
	통신기기	4.51	2.74
	가전기기	4.20	6.42
	컴퓨터	0.06	0.06
기계		8.07	6.75
정밀기기		6.05	1.86
일반차량 및 부품		7.53	6.38
기타 수송기기		3.41	1.78
기타 제조업		7.30	2.43

주: 2004년 MFN 실행관세율 기준이며, 품목분류시 한·EU신규가입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개국) 간 교역액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관세율임.

자료: WTO(2005).

에 [표 3-30]의 한국과 EU 신규가입국 간의 관세율 비교표는 한국과 기존회원국 간에 적용된 관세율[표 3-22]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EU FTA 체결이 한국과 EU 신규회원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표 3-31]~[표 3-33]에 정리되어 있다.⁶³⁾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EU신규회원국 수출증대효과는 공산품의 경우, 2004년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이상, 1차산업은

표 3-31. 수출증대 효과(200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EU신규회원국 수출액		수출증감액(변동률)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1차산업	0.64	0.73	0.09 (13.9%)
농수산물	0.08	0.10	0.02 (26.2%)
가공식품	0.56	0.62	0.07 (12.1%)
제조업	1,931.38	2,047.07	115.69 (6.0%)
석유화학	69.67	72.56	2.89 (4.2%)
섬유·의류·가죽	78.27	79.74	1.47 (1.9%)
철강·금속	40.08	40.52	0.44 (1.1%)
전기·전자	1,242.51	1,290.28	47.77 (3.8%)
-반도체	4.65	4.65	0.00 (0.0%)
-통신기기	853.10	888.59	35.49 (4.2%)
-가전기기	153.04	164.97	11.93 (7.8%)
-컴퓨터	231.72	232.07	0.35 (0.2%)
기계	120.97	123.52	2.55 (2.1%)
정밀기기	16.72	17.13	0.41 (2.5%)
일반차량 및 부품	352.69	412.57	59.88 (17.0%)
기타 수송기기	0.033	0.035	0.002 (4.8%)
기타 제조업	10.43	10.71	0.27 (2.6%)

6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EU 신규회원국 3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간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 9만 달러로 예상된다. 공산품 중 일반차량 부문이 약 6천만 달러 증가(17.0% 증가)하여 최대수출확대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기기의 수출도 약 3,600만 달러 증가(4.2% 증가)하여 그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에 따른 신규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입증대 효과를 보면, 1차산업은 1,600만 달러, 공산품은 1,900만 달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약 1,600만 달러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산품에서

표 3-32. 수입증대 효과(200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EU신규회원국 수입액		수입증감액(변동률)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1차산업	30.22	46.24	16.02 (53.0%)
농수산물	29.63	45.32	15.69 (53.0%)
가공식품	0.59	0.92	0.33 (55.6%)
제조업	289.71	309.08	19.37 (6.7%)
석유화학	16.71	17.49	0.78 (4.7%)
섬유·의류·가죽	7.18	7.69	0.51 (7.1%)
철강·금속	22.53	22.96	0.43 (1.9%)
전기·전자	107.74	115.16	7.42 (6.9%)
-반도체	6.53	6.53	0 (0.0%)
-통신기기	22.91	24.06	1.15 (5.0%)
-가전기기	60.76	67.02	6.26 (10.3%)
-컴퓨터	17.54	17.55	0.019 (0.1%)
기계	55.40	57.15	1.76 (3.2%)
정밀기기	10.67	12.47	1.80 (16.8%)
일반차량 및 부품	20.24	23.14	2.90 (14.3%)
기타수송기기	7.29	7.68	0.39 (5.3%)
기타 제조업	41.96	45.34	3.38 (8.1%)

는 가전기기가 6백만 달러 이상(10.3% 증가), 기타 제조업이 3백만 달러 이상(8.1% 증가)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효과를 보면, 한·EU FTA 체결로 1차산업은 약 1,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지만 제조업은 약 9,6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중 대부분 품목의 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반차량(약 5,600만 달러 증가)과 통신기기(약 3,400만 달러 증가)의 무역 흑자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타 수송기기, 정밀기기, 기타 제조업의 경우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3. 무역수지 효과(200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EU신규회원국 무역수지		무역수지증감액 (변동률)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1차산업	-29.58	-45.51	-15.93 (53.9%)
농수산물	-29.55	-45.22	-15.67 (53.0%)
가공식품	-0.03	-0.29	-0.26 (793.8%)
제조업	1,641.67	1,737.99	96.32 (5.9%)
석유화학	52.96	55.07	2.11 (4.0%)
섬유·의류·가죽	71.09	72.05	0.96 (1.3%)
철강·금속	17.55	17.56	0.01 (0.1%)
전기·전자	1,134.77	1,175.12	40.35 (3.6%)
-반도체	-1.88	-1.88	0.00 (0.0%)
-통신기기	830.19	864.53	34.34 (4.1%)
-가전기기	92.28	97.95	5.67 (6.1%)
-컴퓨터	214.19	214.52	0.33 (0.2%)
기계	65.58	66.36	0.79 (1.2%)
정밀기기	6.05	4.66	-1.39 (-22.9%)
일반차량 및 부품	332.46	389.44	56.98 (17.1%)
기타 수송기기	-7.26	-7.65	-0.39 (5.3%)
기타 제조업	-31.52	-34.63	-3.11 (9.9%)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앞 절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에 대해 한·EU FTA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다루지 못한 서비스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자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확대로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타산업으로의 전후방 파급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산업의 발전 부진, 특히 금융, 회계, 법률, 연구개발, 교육, 의료,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미흡한 발전과 생산성 낙후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⁶⁴⁾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또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및 EU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다. 생산성은 일정한 경제부문 내에서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산성의 개념은 투입물(input)에 대한 산출물(output)의 비율로서 생산성 변화는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TFP) 등 다양한 방법으로

64)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4)에 따르면, 2001년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70.7%이지만 한국은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분석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자료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⁶⁵⁾ 노동생산성은 특정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총노동량에 대한 총산출량으로 정의되며, 특정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노동생산성과 총산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된

표 3-34.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
(2000년 부가가치액,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한국=100)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89.1	147.9	371.3	186.5	176.9	167.3
EU 13개국 평균	59.8	118.2	274.3	143.2	142.0	146.9
오스트리아	53.7	169.3	272.6	127.5	162.4	175.9
벨기에	96.6	175.5	332.6	139.5	189.5	170.6
덴마크	54.3	117.2	258.6	132.1	150.8	139.7
핀란드	47.9	104.0	256.9	148.6	154.8	135.2
프랑스	66.0	10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0	138.9	165.3	156.1
그리스	31.4	125.2	271.7	114.1	172.2	132.1
이탈리아	64.3	135.2	318.7	181.5	171.0	153.2
룩셈부르크	47.3	156.2	366.7	199.4	173.5	232.6
네덜란드	66.2	106.2	272.2	163.6	98.8	135.4
폴란드	14.9	69.0	213.3	58.4	37.6	70.0
포르투갈	85.4	60.0	211.8	149.8	60.9	114.7
스페인	104.8	94.7	295.4	154.9	150.6	139.0

주: 1) EU 13개국 평균은 단순평균치임.

2)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1999년 값임.

자료: OECD(2002) 및 한국생산성본부(2003).

65)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는 Griliches, Zvi(1992)의 *Output Measurement in the Service Sectors*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 일국의 경제내에서 여타 산업과 비교할 경우 총산출액 기준 노동생산성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부가가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산출물의 생산효율성 측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액 기준 노동생산성이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가가치액 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표 3-34]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및 EU 주요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EU 13개국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⁶⁶⁾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기타 서비스 업에서도 한국보다 생산성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유럽지역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그 외 중소국가들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개방도도 EU 및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5]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도를 미국 및 EU와 비교한 것이다. 서비스업 개방의 핵심이 되고 있는 mode 3와 mode 4의 경우⁶⁷⁾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비교대상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6)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상의 제약으로 EU 13개국은 기존 15개 EU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이 빠지고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가 포함되었다.

67) GATS에 따르면 서비스 거래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재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다음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GATS 1조2항). i) Mode 1(국경간 공급):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의 경우를 말하는데, 송금 등 은행 거래가 대표적이다. 서비스 수요자나 공급자의 공간이동이 없는 경우이다. ii) Mode 2(해외소비): 해외관광여행이나 환자가 외국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경우와 같이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iii) Mode 3(상업적 주제): 호텔 체인이나 해외보험회사의 국내지사와 같이 서비스공급자가 수요지로 진출하는 경우이다. iv) Mode 4(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국경간 이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의사나 회계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영업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상품무역의 경우 공급자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반해 서비스의 경우는 iii)이나 iv)와 같이 공급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35.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수준 비교

	mode 1	mode 2	mode 3	mode 4
한국	0.336	1.000	0.442	0.295
EU	0.270	1.000	0.513	0.364
미국	0.475	1.000	0.578	0.357

주: 1) 시장접근(MA)기준, mode 3, 4는 서비스 전분야를, mode 1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및 운송서비스, mode 2는 관광서비스의 개방수준을 분석. Hoekman(1995)의 추정방법을 활용, 전면개방=1, 부분개방=0.5, 미개방=0의 값을 적용, 공급형태(mode)별 개방수준을 추계함.

2) EU는 EU 15개국을 의미

자료: WTO(1999) 서비스 양허표를 활용하여 추계함.

[표 3-36]은 상업적 주재에 해당하는 mode 3의 경우 주요 서비스산업별로 개방도를 EU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 및 환경서비스, 금융, 문화 산업의 개방도가 EU보다 낮으며, 사업 및 통신서비스 그리고 관광서비스 부문은 EU보다 더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6. 서비스 분야별 mode 3 개방수준 비교

	업종 수	한국	EU
서비스 전체	154	0.442	0.513
사업서비스	46	0.652	0.641
통신서비스	24	0.583	0.375
건설서비스	5	0.500	0.500
유통서비스	5	0.600	0.700
교육서비스	5	0.000	0.800
환경서비스	4	0.500	1.000
금융서비스	17	0.353	0.500
보건 및 사회서비스	4	0.000	0.375
관광서비스	4	0.750	0.625
문화서비스	5	0.000	0.500
운송서비스	35	0.214	0.329

주: 앞의 표의 주 1) 및 주 2) 참조

자료: WTO(1999) 서비스 양허표를 활용하여 추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개방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유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낮은 생산성 때문에 개방도가 낮을 수 있으며 낮은 개방도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의 유인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FTA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TA를 통해 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크게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국내 총산출 증대, 고용 창출, 국내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국내의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일시적인 몰락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점진적이지만 실질적인 개방은 오히려 개방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선,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 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진출하여 현지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서비스의 질에는 국가 특유의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가 나타날 수 없으며, 서비스 분야는 영업형태, 노하우 등에서 catch-up이 빠르게 나타나며, 전문 인력의 양성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력을 가진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진입 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가속화된다는 특성이 있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1절에서 CGE 분석을 이용하여 한·EU간 FTA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Hoekman(1995)의 추정방법을 활용, 한국과 EU의 양허표에 명시된 서비스산업의 분야별 교역장벽을 지수화하여 CGE 모형에 적용,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인

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이 정량화되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의 완전자유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서비스 교역장벽의 50%가 완화될 경우 효과 추정)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추정된 CGE 분석결과 중 산업생산변화 자료를 사용하여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생산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EU FTA에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다고 해도 국민경제의 직·간접적인 연관체계에 의해 서비스 분야의 생산 및 고용 변화가 발생하며, 서비스 분야가 포함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농업 및 제조업 관세의 완전철폐만을 가정한 시나리오 I과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완전철폐와 서비스 교역장벽의 50% 감축을 가정한 시나리오 II, 농업 관세는 50% 감축하고 제조업 관세는 완전철폐하며 서비스 교역장벽의 50% 감축을 가정한 시나리오 III 모두에 대해 생산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 부문별로 한·EU FTA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생산 및 고용 파급 효과를 추계하였다.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증가, 고용증가 효과는 2000년 기준 효과를 의미하며, 한·EU FTA 체결시점에서의 효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분석 결과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3-37] 및 [표 3-38]과 같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제외한 시나리오 I의 경우, 총산출이 정태모형에서는 5.7조 원(0.8%) 증가하고 자본축적모형에서는 8.3조 원(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한편 농업 및 공산품의 관세 철폐와 함께 서비스 분야 교역장벽

의 50%를 완화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총산출은 정태모형에서 17.1조 원(2.5%), 자본축적모형에서 23.3조 원(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업의 50% 관세 철폐와 공산품의 완전개방 및 서비스 교역장벽의 50% 완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III의 경우 서비스업의 총산출은 정태모형에서 17.2조 원(2.5%), 자본축적모형에서 23.4조 원(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표 3-37.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정태모형)

(단위: 조 원,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정태모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서비스 합계	674.7	680.3	5.7(0.8)	691.7	17.1(2.5)	691.8	17.2(2.5)
전력·가스·수도	31.5	31.7	0.2(0.8)	32.2	0.7(2.1)	32.2	0.7(2.2)
건설	99.3	100.9	1.6(1.6)	103.1	3.8(3.8)	103.1	3.8(3.8)
도소매	69.8	70.4	0.6(0.8)	71.1	1.2(1.7)	71.1	1.2(1.8)
음식점 및 숙박	41.1	41.5	0.3(0.8)	42.0	0.9(2.1)	42.0	0.9(2.2)
운수 및 보관	51.2	51.3	0.1(0.2)	53.3	2.2(4.2)	53.3	2.2(4.2)
통신 및 방송	33.9	34.0	0.1(0.2)	35.3	1.4(4.2)	35.3	1.4(4.2)
금융 및 보험	63.4	63.9	0.5(0.7)	64.3	0.9(1.4)	64.3	0.9(1.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7.4	138.5	1.1(0.8)	140.3	2.9(2.1)	140.4	3.0(2.2)
교육 및 보건	72.8	73.4	0.6(0.8)	74.4	1.5(2.1)	74.4	1.6(2.2)
공공행정국방	43.6	43.9	0.3(0.8)	44.5	0.9(2.1)	44.5	0.9(2.2)
사회 및 기타서비스	30.6	30.8	0.2(0.8)	31.2	0.6(2.1)	31.2	0.7(2.2)

주: 1) 서비스 전체에는 전기·가스·수도, 건설 포함.

2) 괄호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 및 한국은행(2003),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값임.

- 68)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정태적 효과(정태모형)는 서비스시장 개방 자체(서비스 교역장벽 완화)만을 고려한 효과를 의미하며, 자본축적모형에서 제시된 효과는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증가된 소득으로 파급된 추가적인 자본축적을 고려한 효과를 의미한다.

첫째, 한·EU FTA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제외하더라도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생산변화에 서비스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서비스업의 총산출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농업 및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 II는 동일한 가정하에 분석한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분석결과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약상 EU 15개국의 자료를 가지고 FTA 효과를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대된 EU 25개국의 자료를 반영하여 FTA 효

표 3-38.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자본축적모형)

(단위: 조 원,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자본축적모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총산출	증감액
서비스 합계	674.7	682.9	8.3(1.2)	698.0	23.3(3.5)	698.0	23.4(3.5)
전력·가스·수도	31.5	31.9	0.4(1.2)	32.5	1.0(3.1)	32.5	1.0(3.1)
건설	99.3	101.1	1.8(1.9)	103.6	4.3(4.4)	103.6	4.3(4.4)
도소매	69.8	70.7	0.9(1.3)	71.8	1.9(2.7)	71.8	1.9(2.7)
음식점 및 숙박	41.1	41.6	0.5(1.2)	42.4	1.3(3.1)	42.4	1.3(3.1)
운수 및 보관	51.2	51.4	0.3(0.5)	53.8	2.6(5.1)	53.8	2.6(5.1)
통신 및 방송	33.9	34.1	0.2(0.5)	35.6	1.7(5.1)	35.6	1.7(5.1)
금융 및 보험	63.4	64.2	0.7(1.2)	65.0	1.6(2.4)	65.0	1.5(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7.4	139.1	1.7(1.2)	141.7	4.3(3.1)	141.8	4.3(3.1)
교육 및 보건	72.8	73.7	0.9(1.2)	75.1	2.3(3.1)	75.1	2.3(3.1)
공공행정국방	43.6	44.1	0.5(1.2)	45.0	1.4(3.1)	45.0	1.4(3.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0.6	31.0	0.4(1.2)	31.5	1.0(3.1)	31.6	1.0(3.1)

주: [표 3-37]의 주 참조

자료: [표 3-37]의 자료 참조

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⁶⁹⁾

셋째, 시나리오 II와 시나리오 III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생산효과는 농업개방 수준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제외한 시나리오 I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표 3-39.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정태모형)

(단위: 천 명,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정태모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서비스 합계	11,234	11,366	132.7(1.2)	11,606	372.1(3.3)	11,608	374.8(3.3)
전력·가스·수도	72	73	1.4(2.0)	76	3.8(5.3)	76	3.8(5.3)
건설	1,249	1,283	33.7(2.7)	1,328	79.5(6.4)	1,328	78.8(6.3)
도소매	2,888	2,915	27.0(0.9)	2,944	56.2(1.9)	2,945	57.2(2.0)
음식점 및 숙박	1,370	1,386	16.2(1.2)	1,414	43.6(3.2)	1,414	44.2(3.2)
운수 및 보관	783	785	2.2(0.3)	825	42.1(5.4)	825	42.1(5.4)
통신 및 방송	127	128	0.8(0.6)	141	14.4(11.4)	141	14.4(11.4)
금융 및 보험	699	706	7.3(1.0)	713	14.1(2.0)	713	14.1(2.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50	862	11.9(1.4)	882	31.9(3.8)	883	32.3(3.8)
교육 및 보건	1,552	1,568	15.4(1.0)	1,594	41.3(2.7)	1,594	41.9(2.7)
공공행정국방	675	682	7.1(1.1)	694	19.1(2.8)	694	19.4(2.9)
사회 및 기타 서비스	969	979	9.7(1.0)	996	26.0(2.7)	996	26.4(2.7)

주: 1) 서비스 전체에는 전기·가스·수도, 건설 포함.

2) 괄호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 및 한국은행(2003),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값임.

69)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교역장벽이 50% 완화될 경우 총산출이 정태모형에서는 1.5조 원, 동태모형에서는 7.3조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있는 건설 분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나리오 I에서는 자본축적모형의 효과가 정태모형에 비해 다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교역장벽을 50% 완화한 시나리오 II와 III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통신 및 방송, 운수 및 보관의 총산출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분야 또한 여타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시나리오 II와 III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총산출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0.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자본축적모형)

(단위: 천 명, %)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자본축적모형)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종사자	증감인원
서비스 합계	11,234	11,427	193.2(1.7)	11,751	517.2(4.6)	11,752	518.8(4.6)
전력·가스·수도	72	74	2.2(3.0)	78	5.6(7.8)	78	5.6(7.8)
건설	1,249	1,287	38.3(3.1)	1,339	90.6(7.3)	1,339	90.2(7.2)
도소매	2,888	2,928	40.6(1.4)	2,977	89.1(3.1)	2,977	89.7(3.1)
음식점 및 숙박	1,370	1,395	25.1(1.8)	1,434	64.4(4.7)	1,435	64.8(4.7)
운수 및 보관	783	788	5.4(0.7)	833	50.7(6.5)	833	50.7(6.5)
통신 및 방송	127	129	1.8(1.5)	144	17.4(13.7)	144	17.4(13.7)
금융 및 보험	699	711	11.7(1.7)	724	24.7(3.5)	723	24.5(3.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50	869	18.3(2.2)	897	47.1(5.5)	898	47.4(5.6)
교육 및 보건	1,552	1,576	23.8(1.5)	1,613	61.0(3.9)	1,614	61.4(4.0)
공공행정국방	675	686	11.0(1.6)	703	28.2(4.2)	703	28.4(4.2)
사회 및 기타 서비스	969	984	15.0(1.5)	1,008	38.5(4.0)	1,008	38.7(4.0)

주: [표 3-39]의 주석 참조

자료: [표 3-39]의 자료 참조

시나리오 I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모형 모두에서 서비스 분야별 총산출 증가율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나, 시나리오 II와 시나리오 III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태모형에서 서비스 업종별로 총산출 증가율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시나리오 II 및 시나리오 III의 정태모형에서 우리나라가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의 경우 총산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그렇지 않은 분야에 비해 서비스시장 개방 초기에 구조조정 및 경쟁 가중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자본축적모형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국내 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 전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는 [표 3-39] 및 [표 3-40]과 같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제외한 시나리오 I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고용이 약 13만 명(1.2%) 증가하고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약 19만 명(1.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포함한 시나리오 II와 III의 경우 고용창출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시나리오 II의 경우 정태모형에서 고용이 약 37만 명(3.3%), 자본축적모형에서 약 52만 명(4.6%) 증가되며, 시나리오 III의 경우도 시나리오 II와 유사한 수준의 고용창출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시장 개방(교역장벽의 50% 완화)을 가정한 시나리오 II 및 시나리오 III에 있어 정태모형에서는 통신 및 방송, 건설, 운수 및 보관 등의 고용창출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동 분야의 총산출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자본축적모형에서도 총산출의 증가 및 취업유발계수가 큰 업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과 탄력성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한·EU FTA 체결시 거시경제적 효과, 산업별 효과,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 등 제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농업 개방의 경우도 완전개방과 50% 개방의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하였다. 동구권의 신규 회원국을 제외하면 EU는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한·EU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 연구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효과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정태적 CGE 모형으로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무역자유화의 여러 가지 경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후생은 각각 0.64~2.02%, 0.25~1.34% 증가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총생산 및 후생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본축적모형으로 한·EU FTA의 효과를 분석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후생은 각각 1.08~3.08%, 0.72~2.45% 증가하여 정태모형에 비해 각각 0.44~1.06% 포인트, 0.47~1.1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적의 효과는 서비스업의 무역자유화가 가능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농업에 대한 전면적 자유화보다는 50%의 부분적 자유화의 경우 국내총생산 및 후생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EU FTA의 산업별 효과와 관련해서는 산업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축적을 고려한 장기 효과를 살펴보면 자동차, 운송·통신서비스, 건설, 기타 서비스, 유통, 섬유·의류 등은 생산이 늘어나는 반면, 기타 운송장비, 기계, 철강·금속, 가공식품 등은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EU 국가의

경우 농수산물은 신규회원국, 가공식품은 독일·영국·프랑스, 기계는 독일의 산업생산이 늘어난다. 섬유·의류와 운송·통신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이 늘어나는 반면 EU 국가들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면, 한·EU 교역규모는 모두 증가하는 반면, EU 국가간 무역량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대독일 및 대프랑스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보다 크게 나타나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약하거나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선행연구인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가 선행연구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일한 비교기준인 시나리오 II의 경우와 선행연구를 비교해 볼 때 시나리오 II가 단기의 경우 0.67% 포인트, 장기의 경우 1.14% 포인트만큼 추가적인 GDP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GDP 증대효과가 단기 1.3%, 장기 1.9%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연구가 단기의 경우 52%, 장기의 경우 60%의 GDP증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 셈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연구의 자료 범위가 경제가 더 성장한 최근의 실정을 더 반영하고 있으며 신규회원국이 추가됨으로써 EU와의 FTA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2절에서는 수출입함수를 설정하고 계량분석을 통해 추정한 가격탄력성을 이용, 한·EU FTA가 한국의 품목(산업)별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EU 회원국과 신규회원국 간에는 경제력 격차에 따른 산업구조 및 산업별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 지역을 구분하여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한·EU FTA 체결시 한국과 기존 EU 15개국 간의 교역에서는 1차산업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1억 달러 이상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가 6

억 달러 이상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EU 신규회원국과의 교역에서는 1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약 1,600만 달러만큼 무역적자가 확대되지만 제조업은 약 9,6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반적으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1차산업은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일반차량과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시 1절에서 시도한 CGE 분석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즉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수출입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에 본 분석의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시계열 데이터의 불안정성 문제를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회귀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EU 간 교역액을 중심으로 HS 2단위 기준으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했던 김홍종·김균태·강준구(2005)와 달리 교역 전체품목을 적절한 산업군으로 분류, 산업별 및 제조업 전반의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EU 15개국의 분석과 별도로 신규회원국과의 무역효과를 추가로 분석한 점도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3절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EU FTA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화 대상에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포함되고, 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절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서비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FTA에 따른 효과가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모형 모두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경쟁 및 비교열위 분야의 정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시장 개방 초기의 경쟁 가중 및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고려

한다면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정장치 마련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II 및 시나리오 III의 자본축적모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위축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경험에 의하면 자금, 영업방식 등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경쟁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중소 영세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EU와 FTA 협상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개방으로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대부분 상업적 주재(mode 3)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FDI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외소비(mode 2)를 대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EU가 요구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개방은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격차뿐만 아니라 국경간 공급이 상업적 주재를 대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U의 개방 요구사항은 우리의 개방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나, 앞서 통상현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이미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 금융서비스시장 추가개방, 외국통신사 직배 허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에서 기존 EU 15개국과의 FTA보다 EU 25개국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EU와의 협상과정에서 신규회원국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가입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은 낮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의 인구가 약 7천만 명에 이르고 있어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진출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회원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개방 요구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쟁력을 가진 국내 전문인력의 EU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비자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현재 우리나라가 FTA의 잠재적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FTA와 비교하여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 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CGE 모형을 통해 추계한 거시 경제적 효과 비교에 따르면,⁷⁰⁾ 한·EU FTA는 국내총생산 증가효과에서 ASEAN, 미국 및 중국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본 및 기타 국가보다는 그 효과가 크며 이러한 순위는 1인당 소득 증가 효과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출증대 효과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고용증가 효과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메르코수르, ASEAN 다음으로 평가되지만 구조조정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한·EU FTA는 한·중, 한·미, 한·메르코수르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FTA 대상국으로 평가되고 있다.⁷¹⁾

지금까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각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1절에서 사 용한 CGE 모형은 자본축적과정을 내생화함으로써 기존 정태적 CGE 모형의 문제

7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4), FTA 대상국 선정 및 상대적 영향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6) 한·미 FTA 영향분석결과 등.

71) 새로운 균형으로 갈 때까지의 고용감소분을 구조조정비용의 대리변수로 삼는다면, 한·EU FTA의 구조조정비용은 7,700명으로서, 메르코수르(27,600명), 중국(22,400명), 미국(19,900명), 일본(15,800명)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구조조정비용이 낮은 대상국은 캐나다로서 1,200명으로 추계되었다.

점을 개선하였으나, 무역자유화가 저축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정 저축률을 가정하였다. 무역자유화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나, 저축률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한·EU FTA 체결은 시장확대를 의미하는데, 그 결과 EU 및 역외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변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무역자유화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는 무역정책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각 회원국이 제출한 양허안을 바탕으로, 서비스 무역장벽을 추정한 Hoekman의 자의적 추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 무역장벽을 추정하였다. 비록 중력모형이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실증분석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무역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회귀분석에 사용된 중력모형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에 기초하여 추정된 무역장벽 또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무역장벽은 Hoekman의 자의적 추정치에 대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면서 자본축적과정을 내생화한 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CGE 모형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계량분석에 비해 CGE 모형은 복잡한 모형을 설정하여 수많은 변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내생변수간 상호작용을 허용함으로써 부분균형분석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량분석은 표준통계방법으로 검증될 수 있는 반면, CGE 모형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절에서 사용한 탄력성 접근방식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동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한계다.

가격하락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된 품목별 수출입가격지수가 FTA를 체결하는 양자간 수출입가격지수가 아니라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가격지수라는 점이다. 아직 양자간 수출입가격지수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선박의 경우, 항공기 및 철도와 더불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가격지수조차 조사·발표되지 못하고 있다.⁷²⁾ 이러한 양자간 수출입가격지수 데이터의 부재는 가격탄력성 분석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류 및 통합한 산업군과 여기에 적용되는 수출입가격지수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품목의 수출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와 공적분 관계가 없는 일부 품목의 탄력성 추정치를 수출입효과에 사용하였다는 점도 본 분석이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3절의 서비스 무역 효과에서는, 첫째 CGE 모형분석에서와 같이 Hoekman(1995)의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장벽을 정량화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교역장벽 수준과 추계된 교역장벽 수준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⁷³⁾

둘째, CGE 모형에서는 서비스산업이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에서는 이 중 운수통신과 기타 서비스를 하위부문으로 세분화하고 동일한 총산출 증가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I에 따르면 한·EU FTA로 운수통신 분야의 총산출은 정태적으로 0.22% 증가하는데, 하위부문인 운수 및 보관과 통신 및 방송의 총산출 증가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타 서비스의 세부 분야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CGE 분석에서의 부문보다 분야를 세분화한 것은

72) 동 분석에서는 일반차량의 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73) 이에 대해서는 Hoekman(199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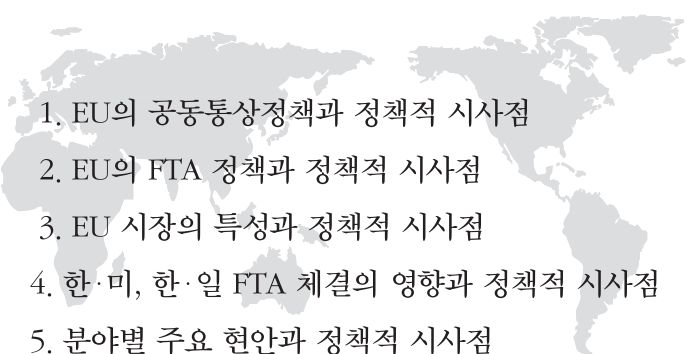
총산출 증가가 평균 수준만큼 변화할 경우 각 분야별 고용창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셋째, 총산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은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각 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을 모두 나타내게 되는데, 계수의 특성상 최대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효과로 해석되어야 한다.⁷⁴⁾

74) 취업계수, 고용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보다 취업유발계수로 분석할 경우 일 반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4. 한·미, 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EU의 통상정책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으로 대표된다. 공동통상정책은 EC 조약⁷⁵⁾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EC 조약은 무역과 무역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EC는 EU가 대외적으로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대표되며,⁷⁶⁾ 모든 상품과 대부분의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실행하는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EC 조약 3조는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⁷⁷⁾ 131~134조는 공동통상정책의 집행기구와 절차, 그리고 정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U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근거는 EU가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EC 조약은 EU의 관세동맹과 공동통상정책과의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EU 관세동맹이 지향하는 바는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공동통상정책은 이 관세동맹의 효과가 회원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⁷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세동맹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이 공동

75)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 유럽통합을 규정하는 기본조약을 일반적으로 EC 조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언급하는 EC 조약은 2002년 12월 OJ에 나온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를 말하는 것으로, 니스조약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니스체제를 따르는 니스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76) EU는 현재 국가별 비준이 진행되고 있는 EU 헌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WTO에서 EC(European Communities)로 대표되고 있다. EU 헌법안은 EU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EC는 현재로서는 EU의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법인격으로 대표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통상정책의 주체는 EC이지만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EU로 통칭하기로 한다.

77) For the purposes set out in Article 2,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ty shall include, as provided in this Treaty and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set out therein:...(b) a common commercial policy;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3:1).

통상정책을 집행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 EU 공동시장은 상품·서비스·자본·노동 등 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별로 대외관세가 다르고 통상정책이 상이하면 역내 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되지 않거나 혹은 서로 다른 대외통상정책은 무력화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대외관세를 체계가 유지된다면 역외국은 가장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출한 다음, 역내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최종소비국으로 상품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동맹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은 공동대외관세와 공동무역정책을 통해 유지·발전된다.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외협상 차원에서 단일한 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존재함으로써 EU의 대외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원국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공동통상정책이 회원국에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EU의 주요한 대외정책 중 하나인 공동통상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왜냐하면 EC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통상정책 범위의 확대는 개별회원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경제 및 무역정책 독자성의 축소로 이어지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U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78) By establishing a customs union between themselves Member States aim to contribute, in the common interest,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world trade, the progressiv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lowering of customs barriers.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avourable effect which the abolition of customs duties between Member States may have on the increase in the competitive strength of undertakings in those States.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131).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무역관련지식재산권(TRIPS) 등이 다자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EU의 공동통상정책도 서비스, 지재산 등의 국경간 이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동통상정책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지면서 유럽연합이사회의 이사회 결정(decision)⁷⁹⁾ 등을 통하여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니스조약⁸⁰⁾은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모든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측면에 관한 조약을 협상하고 완성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하였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EU의 주요 기구를 살펴본다. 현재의 제도적 틀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통상 이사회라고 부름)이다.⁸¹⁾ 이사회의 역할은 EC 법령의 통과, 회원국 경제정책 조율, EU가 당사국으로 하는 국제조약의 체결, (유럽의회와 함께) EU의 예산 승인, 공동대외안보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경찰사범 공조 등이다. EU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럽의회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EP)는 모든 EU의 기구를 감독하며, EU 예산의 입법 및 승인의 책임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집행기관으로서

79) EU의 통상정책은 공동체 법령(Community acts)에 의해 실행된다. 공동체 법령에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그리고 권고(recommendation)와 견해(opinion)가 있다. 이 중 규정이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령이며, 지침은 회원국 법체계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결정은 해당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며, 권고와 견해는 구속력이 없다.

80) 2000년 유럽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되고 국가별 비준을 거친 이후 2003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니스조약은 EU의 중·동구 확대에 대비하여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의회 등의 의사결정구조 변경과 각종 제도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으로서, 원래 일정으로는 2009년까지 니스체제가 유지되고 EU헌법안이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예정되어 있었다.

81) 유럽연합이사회는 해당사안을 관할하는 장관들의 기구이기 때문에 흔히 장관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라고 불린다. 재무장관이사회(Ecofin)가 대표적이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 정상들과 EU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로서 최고위급 이사회이지만 정치적 방향을 정하고 EU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구이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EU의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며,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EU 법률을 집행하고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한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판단을 해왔다.⁸²⁾

공동통상정책과 관련한 많은 결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행한다. 유럽의회의 결정은 보통 과반수로 결정되며, 무역 및 무역관련 이슈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회 결정은 가중다수결투표제(Qualified Majority Vote; QMV)로 이루어진다. 가중다수결투표제로 내려지는 결정은 관세율 변경, 상품·서비스·TRIPS에 관한 관세 및 무역협정, 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구제조치 등이다. 반면 조세(taxation) 같은 예민한 분야는 아직도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무역협정에 관한 대외협상은 EU 집행위가 담당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협상은 이사회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이사회가 임명하고 EC조약 133조 3항⁸³⁾과 합치하는 특별위원회⁸⁴⁾의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정의 경우, 예를 들어 WTO의 주요사안이나 기본협력협

82) 유럽사법재판소의 원래 이름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다. 이외에도 EU의 통화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 EU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유럽투자은행, 회계감사원과 옴부즈맨, 유럽경제사회이사회 등의 기구가 있다.

83) Where agreements with one or mor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be negotiated,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which shall authorize the Commission to open the necessary negotiations.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greements negotiated are compatible with internal Community policies and rules.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these negotiations in consultation with a special committee appointed by the Council to assist the Commission in this task and within the framework of such directives as the Council may issue to it. The Commission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gress of negotiations...(133조 3항)

84) 특별위원회는 흔히 133조 위원회(133 committee)로 불린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정(cooperation agreements), 또는 제후협정(association agreement) 같은 협정을 맺을 때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니스조약에서 위임된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공동체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협정의 경우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협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 중에 외부전문가가 평가하는 절차도 있다.

EU의 공동통상정책 중 하나인 공동무역정책(Common Trade Policy)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거의 모든 무역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치를 다루고 있다. 공동무역정책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관련 분야에는 회사법, 간접세, 표준과 기타 기술규정, 공동체 특허, 지식재산권 행사가 포함된다.

역내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유럽단일시장의 지향점이지만,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역외국과의 자본이동이 EMU의 작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는 최장 6개월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국내법규의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건전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계나 행정적 목적으로 또는 공공정책과 보안을 이유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본이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본시장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EU와 FTA를 맺을 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로 인해 국내산업에 급작스러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세이프가드 기한을 최장 6개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검토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검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드 기간을 조정할 것인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EFTA FTA의 경우 최장 6개월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EU가 단일시장이라고 하지만 역내시장에서 완전이동의

원칙이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⁸⁵⁾ 예를 들어 간접세, 상호인정, 표준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국가기준의 조화, 항공 운송통제, 철도분야, 이중과세 방지, 정부조달, 공동체특허, 지식재산권 행사,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수단이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시장의 구조, 기업지배구조 규칙, 기업과세체계에 대한 회원국간 차이로 인해 투자자가 단일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수 있다.⁸⁶⁾

이러한 역내시장에서의 불일치는 EU의 공동통상정책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EU와 무역협정을 진행하는 역외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협상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⁸⁷⁾ 특히 신규회원국에서의 EU 규범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EU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적·역사적·지정학적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매우 활발한 무역 특혜협정을 맺어왔다. 그 결과 WTO 회원국 중 순수하게 최혜국대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10개국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과의 교역규모가 전체 EU 교역의 36%를 차지하고 있다.⁸⁸⁾

85) 예를 들어 EU 집행위는 상호인정원칙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아 1,500억 유로의 역내무역이 감소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86) 집행위는 기업과세체계 부조화로 인한 비용이 총 기업소득세의 2~4%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87) 예컨대 주류, 식유, 가스, 담배 등에 과세되는 물품세의 경우도 회원국마다 과세범위와 세율이 제각각이다. 이에 관한 일련의 지침은 국가간 차이를 축소하고 투명한 과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1999년 이후 EU는 새로운 무역특혜협정을 시도하지 않고 현재의 협정이나 진행 중인 협상만 해왔는데, 이는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⁸⁹⁾ EU는 거대경제권과는 특혜무역협정을 맺을 계획이 없는데, 이는 거대경제권과의 무역자유화는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혜국대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10개국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3대 거대경제권과의 관계는 결국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3개국을 제외하고는 EU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⁹⁰⁾

그동안 EU가 체결한 무역특혜협정은 대개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자유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의 부분적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화 정도는 보통 대상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EU가 더 빨리, 더 많은 폭의 자유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주로 후진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다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EU는 농산물 교역에서는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다.

협정에는 기술표준의 조화, 지적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구제기구, 분쟁조정체계 등 비상품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에는 환경이슈도 포함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개별국이 아닌 경제권, 예를 들어 MERCOSUR, ACP, 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EU는 주로 개도국과의 FTA가 많은데, 이것은 저개발 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WTO 차원의 다자간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88) 그러나 무역특혜 대상국과도 최혜국대우 교역을 행하고 있는바, EU 전체교역의 38%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대상국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 교역은 EU 전체교역의 74%로 추산된다.

89) Lamy(2002).

90) 교역량 규모로 볼 때 한국은 EU의 8위 교역대상국이다. 캐나다가 9위에 해당한다.

표 4-1. EU의 지역협정 형태

협력 형태	상대국	협 정	발효 연도
SM	아이슬란드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4
SM	노르웨이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4
SM	리히텐슈타인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4
CU	안도라	Exchange of Letters	1991
CU	터키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1995
FTA	불가리아	Europe Agreement	1993
FTA	루마니아	Europe Agreement	1993
FTA	덴마크(페로제도)	Free Trade Agreement	1997
FTA	스위스	Free Trade Agreement	1973
FTA	마케도니아	Free Trade Agreement(Interim Agreement)	2001
FTA	크로아티아	Free Trade Agreement(Interim Agreement)	2002
FTA	팔레스타인	Association Agreement(Interim base)	1997
FTA	튀니지	Association Agreement	1998
FTA	모로코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6→2000
FTA	이스라엘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5→2000
FTA	요르단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7→2002
FTA	이집트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7→2004
FTA	알제리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6→2002(비준단계)
FTA	레바논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7→2003
	시리아	Cooperation Agreement	1977
	GCC	Cooperation and Free Trade	1990 협상시작
	인도	Cooperation Agreement	1993
	아세안	Cooperation Agreement	1980
	러시아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7
	카자흐스탄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9
	몰도바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8
	우크라이나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8
	알바니아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AA)	2003 협상시작
FTA	멕시코	Global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포함)	2000
FTA	칠레	Association Agreement(Services Agreement)	2003(2005)
	메르코수르	Association Agreement	FTA 협상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2000
	AC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중

주: SM은 단일시장, CU는 관세동맹임. 신규가입 10개국은 과거 EU와 유럽협정을 맺은 바 있음. 유럽협정을 맺은 시기는 헝가리와 폴란드(1994년), 체크와 슬로바키아(1995년), 슬로베니아(1997년), 발트3국(1998년), 몰타(1971년), 그리고 키프로스(1973년)임.

자료: 김홍중·이종화(2004)의 [표 5-12]를 유럽집행위원회(<http://europa.eu.int>)와 WTO/TPR(2004)에서 업데이트 함.

EU의特惠무역협정은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정이다. 이는 EFTA 국가와 서부 발칸국가를 포함한 회원가입 대상국들인데, 이 국가들과는 가장 밀접한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 규범(acquis communautaire)의 완전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는 비호혜적(non-reciprocal)特惠협정 대상인데, 이는 과거 식민지국가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과의特惠협정이다. 2003년 발효된 78개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 연안 국가들과의 코토누(Cotonou) 협정⁹¹⁾이 대표적인데 이 협정은 주로 저개발국의 발전과 세계시장과의 통합, WTO 규정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特惠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비호혜적特惠협정은 일반特惠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이다. 이 제도는 EU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EU는 가장 오래되고 폭넓은 범위의 GSP를 시행해온 선진국이다. 기본적으로 원조보다는 무역을 통해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보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GSP는 선진국내 시장접근에서 저개발국에 혜택을 주는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홍콩 및 싱가포르와 함께 1998년 EU의 GSP를 졸업한 바 있다.

셋째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비유럽권 국가들과의 무역特惠협정이다. 현재 무역特惠협정을 맺은 대상은 메르코수르,⁹²⁾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GCC(걸프협력위원회), Mediterranean(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등인데 이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메르코수르, 칠레 그리고 멕시코와의 무역特惠협정을 살펴본다.

91) 코토누 협정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에 따라 체결되었던 아운데 협정(1963년), EU와 ACP 국가들 간에 체결되었던 로메(Lomé) 협정(1975년)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europa.eu.int/comm/development/index_en.htm 참고.

92) 메르코수르 4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다.

2000년 6월 시작된 EU와 메르코수르와의 제후협정은 포괄적인 정치 및 경제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호혜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농산물 교역도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와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한 법령과 환경기준의 조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협정의 범위는 상품의 자유화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 경쟁정책, 무역구제조치,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상은 2002년 이래 시장접근, 세관절차, 표준과 기술규정,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원산지 기준은 범유럽체계(pan-European system)와 유사하다. 농업, 서비스, 어업, 환경과 여행업에 대한 경제협력에 관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EU와 메르코수르의 교역규모는 4백억 달러가 넘으며, 서비스 교역의 규모는 126억 달러에 달한다.

EU는 칠레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2003년 9억 달러에 달하는 대칠레 투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투자자 중 하나다. 이러한 경제관계를 더욱 격상시키기 위해 2002년 11월 EU와 칠레는 2000년 4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제후협정에 서명하였고, 2003년 2월부터 협정을 발효하였다. 서비스 협정은 2005년 발효되었다. 집행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제후협정의 결과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추가로 0.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0~2004년 칠레의 대EU 수출액은 15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칠레의 대EU 수입도 7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EU·칠레 제후협정에서 포괄적 FTA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⁹³⁾

무역 및 무역관련 분야(4장)의 상품무역(2절)에서는 상품자유화와 관련하여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자유화 일정이 결정되었는데, 10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모든 상

93) 포괄적 FTA 관련사항 이외에도 2장 정치부문협력(political dialogue)과 경제 및 산업 협력, 문화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을 포괄하는 3장 협력(cooperation) 등이 규정되어 있다.

품의 97.1%를 자유화하도록 하였다. 이 중 공산품은 100% 양허하였으며, 농산물은 80.9%, 수산물은 90.8%의 자유화율을 기록하였다. 비관세조치에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세관절차, 표준과 기술규정의 조화에 관한 일반적 규칙, 식물 및 식물위생, 와인과 증류주, 그리고 예외조항이 기술되어 있다. 서비스(3절)와 관련해서는 시장접근, 자연인의 이동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금융서비스는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투자, 결제 그리고 자본이동 자유화를 합의하였는데 별도의 절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4절)에 대해 상호 개방하고, 지식재산권(6절)을 보호하며, 경쟁당국간 협력(7절)에 합의하고, 분쟁해결절차(8절)도 규정하였다.

EU는 멕시코의 둘째 교역대상국이며, 멕시코의 주요 투자자다. 1990년 멕시코의 총 무역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으나 1996년에는 6.1%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 EU-멕시코 FTA 발효 이후 첫 2년 동안 양자간 교역은 28.3% 증가하였으며, 양자간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EU의 대멕시코 수출은 146억 유로, 수입은 68억 유로로, EU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도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EU의 대멕시코 서비스 수출은 1995~2003년 사이 17.2% 증가하여 32억 유로에 달했으며, 멕시코의 대EU 서비스 수출은 같은 기간 6억 유로에서 27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EU와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도 양국간 제후협정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협정은 2000년 7월 발효되었다.⁹⁴⁾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경쟁, 지적권, 투자, 지급 등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며, EU로서는 GATT 24조하에 보고된 두 번째 협정이자 GATS 5조하에 고지된 첫 번째 협정이다. 이 협정은 관세철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EU는 즉시철폐 82%를 포함하여 멕시코산 공산품에 대해 2003년까지 완전철폐하였지만 멕시코는 EU의 공산품에 대해

94) 따라서 이 경우도 정치관계, 경제 및 무역 관계, 그리고 협력분야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및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이 있으며,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재검토 조항도 있다. 세관, 표준 및 기술규정, SPS,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협력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차원의 다수의 특별위원회를 두었다.

EU측은 서비스와 정부조달에 관해 사실상 NAFTA 회원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서비스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현상동결(standstill) 조항을 삽입하여 새로운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양 당사국은 협상 발효 후 3년내에 남아 있는 차별적 조항을 최장 10년 안에 제거하는 일정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OECD에서 양자간 맺은 조건과 EU 개별국과 맺은 투자협정에서의 조건 이상의 자유화를 약속하고 추가적인 자유화를 3년 이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EU와 멕시코 간 FTA는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NAFTA에서의 자유화 조건과 부합하는 수준까지 자유화가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자유화 일정이 정해진 것이 특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다자무역체계에서 무역자유화가 논의될 거대경제권 3개국을 제외하고는 최혜국대우 지위에 있는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EU는 한국과 유사한 교역규모를 보이는 러시아, 노르웨이, 터키, 캐나다 중 러시아와 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노르웨이와는 EEA로, 터키와는 1996년 1월부터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보아 2005년 12월 DDA 각료회담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EU의 유력한 FTA 대상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U가 무역특혜협정을 맺은 국가 중 만약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다면 셋째 그룹인 칠레 혹은 멕시코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EC·칠레 FTA나 EC·멕시코 FTA 협상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 FTA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협안에서 다루기로 한다.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EU 25개국은 미국과 함께 최대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전통적으로 EU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2004년 EU의 경상 GDP는 12.8조 달러로서 미국의 11.7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총 교역량은 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GDP 중 민간소비가출이 59%에 달해 총 7.4조 달러를 기록하는 거대시장이다. 한편 역외무역 기준으로 EU는 세계 전체무역의 약 19.2%를 차지, 미국의 18.4%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의 7.6%에 대해 약 2.5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구권까지 EU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 총 교역규모의 약 22% 수준을 점유함으로써 세계 최대 교역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EU 회원국의 민간소비가출 비중은 GDP의 약 56~67%⁹⁵⁾로 GDP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가출의 크기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로 서비스,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류, 식료품 등의 비내구소비재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는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95) 2003년 기준으로 프랑스 56%, 독일 57%, 이탈리아 60%, 스페인 60%, 영국 67%이다.

나. 시장의 성장성

1) 시장통합의 심화

단일시장 완성(1993년), 단일통화 도입(1999년), 그리고 실물화폐 통용(2002년)으로 인해 EU 시장은 꾸준한 통합과 심화 과정을 밟고 있다. EU는 단일유럽법(SEA)에 의해 1993년 공동시장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관통관을 포함한 물리적 장벽 철폐, 품질표준, 법규 및 행정관행의 통일을 통한 기술적 장벽 철폐 그리고 재정적 장벽을 완화해 왔으며, 회원국별로 이행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표(scoreboard)를 작성하면서 시장통합을 독려해 왔다. 그리하여 실물시장의 통합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 가지 장벽 철폐 미이행률이 0.5%에 머무를 정도로 시장통합에 성과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시장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EU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통합은 한편으로는 운송비용 절감으로, 또 한편으로는 경쟁격화로 물류 및 생산기지의 대형화 및 통합화를 가져왔다. 상당 분야의 산업에서 M&A 등을 통한 대형화·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특히 도소매 시장에서의 유통업체 대형화, 국제화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기존의 국별 물류센터에서 범유럽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해 왔으며, 물류체계의 hub/spoke화를 통해 납기단축의 성과를 보였다. 시장통합은 또한 국별 제조업 생산지를 둘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생산거점 대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시장통합은 종래 국영기업이 독과점해온 공공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통합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소득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차이에 의한 시장 특성의 지역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로화 통용은 시장통합을 심화시키고 있다. 1999년 장부상의 화폐로만 유로화가 도입될 당시는 유로지역내 기업 중 유로화를 가격표시에 사용하거나 대금청구

에 사용하는 기업은 30%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2년 1월 유로화가 공식적인 유일한 법화로 등장하면서 유로화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 결과 유로권은 물론 비유로권 유럽국가조차, 종래 국별 통화결제시 발생하던 환차손이 없어짐에 따라 거래비용 절감, 가격투명성 제고에 따르는 경쟁격화 등 시장통합의 이점이 증가되었다. EU 확대 이후 아직 비유로권인 신규가입국과 EU 주변국인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칸국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로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시장통합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⁹⁶⁾

2) EU의 확대 및 범유럽경제권 형성에 따른 시장확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U는 1990년대 이래 유럽협정(Europe Agreement)에 따라 그동안 중·동구 및 터키 등의 국가들과 준회원국 협정을 맺어 왔으며,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4년 5월을 기점으로 EU는 중·동구 및 남구 10개국을 신규회원으로 맞이함에 따라 25개 회원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EU의 단일경제권은 중부유럽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EU는 4억 5,500만 인구를 가진 총 25개 회원국 연합으로 12조 달러를 넘는 거대 단일시장이 되었다.

EU 확대는 중·동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7년경이면 발칸의 일부 국가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 연안국 및 북아프리카국가들과 특별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010년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96) EU 회원국 중 유로화 미도입국과 EFTA, 동유럽, 지중해 연안국가, 유로권 아프리카국가들은 총 교역의 50% 이상이 유로권과의 교역이다.

다. 서비스 시장 통합

EU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에서 상당한 시장통합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에서 EU 시장의 통합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집행위원회가 2000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단일경제라고 하지만 EU 시민과 서비스 공급자들이 회원국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⁹⁷⁾ 서비스 시장의 통합 없이는 EU를 2010년까지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만들려는 리스본 전략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EU 역내 서비스 시장이 자유화되면 6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430억 달러의 GDP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EU는 2004년 3월 Bolkestein Directive를 통해 서비스 분야 단일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규제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영업허가와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EU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할 때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olkestein Directive에서는 서비스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접촉창구 단일화 체제를 도입하고, 행정절차 전산화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절차를 단순화시킬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현재의 법적 규제가 서비스 지침상의 조건과 양립할 수 있는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관련, 서비스 공급자는 영업이 최초로 허가된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서만 규제받으면 되는 출신국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이 적용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서 예를 들어 중·동구 신규회원국에서 온 서

97) The State of the Internal Market for Services(2002. 7).

비스 공급자는 출신국에 의해 서비스 공급을 규정받을 뿐 서비스 수요국의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⁹⁸⁾ 이 조항은 2005년 3월 EU 정상회담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은 이 원칙에서 배제하는 등 서비스수요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현재 서비스 시장의 통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보통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간 이동 자유화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다. 보통 상업적 서비스는 적용대상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건·사회보장 등 복지서비스, 교육·문화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며 금융서비스, 전자통신, 운송 등 공동체 차원에서 별도로 규정되는 분야가 적용 배제되며, 노동권·집단합의제·사회안정 관련 법령, 공공업무 집행, 공익목적 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공급의 안정성, 일반적 접근성, 연속성, 영토적·사회적 결속, 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둘째, 상호인정과 서비스 수요국 원칙(principle of country of destination)이 적용되는 분야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다. 앞서의 출신국 원칙은 서비스 이동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사실상 EC조약 50조의 동등대우의 원칙(equal treatment principle)⁹⁹⁾에 어긋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동등성 원칙을 포함하는 상호인정 원칙으로 치환시켜서 서비스 수요국 원칙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라든가 서비스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 등에

98) 유럽사회모형을 주창하는 기존 EU 회원국들은 이 조항에 의거한 서비스 공급이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에 해당한다고 크게 반발해 왔다.

99)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relating to the right of establishment, the person providing a service may, in order to do so, temporarily pursue the activity in the State where the service is provid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re imposed by that State on its own nationals.”(EC 조약 50조)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U내의 이러한 서비스통합 동향은 EU 서비스 시장의 통합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도 FTA에서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분야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서비스 수요국 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물론 서비스 시장 개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와 서비스산업에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개방의 큰 틀 안에서 속도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4. 한·미, 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양자간 FTA는 많은 경우 역외국에 무역전환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과 EU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FTA 추진은 한·EU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EU 간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관심품목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분야는 크게 가공농산물, 기계류, 자동차, 서비스 및 투자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야들은 EU 이외에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고려 중인 일본과 미국 등 여타 거대경제권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FTA 추진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양자간 FTA 체결 여부에 따라 상기 분야를 중심으로 한·EU 경제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FTA 대상국들이 EU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한국이 현재 FTA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고려 중인 거대경제권 중 일본 또는 미국과 양자간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한·EU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분석함으로써 한·EU FTA가 체결

되지 않았을 때 EU가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¹⁰⁰⁾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사용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FTA의 상황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그리고 한·미 FTA와 한·일 FTA가 동시에 체결될 경우(이하 한·미 + 한·일 FTA로 표기)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FTA가 EU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도 사용한 바 있는 CGE 모형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3장의 CGE 모형분석과의 일관성을 위해 비농산물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관세를 50% 삭감하는 경우를 분석하며,¹⁰¹⁾ GTAP 표준모형을 사용한 정태모형과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한 모형 등 두 가지 모형으로 FTA 시나리오가 한국과 EU 간 교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¹⁰²⁾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미 FTA, 한·일 FTA 및 한·미 + 한·일 FTA의 경우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하면 한·미 + 한·일 FTA가 EU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무역전환효과를 포함하여 거시경제적 충격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미 FTA, 한·일 FTA의 파급효과 순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부록 참고).

EU 국가의 GDP(금액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미 + 한·일 FTA에 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의 GDP가 각각 0.08~0.09% 감소하고 있으며,

100) 거대경제권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로서는 중국이 추가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EU와 경합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EU와 유사한 경제발전단계를 보이는 일본 및 미국의 경우만 살펴보고 있다.

101) 분석의 편의상 서비스 부문은 제외하였다. 농산물 100% 자유화의 경우도 분석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기로 한다.

102) 지역을 구분함에 있어 세계를 EU, FTA 국가(한국, 일본, 미국) 및 기타국가로 나누었다. EU를 다시 관심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및 폴란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국가를 기타 EU 1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기존회원국)과 기타 EU 10개국(폴란드를 제외한 신규회원국)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은 한·EU FTA 분석에 사용된 구분을 유지하였으나 석탄, 석유, 광물자원은 채취업으로 독립시켰다.

기타 EU 15국 및 기타 EU 10국의 GDP는 0.08~0.10% 감소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는 정태모형에서 전 EU 국가 및 권역의 GDP가 0.04% 감소하고 있으나, 자본축적모형에서는 국가별로 0.05~0.07% 정도 차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일 FTA의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정태모형에서의 GDP 감소가 자본축적모형에서의 감소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일 FTA의 결과 물가하락 수준이 정태모형의 경우 더 크기 때문이다.

동 FTA의 결과 발생하는 소비지출 변동에 따른 후생수준 변화의 금액환산액을 보면 EU 각국에 미치는 차별적 파급효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독일, 프랑스, 영국 및 폴란드의 후생감소는 2000년 기준으로 각각 1억 6,100만~4억 5천만 달러, 7,900만~3억 7,600만 달러, 9,700만~2억 9,900만 달러, 1천만~3,800만 달러다. 한·미 FTA에 따른 EU 각국의 후생감소 수준은 한·미 + 한·일 FTA의 경우보다 조금 작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일 FTA의 결과 발생하는 EU 각국의 후생감소는 앞의 두 경우보다 상당히 작은 특징을 보인다. 즉 한·일 FTA가 EU 국가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나, 한·미 FTA가 주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일 FTA보다 한·미 FTA 및 한·미 + 한·일 FTA의 경우 자본축적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자의 경우 정태적 효과가 발생하나 동태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후자의 경우 한국의 자본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동태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이 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경쟁력 산업의 비중 증대 및 취약산업의 감소 같은 특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약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서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FTA로 EU 국가의 교역량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경우 EU 각국의 교역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의 결과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교역증대효과가 한국, 미국, 일본 등 FTA 시나리오 국가에 집중되면서 역외국가인 EU의 교역이 감소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자본축적모형의 경우 한·일 FTA의 경우 3.63% 및 4.35%, 한·미 + 한·일 FTA의 경우 6.85% 및 8.24%까지 증가하고 있다.

한·미 +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독일 및 프랑스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0.10% 및 0.11% 감소하고, 영국의 수출입 규모는 모두 0.11% 감소하며, 폴란드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0.09% 및 0.10%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타 EU 15국의 수출입은 각각 0.11% 및 0.12% 감소했으며, 기타 EU 10개국의 수출입 규모 또한 각각 0.10% 및 0.11% 감소하고 있다.

세 가지 FTA의 결과 한국의 무역수지는 정태적으로 많이 개선되지만 동태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함으로써 정태적으로는 무역수지가 개선되나 장기적으로 수출입 규모의 감소 폭이 유사해지면서 무역수지 변동이 작아지는 것이다. 교역수지 변동보다 교역량 규모의 변화가 경제학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FTA가 EU 국가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미 + 한·일 FTA가 EU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미 FTA 파급효과가 컸고, 한·일 FTA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만 보고하기로 한다.

먼저 한·일 FTA의 경우 일본은 기계, 화학, 금속,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자에서 생산이 감소하며, 한국은 섬유, 전자, 자동차, 화학,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기계, 철강금속의 생산이 감소한다. 이를 반영하여 EU 국가의 기타 운송장비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EU 국가별 차별성은 있지만 대부분 섬유 및 화학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계 산업에서 경쟁력이 강한 독일의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계 산업에서 일본이 독일과 경쟁적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일 FTA가 EU에 초래하는 생산변동은 그리 크지 않다.

다음 한·미 FTA의 생산변동 효과를 보면 미국은 기계, 농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섬유, 전자,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의 생산이 감소하며, 한국은 섬유, 자동차, 기타 제조업, 화학,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기타 수송장비, 기계의 생산이 감소한다. 양국에서의 기타 수송장비 생산 감소를 반영하여 EU 국가의 기타 운송장비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산업 생산은 EU 국가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 EU는 국가별 차별성은 있지만 대부분 농산물 및 가공식품, 섬유 및 기타 제조업에서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앞서 한·EU FTA 체결 결과 EU는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기타 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EU의 산업별 생산이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미 + 한·일 FTA의 생산변동 효과를 보면 미국은 농산물, 기계, 기타 수송장비의 생산이 증가하고 섬유, 자동차 및 전자의 생산이 감소한다. 일본은 기계, 철강·금속, 화학, 가공식품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섬유 및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자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섬유, 전자, 자동차, 화학, 가공식품,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기계, 기타 수송장비의 생산이 감소한다. EU 국가는 대체적으로 기타 수송장비 및 운송서비스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섬유, 화학, 기계, 기타 제조업은 물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독일, 영국, 기타 EU 15개국의 경우 전자부문 생산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프랑스, 영국, EU 15개국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큰 폭으로 감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FTA 결과 발생하는 미국 및 일본의 생산변동 폭을 고려할 때 EU의 산업별 생산이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³⁾

이러한 결과는 먼저 한·일 FTA 및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이는 EU의 생산과 교역에서 가공농산물, 섬유·의류, 기계 및 기타 제조업에 타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만약 한·미 FTA에서 한국이 농업부문에서 대폭적인 개방을 허용한다면 이는 한·EU 경제관계,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EU로서는 한·미 FTA가 한국시장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한국과 EU 간 FTA는 양국간 진행되고 있는 공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

103) 앞서 살펴본 효과는 농업부문의 관세를 50% 철폐했을 경우였다. 만약 농업부문의 관세를 100% 철폐했을 경우 그 효과는 약간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한·일 FTA가 EU의 거시경제 지표, 교역관계 및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드는 반면, 한·미 FTA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한 한·미 + 한·일 FTA의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진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산업구조 및 민감 산업으로 미루어볼 때 쉽게 추정이 가능한 결과다. 즉, 일본과 같이 농업부문에 비교열위가 있는 경우 농업부문에서 100% 관세철폐가 EU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미국과의 FTA로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관세가 철폐된다면 이것은 EU에 더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에서 미국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총효과는 EU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 분야에 대한 포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EU와 멕시코, 칠레, 메르코수르와의 제휴협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형태다. 아울러 양국간 FTA는 GATT 24조와 GATS 5조¹⁰⁴⁾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공산품 양허 방식

상품무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범위와 양허계획이다. 공산품에 대한 기존 FTA에서의 관세철폐계획을 보면 EU는 공산품의 경우 양허율 100%에 압도적 다수의 즉시철폐를 포함한 점진적인 관세 철폐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왔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간 통상협안에서 공산품의 경우 관세와 관련해서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없다. 다만 관세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관세율이 공산품의 경우도 5~10%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철폐 계획이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EU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양허계획과 관세철폐 계획은 EU·멕시코 FTA에서 멕시코의 양허계획과 같이 비대칭적 관세율 철폐가 예상된다. 여기서 공산품(HS 25~97)의 경우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자유화 유보품목을 명시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섬유, 목재, 유기·무기 화학품, 일부 기계류, 차량부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보품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

104) 상품(GATT) 및 서비스(GATS)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해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직하다.

한편 EU·멕시코 FTA의 경우 멕시코가 NAFTA의 일원으로서 미국과의 관세 철폐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철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설정된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이 점은 한국이 만약 미국 및 EU와 비슷한 시기에 FTA 협상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최혜국대우는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가적인 FTA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한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양허율 비교

(단위: %)

구 분		전 체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한·칠레	한국	양허율:99.8 즉시철폐:87.2	양허율:100 즉시철폐:99.9	양허율:100 즉시철폐:58.2	양허율:100 즉시철폐:69.5	양허율:98.5 즉시철폐:15.6
	칠레	양허율:99.0 즉시철폐:41.8	양허율:99.8 즉시철폐:30.6	양허율:100 즉시철폐:100	양허율:100 즉시철폐:99.0	양허율:94.2 즉시철폐:92.9
한·싱가포르	한국	양허율:91.6 즉시철폐:59.7	양허율:97.4 즉시철폐:68.8	양허율:82.9 즉시철폐:53.7	양허율:56.2 즉시철폐:13.8	양허율:66.6 즉시철폐:16.0
	싱가포르	양허율: 100, 즉시철폐 :100				
한·EFTA	한국	양허율:99.1 즉시철폐:86.3	양허율:100 즉시철폐:92.3	양허율:100 즉시철폐:45.5	양허율:88.4 즉시철폐:27.1	양허율:84.2 즉시철폐:15.8
	EFTA	양허율:100	양허율:100, 즉시철폐:100			양허율:100 즉시철폐:35~55

자료: 외교통상부.

다. 농산물

농산물의 경우 양자협상의 기본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DDA 협상에서 EU와 우리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EU는 칸쿤 협상 이전에는 DDA 협상에서 일본, 스위스, 한국과 같

은 그룹인 NTC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칸쿤 협상에서 EU는 미국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미국·EU 공동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EU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농업환경에 속해 있으나 관세상한 및 관세할당과 관련하여 EU는 우리보다 낮은 관세상한선과 관세할당의 증량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의 조기 철폐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내보조금의 경우 블루박스를 넘어 직접지급제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하다.

EU의 이러한 입장은 EU가 그동안 유지해온 공동농업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EU는 1962년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면서 농산물 가격지지와 가변부과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경보호조치를 핵심 축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농업보호를 통해 생산된 과잉생산물에 대해서는 해외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결국 농산물 자급체계의 빠른 정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요와 유리된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결국 1980년대 이후 유제품과 곡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1986년의 경우 전체 EU 예산의 64%가 공동농업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될 정도로 과잉생산 문제는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농산물 생산중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Blue Box)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직접지급제도는 과거의 가격지지 정책을 개혁한 것이지만 휴경을 전제조건으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생산량과 보조금 규모가 여전히 연계되어 있는 단점이 있었다. 2003년의 개혁에서는 지급제도를 변경하여 생산량과 보조금 규모를 분리하는 농업소득직접지급제도(Single Farm Income Payment)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은 가격지지에서 블루박스로, 그리고 다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급제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EU는 관세에 의한 보호 수준을 과거에 비해 낮춰 왔으며,

이에 따라 낮은 수준의 관세상한이나 관세할당 증량에 대해 우리보다 유연한 입장에 있으며, 여전히 수출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조 금지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해온 것이다.

EU와의 농산물 협상은 EFTA나 싱가포르보다는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세상한 및 관세할당과 관련된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등 개별품목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해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품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DDA에서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핵심은 한·EU FTA에서 EU의 수출보조금 조기철폐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EFTA FTA에서는 상대방이 수출보조를 할 경우 양허품목에 대해 다시 MFN 실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한 바 있는데,¹⁰⁵⁾ 이를 준용하여 협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의 경우 한·EFTA FTA에서와 같이 자유화 대상 품목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체계로 가야 할 것이다. 한·EFTA FTA의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에서 우리의 양허율은 80%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즉시철폐 비율도 10~20%대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개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양허대상 품목의 경우라도 가공농산물을 중심으로 점진적 철폐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어의 경우 영국 및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양자간 협의회를 설치하여 EU의 농촌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할 수도 있다.

105) 한·EFTA FTA 별도협정문 농업분야 제8조

라.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항 중 하나다. 반덤핑 피소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으로서는 양자간 FTA를 통해 반덤핑 조사 개시나 제소 이전에 당사국끼리 서면통 보 및 사전협의를 하는 공식절차를 만들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도 ‘낮은 관 세적용’ 원칙¹⁰⁶⁾이나 제로잉 금지를 준수하기로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덤핑 발동가능성의 유지 필요성을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유지 필요성 을 인정한 경우 격년 단위로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 하지만 EU측은 반 덤핑을 무역구제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해 오고 있는 데, 이러한 조항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WTO 수준의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U·멕시코 FTA의 경우도 WTO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우리측 무역위원회와 EU측 무역구제기관 간 협의회가 2003년 발족되어 매년 개최되어 왔는데 그간 이 협의회에서 양측은 무역구제제도, 시장경제지위, EU 확대에 인한 영향, 중국에 대 한 무역구제조치 등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협의회 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EU·중국간 섬유교역에 대한 합 의, DDA 규범협상 및 시장경제지위 등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관심 의제를 적 극 발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WTO 협 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개시 이전에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양자간 FTA 협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일시적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106)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에 충분한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이다.

의 장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발효일 직전 적용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다시 인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의 경우 EU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적용, 정부조달, 무역구제(trade defense) 등 통상정책 수단과 수입검사 및 수출환급, 그리고 무역통계를 위해 필요하다. 한편 특혜원산지규정은 GSP 등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데, EU는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EU 원산지 상품을 구별하는 데 주로 의미가 있다.¹⁰⁷⁾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이다.¹⁰⁸⁾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고 있어 개별회원국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비특혜원산지규정의 범위가 넓어서 섬유·의복, 신발, 전자제품, 차량, 고기와 와인을 포함한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산지규정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세번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s: CTH) 기준,¹⁰⁹⁾ 부가가치(VA)기준,¹¹⁰⁾ 그리고 특정가공공정(SP) 기준이 있는데,¹¹¹⁾ 통

107)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특혜원산지규정이 개도국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08) 메르코수르도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공동통상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109) 최종생산과정을 거친 완제품의 세번이 그 완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세번과 달라졌을 때 세번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110) 완제품의 부가가치 중 일정비율 이상이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111)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 가지 기준이 완전히

상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내 부가가치는 40~75% 이상이 되어야 역내물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은 다른 두 기준에 비해 비원산지의 가공비율 산정에서 관대한 성향을 보인다. EU는 원산지 비율의 도출이 쉽다는 이유로 보통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산정에서 공장도가격(ex-work)을 기준가격으로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내부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섬유제품의 경우 원산지 이외에서의 부가가치가 공장도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로 규정된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경우도 60% 이상의 원산지 부가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결정가격으로 공장도가격을 일반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 원산지결정가격을 FOB 가격으로 삼은 것과 대비된다. 공장도가격을 원산지결정가격으로 삼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아 원산지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일하게 공장도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EFTA와 EU가 다른 점은 최대 허용조항(de minimis rule)¹¹²⁾이 EFTA의 경우 10%이지만 EU는 5%만 허용하고 있어 EFTA보다 EU가 더 엄격한 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U의 특혜원산지규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수출국의 물품에서 특혜대상 국가의 성분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누적(cumulation) 조항이다. EU의 누적체계에는 EU·멕시코 FTA와 같은 양자간 누적체계도 있고, 범유럽누적체계(pan-European system of cumulation)와 같이 특혜협정에 있는 국가의 제품을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EU는 일반적으로 입증하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가공 비중을 요구하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공산품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과 단순한 부가가치기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원산지 성분의 허용비율을 말하는데, 미소기준이라고도 한다. 보통 10%가 일반적이다.

수출국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EE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생산된 어떤 물품도 동일한 원산지로 보는 완전누적체계도 있다. EU·멕시코 FTA가 양자간 누적체계를 적용한 것은 NAFTA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누적을 허용할 수 없다는 EU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동북아에서 구체적인 RTA 실현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EU는 양자간 누적체계를 요구할 수 있다.

3장의 분석에 따르면 섬유·의복 분야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로 추정된다. 따라서 EU측은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품목에 들어가면 섬유·의복 분야의 경우 원산지 규정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섬유·의복 분야는 원사-직물-의복으로 가공공정이 높아짐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면 비회원국의 원재료가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와서 FTA 상대국의 산업기반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의복 분야의 원산지 규정은 많은 경우 특정가공공정(SP) 기준을 따르는데, EU·멕시코 FTA의 경우도 이러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는 EU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과 같이 섬유·의복 분야가 민감산업인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EU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용조항 또는 미소기준에 대한 분명하고도 완화된 기준을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인정 여부다. 일반적인 원칙은 영업원칙과 관련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입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합작사업에 의한 상품이 한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의 누적 조항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EU와의 협상에서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정받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한 역외가공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역외가공이라는 일종의 예외조항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¹¹³⁾

한편 EU는 관세환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¹¹⁴⁾ 이는 통상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우리의 관세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관세환급 금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측의 관세환급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품가격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무역업자들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원산지 증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경우 원산지 증명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행정비용 간소화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는 양국간 통상현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양국의 관심사항 중 하나다. 일단은 WTO상의 TBT 협정과 SPS 협정을 따르기로 하면서 향후 일정 기한내,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하여 SPS는 한국과 EU 간 통상현안으로 자주 제기되어 왔던 분야다. 기본적으로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EU로서는 SPS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113)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개성공단 물품을 포함하여 경제특구의 물품 4,625개에 대하여 역외가공을 허용받은 반면, 한·EFTA FTA의 경우 267개 품목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허용받았다.

114) EU는 지중해권 북아프리카 국가들 또는 남아공과의 협력협정 또는 제후협정에서 관세환급에 대한 명문화된 허용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캐나다·칠레 FTA, 캐나다·이스라엘 FTA, 미국·이스라엘 FTA, 멕시코·칠레 FTA 등에서는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위생기준의 통일과 조화, 검사기관 상호인증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EU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신중하게 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다른 현안사안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보이스(invoice) 신고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 통관절차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 통관체계가 나아갈 방향과 EU의 통관체계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미리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 서비스 무역

EU와의 FTA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식은 이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EU의 서비스분야 개방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기존의 EU 회원국들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EU 확대 이후 신규회원국들의 개방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FTA 협상과정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¹¹⁵⁾ 이와 같이 EU와의 FTA에서 서비스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 되면서 경쟁 촉진에 따른 이익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와의 FTA에서 개방 또는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유통서비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방 수준이

115) WTO(1999) 양허표는 기존의 15개국 회원국의 양허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EU 회원국들은 상당수의 서비스분야에서 국별로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Hoekman(1995)의 추정방법으로 양허수준을 측정할 경우 실제 양허수준보다 과소추계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서비스,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U는 금융, 유통(중고차 및 가스유통), 통신, 기타(빌딩청소) 분야에 있어서 개방 또는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상업적 주재(mode 3)에 해당되며,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계적·전략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면 국내경쟁 촉진 및 투자유치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서비스(기본통신서비스 포함)와 건설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기존 EU 회원국 간에 개방수준 차이가 크게 없으며 오히려 EU 신규회원국의 개방수준이 낮아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보통 금융서비스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은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및 정부조달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일단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양측은 GATS를 기본으로 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추가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내부 양허표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¹¹⁶⁾

서비스 개방은 기본적으로 제도변경과 관련되므로 실질적으로 최혜국대우는 인정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양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시청각서비스나 도로운송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항공운송서비스 등 EU 국가들이 주로 다른 유럽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조치의 경우 MFN 면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GATS 5조 규정에 따라 FTA에서 MFN 원칙을 적용받지 않

116) 한·EFTA FTA의 경우 DDA 2차 양허안에 추가하여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전기용품), 빌딩청소업(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경영관련 컨설팅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는 경우 우리측이 다른 FTA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공동제작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청각서비스의 EU 진출과 관련하여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각서비스의 국적문제다. 시청각서비스 공동제작에서 자금 및 인력 지원의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청각서비스의 국적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청각서비스 진출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과세문제다. EU 역내시장에서 부가가치세와 물품세의 경우 비록 공동체 차원에서 최저세율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EU 회원국간에 단일한 조세체계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¹¹⁷⁾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의 경우 국가에 따라 25%(덴마크, 스웨덴)에서 15%(룩셈부르크)로 다양하며, 덴마크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단계인데, 판매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체제(origin-based system)로 통일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수렴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및 방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소비되는 장소에서 과세되는 원칙이 도입되어 200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면 방송서비스의 원활한 교류와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면 다시 환급되어야 한다. 가스와 전기사업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2005년 1월부터 과세되고 있다.

117) EU는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이 15%보다 낮지 않고, 할인세율이 5%보다 낮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할인세율은 보통 식당, 하우징, 전기·가스 공급 등에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우는 책, 의약품, 식료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할인 및 면세 적용대상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는 GATS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서비스 무역에서 시장접근이란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Mode 3 및 4와 관련되어 중요성이 더해진다. 서비스 양허표 작성은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방식(Positive 또는 GATS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GATS 양허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ode 4의 양허 수준은 국내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입장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규제,¹¹⁸⁾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영업 관행,¹¹⁹⁾ 국제수지 보호,¹²⁰⁾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 투명성¹²¹⁾ 등은 GATS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서비스에서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의 경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양국간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은행임원 국적제한을 위한 입법추진이 미국 등 해외 사례의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은행임원 국적제한 및 거주요건의 GATS 16

118) 국내시장에서의 각종 규제가 무역을 저해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서비스시장의 경우 생산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GATS 6조는 이러한 경우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회계기준이 외부 회계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119) 어떠한 국내적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이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무역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GATS 9조는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우호적으로 조사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20) 일반적으로 어느 서비스 부문의 개방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제수지상의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국제수지 보호(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다른 제한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GATS 제12조 1항 및 3항).

121) 회원국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위한 문의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국내법령이 바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WTO에 보고해야 한다(GATS 제3조 1·2항 및 제3조의 2).

조(시장접근제한금지)¹²²⁾와 GATS 17조(내외국인차별금지)¹²³⁾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EU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보조항을 만들면서 금융의 국경간 거래나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일부 개방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경쟁 및 정부조달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정책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국제적 카르텔 형성,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분야다. EU는 특히 WTO 다자간 협상에서 경쟁규범을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¹²⁴⁾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우선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집행활동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보 시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쟁당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경쟁당국간 협력은 인적교류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협의를 필요하며, 양국은 국내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영역 내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기업활동’ 축소에 노력하고 상호협력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경쟁당국은 협의를 개시하고, 요청받은 국가는 그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분

122) “WTO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양허표상 합의된 조건하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123) “WTO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 나라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124) EU의 입장은 그동안 WTO 무역과 경쟁작업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양자간 경쟁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EU 양자협정(1991, 1998)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명히 하는 차원에서 해당 경쟁제한행위가 일방국 기업이 상대국 영토에서 수출, 투자,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양국 국내시장 및 수입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관할권 조율로,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문의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와 다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한·EU FTA 경쟁분야에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양국이 모두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양국이 시청각서비스 공동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에서 공동제작물 상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를 기본으로 정보공개 및 접근성 확보, 투명성 증대가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조달에 관한 WTO협정(GPA)’에 의하여 규율하면 될 것이다.

자. 지식재산권

EU의 주요관심사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TRIPS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양국이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EU가 요구할 수 있다. TRIPS 협정이 지재권, 그중에서도 특히 EU의 관심분야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보통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EU내에서 해당 지재권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 같은 지재권의 경우 보호대상의 정의와 보호범위가 애매하여 EU 경제내에서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분야의 인적교류, 교육훈련 증진 등 이 분야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TRIPS 규정상 특허예외를 추가할 수 있다.¹²⁵⁾ 또한 미공개 정보 보호와 산업디자인 보호를 자국 국내법에 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U는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입법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EU가 확보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신청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측에서는 FTA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 보호 확대가 EU의 기본입장이라면 이 분야에서의 개선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재권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할 분야도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과 TRIPS와의 조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서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TRIPS 이사회에 제출한 EC 제안서 2002에 따르면 EU는 미국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 의견에 동의하나 보다 중간자적 입장에서, TRIPS와 CBD 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양 협정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¹²⁶⁾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공동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25) 예를 들어 한·EFTA FTA에서와 같이 ①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진 그러한 방법 ② 식물 또는 동물 변동,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조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

126) TRIPS 이사회 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도적인

차. 투자

EU는 통상적으로 양자 무역특혜협정을 맺을 때 투자협정을 같이 묶어서 체결하지 않는다. 이는 양자간투자협정을 FTA의 한 부분으로 고려하는 미국과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한·EU FTA에서 고려된다면 그 주된 고려사항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투자자유화 대상의 명확화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내국민대우) 또는 제3국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단 제3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내국민 대우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자본이동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안전장치로서 투자유치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국민대우 유보조항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속서 등에 유보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공익 및 공공질서 유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현황 파악, 금융안정,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당사국의 투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TRIPS 이사회 내에서의 논의는 별로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CBD,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ganisation: WIPO) 등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구속적인 협정 체결,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보호 관련조항에 대한 검토처럼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미경외(2002) 참고.

자를 유보할 수 있다.¹²⁷⁾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투자자와 당사국 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금융서비스 부분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27) 한·EFTA FTA의 경우 농림축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경우 벼·보리 재배업과 육우사육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 사용사업 및 제3장 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항공산업 분야, 방위산업과 발전·송전 및 배전 판매사업,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거래,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사업, 수산업, 가스 산업, 원자력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제5장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

본 연구는 한·EU의 FTA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관계를 조망하고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주요 예상현안별로 FTA 협상시 제기될 이슈와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김홍중·이종화(2004)의 예비적 고찰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조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양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교역과 투자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통상현안을 갖고 있으며,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완적 관계가 강하지만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생산 및 수출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EU보다 보호적이어서 관세철폐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간 FTA에 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동 FTA가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은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상정한 경우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표 5-1]과 같이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7조 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 원(3.08%) 정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적으로 35만 원(2.16%), 장기적으로는 48만 원(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도 장기으로는 더 커진다. 이렇게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 FTA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단기에서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

자가 증가함으로써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 달러(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 달러(4.47%)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 달러(3.81%), 장기에는 81.9억 달러(4.92%)가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단기에 1.3억 달러(0.16%), 장기에는 28.5억 달러(3.54%)의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요약)

구 분	FTA 체결 전	FTA 체결후 변동액
GDP	778조 4천억 원	단기: 15.7조 원 (2.02%) 장기: 24.0조 원(3.08%)
1인당 국민소득	1,621만 원	단기: 35만 원(2.16%) 장기: 48만 원(2.96%)
후생		단기: 1.34% 장기: 2.45%
대세계 무역수지	806억 달러	단기: 1.3억 달러(0.16%) 장기: 28.5억 달러(3.54%)
수출	2,470억 달러	단기: 64.7억 달러(2.62%) 장기: 110.4억 달러(4.47%)
수입	1,664억 달러	단기: 63.4억 달러(3.81%) 장기: 81.9억 달러(4.92%)
국내 취업자 수 (전 산업)	1,668만 명	단기: 301,200명(1.81%) 장기: 597,060명(3.58%)

주: 단기는 정태모형을 의미하며, 장기는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한 경우다. FTA 체결 전 수치는 2004년도 실적치를 인용하였다.

한·EU FTA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약 30만 명(1.81%), 장기적으로 59만 7천 명(3.58%)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는 취업자 수를 대분류 산업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EU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1차산업에서 2만 8천여 명, 제조업에서 4만 5천여 명의 취업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서비스업은 37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주로 가공식품, 기계류, 철강·금속 등이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부문은 일반차량, 통신·방송, 건설, 전력·가스·수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는데, 1차산업의 경우도 상당수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어 거의 FTA 체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2차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FTA 체결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약 52만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모든 총효과로서 단기와 장기에 취업자 수는 각각 30여만 명과 약 60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한·EU FTA 체결시 산업별 국내취업자 수 변화

	합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단기	301,200명	-28,100명	-45,500명	374,800명
장기	597,060명	-140명	78,400명	518,800명

이와 같이 한·EU FTA는 한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비중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진국 형태로 탈바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표 3-4]에 따르면 한·EU FTA의 GDP 증대효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 0.1%의 GDP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국가의 GDP가 15억~20억 달러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국가들은 또한 수출과 수입 증대효과도 아울러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인 김홍중·김균태·강준구(2005)보다 FTA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보면 선행연구가 장기적으로 14.8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24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증대효과도 22만~29만 원에서 35만~4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증가 효과의 경우 수출과 수입 모두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에서 증가하였는데, 수출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되는 무역수지 흑자 폭도 본 연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무역수지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선행연구에서는 11만 8천 명에 불과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30만~60만 명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GTAP 데이터베이스가 1997년을 기준으로 한 데 반해 본 연구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 등 더 최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제규모의 증가효과가 반영되었으며, 과거의 연구가 EU를 15개국만으로 파악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EU 25개국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차별화된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회원국의 경우 한국과의 FTA에서 기존회원국만큼 많은 후생 증가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수지 역조가 더 심각해지고 생산증대 효과도 기존회원국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자간 FTA는 반드시 교역상의 이득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신규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회원국에서도 한·EU FTA로 인한 경제적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농산물 분야에서 신규회원국의 생산 및 수출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FTA 협상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 FTA는 양자간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윈-윈 게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만약 이러한 판단에 따라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실제 협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를 미리 짚어보고 있다. 이를 위해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예상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다.

2장의 한·EU 통상현안 분석에 따르면 양자간에는 그동안 적지 않은 통상현안을 안고 왔다.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기존의 양자간 현안문제도 당연히 포괄적 FTA의 시각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개별적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상대상인 EU의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FTA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EU가 선진국이면서도 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연합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의 여러 가지 성격 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를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성격, EU의 FTA 정책,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EU 시장의 특성, 한국의 FTA 추진이 한·EU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양자간 통상현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안별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의 공동통상정책은 FTA 협상시 EU 집행위가 회원국을 대신해서 한국과 협상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공동정책 중 하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EU의 공동통상정책이 관할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집행

위와 회원국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역내시장 통합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통상정책의 불명확성은 EU가 대외교섭에 임하는 데 있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04년 가입한 신규회원국에서의 EU 규범 및 공동통상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U의 FTA 정책은 개도국 및 특별한 역사적·지리적 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을 우선시하였으나, 최근 들어 비유럽권 국가들과의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EU가 멕시코 및 칠레 등과 맺은 FTA이다. 동 협정은 정치 대화, 통상 및 경제 관계 그리고 협력의 세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포괄적 FTA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상품자유화 일정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에서 EU의 보호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양허 폭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연성이 발견된다. 특이한 점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별도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한·EU FTA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EU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한국과 EU 간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산업구조가 EU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미 FTA, 한·일 FTA 체결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양자간 FTA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 FTA, 한·일 FTA, 그리고 한·미 FTA와 한·일 FTA 동시체결이 한국시장에서 EU에게 상당한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며, 생산 및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미 FTA는 EU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U가 한국시장에 대해, 또 통합되는 동북아시아에서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한국과의 FTA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 방식이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매우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시 할당액 이상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조치가 강한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제한 이전에 수출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다.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 인정 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세번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 인정 여부는 남북 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분야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EU FTA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본 연구에서 시도한 모든 분

석결과는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한·EU FTA를 계기로 이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 효과를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가 촉진되어 자본스톡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세원. 2004. 『EU경제학-유럽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 김홍중. 2003. 『제2차 한·EU 공동위원회의 주요 내용과 성과』. 『KIEP 세계경제』, 9월.
- _____. 2005a. 『한국의 對유럽 FTA, 주요 현안과 평가』. 한국의 FTA정책 워크숍, 2005. 3.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05b.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11월.
- 김홍중·김균태·강준구. 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KIEP 용역보고서.
- 김홍중·이종화. 2004. 『한·EU FTA』. 강문성 외.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와 정책과제』. 정책연구 04-11. KIEP.
- 김홍중·이철원·박영곤·박경석. 2003.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KIEP 지역연구 03-02.
- 윤미경·이성미. 2002. 『TRIPS 지리적 표시특별보호대상 확대 논의: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KIEP 용역보고서.
- 이종화·박순찬. 2001.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책연구 01-0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종원. 1994. 『계량경제학』. 박영사.
- 박순찬. 2004. 『한·EU FTA 타당성 검토』. KIEP 용역보고서.
- 박순찬·강문성. 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0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자원부 [Online]. Available: <http://www.mocie.go.kr>.
- 송유철·박지연·임송수·이재옥·서진교·김상현.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대응방향』. 정책연구 03-1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3. 8. 『우리나라 FTA 추진 로드맵』. 내부자료.
- _____. 2004. 『외국의 통상환경(2004년)』.
- _____. 2005.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 참고자료.
- _____. 2005. 『주한EU상공회의소 2005년도 통상보고서 검토』.
- 주벨기에대사관겸주연합대표부. 2005. 『EU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 애드컴서울.
- KOTIS [Online]. Available: <http://kita.net>.
- 한국생산성본부. 2003. 『생산성 국제비교』.

한국무역협회. 2005. 『EU 경제동향 및 최근 한·EU 통상현안』. 국제사업본부.

한국수출입은행. 2005.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_____. [Online]. Available: <http://koreaexim.go.kr>.

한국은행. 2003. 『2000년 산업연관표』.

_____. 2004.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외국문자료]

Baldwin, R. E. 1989. "The growth effect of 1992." *Economic Policy*, 9, 247~281.

_____. 1992. "Measurable Dynamic Gains from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162~174.

Baldwin, R. E., J. Francois and R. Portes. 1997. "The Costs and Benefits of eastern enlargement: The Impacts on the EU and central Europe." *Economic Policy*, 24, 126~176.

Baldwin, R. E. and E. Seghezza. 1996. "Testing for 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 CEPR Working Paper No. 1331.

Breuss, F. 2001. "Macroeconomic effects of EU enlargement for old and new members." WIFO Working Paper No. 143. Vienna: WIFO.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Decision No 2/2000 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of 23 March 200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mexico/doc/a4_dec_02-2000_en.pdf.

EUCCK. 2004.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2004*. Seoul, Korea.

European Commission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

_____. 2002.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Chile, of the other part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bilateral/countries/chile/euchlagr_en.htm.

Eurostat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eurostat>.

Griliches, Zvi. 1992. *Output Measurement in the Service Sector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rdin, A. and L. Holmes. 1997. *Services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ff Research Paper. Industry Commission.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s.

- Hertel, T. W. 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Hertel, T. W., K. Anderson, J. Francois and W. Martin. 2002.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al Liberalization in the Millennium Round." GTAP Working Paper No. 08.
- Hoekman, B. 1995. "Assess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In Martin, W. and L.A. Winters eds.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307.
- Hoekman, B. and J. F. Francois. 1999. "Market Access in the Service Sectors." Manuscript. Tinbergen Institute.
- IMF. 2005.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ROM.(November)
- Kalirajan, K., G. McGuire, D. Nguyen-Hong and M. Shuele. 2001. "Restrictiveness of International Trade in Banking Services." In C. Findlay and T. Warren, eds. *Impediments to Trade in Services: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Kim, H. and C. Lee. 2004. "Korea-EU Trade Relations: Over-traded or Under-traded?"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2), 137~148.
- Krueger, A. O. 1978.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Lamy, P. 2002.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The EC's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of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rade Policy." *The World Economy*, 25(10), 1399~1413.
- Lee, J. W. 1995. "Capital Goods Import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8, 91~110.
- Lejour, A. M., R. A. de Moolj and R. Nahuis. 2001. "EU enlargement: Economic implications for countries and industries." CPU Document No. 011. Hague.
- Leontief, W. 1986. *Input-Output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e, R. and D. Renelt. 1992. "A Sensitivity Analysis of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2, 942~963.
- OECD.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Multilateral

- Trading System - Rules of Origin.” TD/TC/WP(2002)33/FINAL, 19-Jul-2002, Trade Committee. Paris: OECD.
- Pesaran, M. H. and Y. Shin. 1997.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ing Approach to Cointegration Analysis.” In S. Strom, A. Holly, and P. Diamond ed. *Centennial Volume of Ragner Fris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chs, J.D. and A. Warner.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1~118.
- Senhadji, A. 1998. “Time Series Estimation of Structural Import Demand Equation: A Cross-Country Analysis.” *IMF Staff Papers*, Vol. 45, No. 2, 236-268. (June)
- Senhadji, A. and C. Montenegro. 1998. “Time Series Analysis of Export Demand Equations: A Cross-Country Analysis.” IMF Working Paper 98/149.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mith, A. and A.J. Venables. 1988.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in the European Community: Some industry simul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32, 1501~1525.
- Trewin, R. and T. Warren. 2001. “A Price-Impact Measure of Impediments to Trade in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Findlay, C. and T. Warren eds. *Impediments to Trade in Services: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World Bank. 1987. *World Development Report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New York.
- _____.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 WTO. 1999. Services Database, CD-ROM.[Online]. Available: <http://www.wto.org>.
- _____. 2004a. *Trade Policy Review-European Communities, reported by the Secretariat*. WT/TPR/S/136. (June)
- _____. 2004b. *Trade Policy Review-Republic of Korea, reported by the Secretariat*. WT/TPR/S/137. (August)
- _____. 2005. PC Integrated DB Tariffs & Imports. CD-ROM. (June)

부 록



부표 1.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의 EU 거시경제 파급효과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백만 달러)

	한·일 FTA		한·미 FTA		한·미 + 한·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GDP 증가 (금액기준, %)						
GER	-0.05	-0.05	-0.04	-0.05	-0.08	-0.09
FRA	-0.04	-0.04	-0.04	-0.06	-0.08	-0.09
UK	-0.05	-0.04	-0.04	-0.05	-0.08	-0.09
POL	-0.04	-0.03	-0.04	-0.06	-0.08	-0.09
기타 EU15	-0.04	-0.04	-0.04	-0.06	-0.08	-0.10
기타 EU10	-0.04	-0.04	-0.04	-0.07	-0.08	-0.10
GDP 증가 (수량기준, %)						
GER	0.00	-0.01	0.00	-0.02	0.00	-0.03
FRA	0.00	-0.01	0.00	-0.03	0.00	-0.03
UK	0.00	0.00	0.00	-0.02	0.00	-0.02
POL	0.00	0.00	0.00	-0.03	0.00	-0.03
기타 EU15	0.00	-0.01	0.00	-0.03	0.00	-0.03
기타 EU10	0.00	-0.01	0.00	-0.03	0.00	-0.03
후생변동 (동등변화, 백만 달러)						
GER	-92.61	-140.85	-80.29	-351.54	-160.76	-450.31
FRA	-35.67	-73.63	-49.46	-343.08	-79.45	-376.20
UK	-51.72	-83.52	-52.57	-246.05	-96.85	-298.76
POL	-2.97	-2.80	-7.17	-39.33	-9.62	-38.01
기타 EU15	-92.49	-179.36	-159.13	-834.05	-237.59	-926.13
기타 EU10	-6.37	-10.88	-12.43	-50.15	-17.96	-56.28
자본축적 (%)						
GER	0.00	-0.01	0.00	-0.05	0.00	-0.06
FRA	0.00	-0.01	0.00	-0.06	0.00	-0.07
UK	0.00	-0.01	0.00	-0.06	0.00	-0.07
POL	0.00	-0.01	0.00	-0.06	0.00	-0.06
기타 EU15	0.00	-0.01	0.00	-0.07	0.00	-0.07
기타 EU10	0.00	-0.01	0.00	-0.07	0.00	-0.07

부표 2.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의 EU 거시경제 파급효과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백만 달러)

	한·일 FTA		한·미 FTA		한·미 + 한·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GDP 증가 (금액기준, %)						
GER	-0.05	-0.05	-0.06	-0.09	-0.10	-0.13
FRA	-0.04	-0.04	-0.06	-0.11	-0.10	-0.15
UK	-0.05	-0.04	-0.06	-0.09	-0.10	-0.13
POL	-0.04	-0.03	-0.07	-0.12	-0.10	-0.15
기타 EU15	-0.04	-0.04	-0.06	-0.12	-0.10	-0.16
기타 EU10	-0.04	-0.04	-0.06	-0.13	-0.10	-0.16
GDP 증가 (수량기준, %)						
GER	0.00	-0.01	0.00	-0.05	0.00	-0.05
FRA	0.00	-0.01	0.00	-0.07	0.00	-0.08
UK	0.00	0.01	0.00	-0.04	0.00	-0.05
POL	0.00	0.00	0.00	-0.07	0.00	-0.07
기타 EU15	0.00	-0.01	0.00	-0.07	0.00	-0.07
기타 EU10	0.00	-0.01	0.00	-0.08	0.00	-0.08
후생변동 (동등변화, 백만 달러)						
GER	-95.31	-147.62	-125.56	-730.50	-207.56	-844.71
FRA	-37.90	-87.08	-100.87	-799.36	-133.81	-858.34
UK	-55.21	-95.12	-70.77	-509.87	-119.65	-582.12
POL	-3.35	-5.21	-14.10	-96.81	-16.89	-98.68
기타 EU15	-102.30	-220.78	-277.51	-1862.71	-367.87	-2022.63
기타 EU10	-7.34	-14.10	-23.00	-116.26	-29.04	-126.02
자본축적 (%)						
GER	0.00	-0.01	0.00	-0.11	0.00	-0.12
FRA	0.00	-0.01	0.00	-0.15	0.00	-0.16
UK	0.00	-0.02	0.00	-0.13	0.00	-0.14
POL	0.00	-0.01	0.00	-0.16	0.00	-0.17
기타 EU15	0.00	-0.02	0.00	-0.16	0.00	-0.17
기타 EU10	0.00	-0.02	0.00	-0.16	0.00	-0.17

부표 3.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교역변동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백만 달러)

	한·일 FTA		한·미 FTA		한·미 + 한·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수출액 증가(%)						
GER	-0.03	-0.06	-0.02	-0.05	-0.05	-0.10
FRA	-0.03	-0.05	-0.01	-0.05	-0.04	-0.10
UK	-0.03	-0.05	-0.02	-0.06	-0.04	-0.11
POL	-0.02	-0.04	-0.01	-0.06	-0.03	-0.09
기타 EU15	-0.03	-0.05	-0.02	-0.06	-0.05	-0.11
기타 EU10	-0.03	-0.04	-0.02	-0.07	-0.05	-0.10
수입액 증가(%)						
GER	-0.06	-0.06	-0.05	-0.06	-0.11	-0.11
FRA	-0.05	-0.05	-0.04	-0.07	-0.09	-0.11
UK	-0.06	-0.05	-0.06	-0.07	-0.11	-0.11
POL	-0.05	-0.04	-0.05	-0.07	-0.09	-0.10
기타 EU15	-0.05	-0.05	-0.05	-0.07	-0.10	-0.12
기타 EU10	-0.04	-0.04	-0.04	-0.07	-0.08	-0.11
무역수지 변동(백만 달러)						
GER	157.99	-24.45	189.86	12.40	329.52	-12.92
FRA	88.40	1.32	106.03	35.78	182.68	32.82
UK	130.69	25.15	157.87	59.44	270.85	77.41
POL	16.05	3.87	20.98	11.51	34.87	14.07
기타 EU15	255.34	10.34	334.41	122.07	557.00	118.38
기타 EU10	18.25	3.56	22.30	13.06	38.30	15.10

부표 4.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교역변동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백만 달러)

	한·일 FTA		한·미 FTA		한·미 + 한·일 FTA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수출액 증가(%)						
GER	-0.03	-0.06	0.00	-0.08	-0.03	-0.13
FRA	-0.03	-0.05	0.00	-0.10	-0.02	-0.14
UK	-0.03	-0.06	-0.01	-0.10	-0.03	-0.15
POL	-0.02	-0.04	0.01	-0.10	-0.01	-0.13
기타 EU15	-0.03	-0.05	-0.02	-0.11	-0.05	-0.16
기타 EU10	-0.03	-0.05	-0.02	-0.12	-0.05	-0.16
수입액 증가(%)						
GER	-0.07	-0.06	-0.07	-0.10	-0.13	-0.15
FRA	-0.05	-0.05	-0.07	-0.13	-0.12	-0.17
UK	-0.06	-0.06	-0.08	-0.12	-0.14	-0.17
POL	-0.05	-0.04	-0.07	-0.13	-0.12	-0.16
기타 EU15	-0.05	-0.05	-0.08	-0.14	-0.12	-0.18
기타 EU10	-0.04	-0.05	-0.08	-0.14	-0.10	-0.18
무역수지 변동(백만 달러)						
GER	167.10	-23.65	415.72	50.78	564.54	27.33
FRA	93.91	3.15	238.85	91.08	322.29	91.29
UK	138.20	27.31	305.66	124.72	427.13	146.37
POL	17.31	4.48	45.55	26.58	60.59	29.93
기타 EU15	274.48	16.81	718.63	304.14	963.10	311.04
기타 EU10	19.72	4.35	47.89	31.67	65.19	34.73

부표 5.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생산변동
(농업 5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GER	FRA	UK	POL	기타 EU15	기타 EU10
한·일 FTA						
농수산물	-0.01	-0.02	-0.02	-0.01	-0.02	-0.02
가공식품	-0.01	-0.03	-0.04	-0.01	-0.03	-0.03
채취(석탄, 석유, 광물)	0.01	0.01	0.00	-0.01	0.01	0.00
섬유·의류	-0.03	-0.08	-0.05	-0.04	-0.10	-0.06
석유화학	-0.05	-0.06	-0.05	-0.02	-0.06	-0.04
철강·금속	-0.01	-0.01	-0.05	-0.02	-0.02	-0.03
자동차	-0.02	0.01	-0.01	0.00	-0.01	-0.01
기타 운송장비	0.09	0.10	0.06	0.05	0.07	0.06
전자제품	0.04	0.01	0.02	-0.02	0.00	-0.02
기계	-0.04	-0.02	-0.02	0.00	-0.03	-0.01
기타 제조업	-0.01	-0.02	-0.01	-0.02	-0.03	-0.03
건설서비스	0.00	-0.01	-0.01	0.00	0.00	0.00
유통·사업서비스	0.00	0.00	0.01	0.00	0.01	0.00
운송·보관서비스	0.05	0.04	0.03	0.04	0.06	0.06
금융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서비스	-0.01	0.00	0.00	0.00	0.00	0.00
한·미 FTA						
농수산물	-0.05	-0.07	-0.09	-0.03	-0.06	-0.05
가공식품	-0.05	-0.08	-0.11	-0.04	-0.08	-0.08
채취	0.03	0.05	0.02	0.01	0.04	0.02
섬유·의류	-0.19	-0.22	-0.14	-0.14	-0.25	-0.22
석유화학	-0.03	-0.04	-0.04	-0.04	-0.04	-0.05
철강·금속	-0.02	-0.03	-0.03	-0.03	-0.03	-0.04

부표 5. 계속

	GER	FRA	UK	POL	기타 EU15	기타 EU10
자동차	-0.03	-0.02	-0.03	-0.03	-0.02	-0.03
기타 운송장비	0.18	0.18	0.16	0.15	0.19	0.21
전자제품	0.04	0.01	0.02	-0.03	0.02	0.00
기계	-0.02	-0.03	-0.02	-0.03	-0.03	-0.03
기타 제조업	-0.04	-0.05	-0.03	-0.05	-0.06	-0.06
건설서비스	-0.03	-0.04	-0.03	-0.04	-0.05	-0.04
유통·사업서비스	-0.03	-0.03	-0.01	-0.03	-0.02	-0.02
운송·보관서비스	0.03	0.02	0.01	0.03	0.04	0.04
금융서비스	-0.02	-0.03	-0.02	-0.03	-0.03	-0.03
기타서비스	-0.02	-0.03	-0.02	-0.02	-0.02	-0.02
한·미·일 FTA						
농수산물	-0.05	-0.08	-0.10	-0.04	-0.08	-0.06
가공식품	-0.06	-0.11	-0.13	-0.04	-0.11	-0.11
채취	0.04	0.05	0.02	0.00	0.04	0.02
섬유·의류	-0.22	-0.29	-0.19	-0.18	-0.35	-0.28
석유화학	-0.08	-0.10	-0.08	-0.05	-0.10	-0.08
철강·금속	-0.03	-0.03	-0.08	-0.04	-0.05	-0.06
자동차	-0.05	-0.01	-0.05	-0.03	-0.03	-0.04
기타 운송장비	0.26	0.28	0.21	0.20	0.26	0.27
전자제품	0.08	0.02	0.05	-0.04	0.03	-0.01
기계	-0.05	-0.05	-0.03	-0.03	-0.05	-0.03
기타 제조업	-0.05	-0.07	-0.04	-0.07	-0.08	-0.08
건설서비스	-0.03	-0.05	-0.03	-0.03	-0.05	-0.04
유통·사업서비스	-0.02	-0.02	0.00	-0.02	-0.01	-0.02
운송·보관서비스	0.08	0.06	0.03	0.07	0.10	0.10
금융서비스	-0.01	-0.03	-0.01	-0.03	-0.02	-0.03
기타 서비스	-0.02	-0.03	-0.02	-0.02	-0.02	-0.02

부표 6. 한·일, 한·미, 한·미 + 한·일 FTA에 따른 EU의 생산변동
(농업 100% 관세철폐의 경우)

(단위: %)

	GER	FRA	UK	POL	기타 EU15	기타 EU10
한·일 FTA						
농수산물	-0.01	-0.02	-0.02	-0.01	-0.02	-0.02
가공식품	-0.01	-0.04	-0.05	-0.01	-0.04	-0.04
채취(석탄, 석유, 광물)	0.01	0.00	0.00	-0.01	0.01	-0.01
섬유·의류	-0.04	-0.09	-0.05	-0.05	-0.11	-0.07
석유화학	-0.05	-0.06	-0.05	-0.02	-0.06	-0.04
철강·금속	-0.01	-0.01	-0.05	-0.02	-0.02	-0.03
자동차	-0.02	0.01	-0.01	0.00	-0.01	-0.01
기타 운송장비	0.09	0.11	0.06	0.05	0.08	0.06
전자제품	0.04	0.01	0.02	-0.03	0.00	-0.03
기계	-0.04	-0.02	-0.02	-0.01	-0.03	-0.02
기타제조업	-0.01	-0.03	-0.02	-0.03	-0.03	-0.04
건설서비스	0.00	-0.01	-0.01	0.00	-0.01	0.00
유통·사업서비스	0.00	0.00	0.01	0.00	0.01	0.00
운송·보관서비스	0.05	0.04	0.03	0.05	0.06	0.06
금융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서비스	-0.01	-0.01	0.00	0.00	0.00	0.00
한·미 FTA						
농수산물	-0.06	-0.10	-0.10	-0.06	-0.07	-0.07
가공식품	-0.11	-0.18	-0.19	-0.09	-0.20	-0.18
채취	0.07	0.13	0.05	0.06	0.09	0.06
섬유·의류	-0.41	-0.44	-0.28	-0.29	-0.49	-0.42
석유화학	-0.03	-0.04	-0.05	-0.08	-0.06	-0.08
철강·금속	-0.04	-0.05	-0.04	-0.08	-0.07	-0.08

부표 6. 계속

	GER	FRA	UK	POL	기타 EU15	기타 EU10
자동차	-0.06	-0.06	-0.07	-0.10	-0.06	-0.08
기타 운송장비	0.21	0.19	0.18	0.14	0.20	0.19
전자제품	0.02	-0.04	-0.06	-0.12	-0.04	-0.08
기계	-0.01	-0.06	-0.04	-0.10	-0.06	-0.07
기타 제조업	-0.08	-0.09	-0.07	-0.11	-0.12	-0.12
건설서비스	-0.07	-0.10	-0.06	-0.09	-0.11	-0.11
유통·사업서비스	-0.07	-0.07	-0.03	-0.07	-0.06	-0.07
운송·보관서비스	0.08	0.04	0.01	0.06	0.08	0.09
금융서비스	-0.04	-0.07	-0.04	-0.07	-0.06	-0.07
기타 서비스	-0.04	-0.07	-0.04	-0.05	-0.05	-0.05
한·미·일 FTA						
농수산물	-0.06	-0.12	-0.12	-0.07	-0.09	-0.08
가공식품	-0.13	-0.23	-0.23	-0.10	-0.25	-0.22
채취	0.07	0.12	0.05	0.05	0.10	0.05
섬유·의류	-0.44	-0.51	-0.32	-0.33	-0.59	-0.48
석유화학	-0.07	-0.10	-0.09	-0.09	-0.12	-0.12
철강·금속	-0.05	-0.06	-0.10	-0.10	-0.09	-0.11
자동차	-0.08	-0.05	-0.09	-0.10	-0.07	-0.09
기타운송장비	0.30	0.31	0.25	0.21	0.29	0.28
전자제품	0.06	-0.03	-0.03	-0.14	-0.03	-0.09
기계	-0.05	-0.08	-0.05	-0.11	-0.09	-0.09
기타제조업	-0.09	-0.11	-0.08	-0.14	-0.15	-0.16
건설서비스	-0.07	-0.11	-0.07	-0.09	-0.11	-0.11
유통·사업서비스	-0.06	-0.07	-0.02	-0.07	-0.05	-0.07
운송·보관서비스	0.13	0.08	0.04	0.12	0.15	0.15
금융서비스	-0.04	-0.07	-0.04	-0.08	-0.06	-0.07
기타 서비스	-0.05	-0.07	-0.04	-0.05	-0.05	-0.05



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TA and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Heungchong Kim *et al.*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Korea-EU FTA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ould the Korea-EU FTA contribute to welfare-improvement of the two parties, and if so, by how much, what kind of bilateral trade issues would emerge during the FTA negotiations, and what kind of policy consideration is necessary before the negotiations start.

The study begins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U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Korea-EU FTA. Despite the conspicuous development of the recent trade and investment achiev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the trade potential is evaluated to be large, so that we can recognize both as a strategic partner for the FTA. It has been said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s of Korea and EU are complementary, implying that the cost of structural reform due to the FTA would not be so high while the effects of welfare improvement would be substantial.

The analysis in Chapter 2, however, shows that the two do have competing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machinery, steel/metal, and textile/clothing. Korean agriculture, processed food, mineral products, wood pulp/paper, cement/glass, precision instruments and apparatus, and other manufacturing goods are shown to be sensitive to EU competition, while EU has absolute advantage over Korea in livestock and wood products. Further, there are many bilateral trade issues between the two parties, some of which are not yet resolved. Some of these issues such as import barrier to automobiles, pricing in pharmaceuticals, shipbuilding, etc. will become critical if and when the FTA negotiations start.

Chapter 3 report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Korea-EU FTA. The updated GTAP database for the CGE analysis, which covers twenty-five member countries of the EU, is adopted. The CGE analysis simulates results including service industries under the realistic situations of 50% opening of agriculture and service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CG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for the derivation of price elasticity of export/import is adopted to estimate short-term effects of the FTA on trade. The effects on trade in services have been analyzed in more detail, including effects on employment since trade in services must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EU.

The above analysis shows that a Korea-EU FTA would result in substantial improvement in GDP, income, trade and welfare of both parties. Under the realistic assumption of “full opening of manufacturing and 50% opening of agriculture and service,” Korea-EU FTA would increase Korea’s GDP by KRW 15 trillion (2.02%) in the short-term, and by KRW 24 trillion (3.08%) in the long-term. Per capita GDP of Korea is anticipated to increase by KRW 350

thousand (2.16%) in the short-term and by KRW 480 thousand (2.96%) in the long-term. Korea's export would increase by US\$ 6.5 billion (2.62%) in the short-term and US\$11.0 billion (4.47%) in the long-term, and its import would increase by US\$ 6.3 billion (3.81%) in the short-term and US\$8.2 billion (4.92%) in the long-term. The number of jobs is estimated to increase by 300 thousand (1.81%) in the short-term and 597 thousand (3.58%) in the long-term. The job creating in service sector explains the major 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job increase. The impact of GDP increase in the Korea-EU FTA may not be stronger than other FTAs including the Korea-US FTA or Korea-ASEAN FTA, but the costs of structural adjustments is estimated to be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other two FTAs mentioned above, which shows that EU would be one of the attractive partners for FTA for Korea.

EU may also benefit a lot through Korea-EU FTA. Korea-EU FTA may increase the GDPs of Germany, France and UK by about 0.1%, which roughly amount to US\$ 1.5~2 billion. The new EU member states would benefit through increase of FDI from Korea and abroad, although their direct welfare improvement due to the FTA would not be as large as that of old member states or Korea.

Based upon the results of Chapter 2 and 3, Chapter 4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in a qualitative approach.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U's unique characteristic as an economic union. This is a difference Korea must consider when negotiating a FTA with EU. The study argues that EU's Common Commercial Policy, its FTA policy, some characteristics of the EU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service market integration, Korea's FTA policy, and bilateral trade agenda are among the major policy agenda for consideration when Korea negotiates a FTA with EU.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on the issues are follows;

EU's Common Commercial Policy (CCP) is one of the major common policies of EU which provides the European Commission with the mandate that the Commission should play the representative role in FTA negotiations with non-member states, including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there is no clear-cut division of coverage between the CCP of the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authority, and thus there still remains gray area. The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needs to be clarified. The ambiguity in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due to incomplete integration of the internal market would weaken EU's negotiation power. In particular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new member states' implementation of the *Acquis Communautaire* and Common Commercial Policy is required,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now in EU.

EU's FTA has weighed more on establishing FTA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colonial ties with the EU member states. Recently, however, a new trend has emerged. EU has started to establish trade preferential agreements with other non-European countries. Among these, EU's FTAs with Mexico and Chile needs to be noted in particular. The two FTAs are composed of three parts; political dialogue, trade and cooperation. They are comprehensive in terms of coverage, and the trade liberalization schemes are progressive and reciprocal.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agricultural industries in EU are still protected and the degree of liberation achieved varies among the FTA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re are separate agreements for wine and spirit, and that EU's FTA do not usually require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he EU market is huge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grated, which is

attractive for non-member countries trading with EU. Although growth rates of the EU member economies have not been so high, the purchasing power of EU has been increasing. This peculiar phenomenon has been attributed to increased efficiencies following market integration. However, the services market has not been fully integrated, and this is one of the major barriers for free movement of services across member states. Korea needs to get the full status of national treatment in providing services in EU.

EU would be severely disadvantaged by Korea's FTA with big econom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The industrial structures of Japan and the US is quite similar with that of EU, so that Korea-US FTA and Korea-Japan FTA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EU member economies and Korea-EU economic relations. We find that Korea-US and Korea-Japan FTAs would create substantial trade diversion effects on EU, and EU's production and trade would decrease after the conclusion of such FTAs. It is found that a Korea-US FTA would be more burdensome to EU than a Korea-Japan FTA. Therefore, when considering Korea's recent FTA policy, Korea is also an attractive FTA partner for EU.

金興鍾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Uni. of Oxford, MPhil in Economics(1995), Honorary Member of Christ Church (200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現, E-mail: hc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Nouvel ordre economique mondial: la vision de l'Asie de l'Est (2005)

『EMU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2004)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 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2004)

“Korea-EU Trade Relations: Over-traded or Under-traded?”(2004) 외

李彰洙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호주국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장(現, E-mail: cs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WTO 농산물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미곡을 중심으로』(2005)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공저, 2004) 외

金均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kt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EU확대에 따른 산업기지의 중동구권 이전과 유럽 산업구조의 변화』(2005)

『EU 신집행위원회 출범과 주요 정책과제 전망』(2005)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英 경제협력의 과제』(공저, 2004) 외

姜俊求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jgkang@kiep.go.kr)

著書 및 論文

“Korea's Foreign Trade Strategy in the New Millennium”(공저, 2003)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공저, 2003) 외

朴淳讚

독일 잘란트대학교 경제학 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現, Email: spark@kongju.ac.kr)

著書 및 論文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2004)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Asian Economic Papers, Vol.4(1), 2005) 외

政策研究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1229-5 94320

89-322-1072-1(세트)

정가 10,000원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TA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Korean Economy

Heungchong Kim *et al*

이 연구서는 한·EU FTA의 타당성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이 FTA는 양국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양국의 일부 산업은 상호 경쟁적이며 가공식품과 정밀기기 등은 한국의 민감분야다. 협상시 EU의 공동통상정책과 FTA 정책, 시장특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기존 FTA연구가 제조업 CGE분석 결과를 FTA 체결 근거로 제시한 것과 달리 다양한 분석방식을 사용하였다.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분개방이라는 현실적 가정에 입각해 있으며, 정책과 규범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FTA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예상 현안에 대해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시각과 세부 지침을 동시에 제공해 줌으로써 정부의 FTA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9 788932 212296
ISBN 89-322-1229-5
89-322-1072-1(세트)

정가 10,000원